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Ⅳ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이상준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김용오 예산분석관
김지수 예산분석관

지 원 | 정진아 행정실무관
허성혁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 02) 6788-3770 | i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Ⅳ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정무위원회 】

2026. 7.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7.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2025년은 2024년 말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어, 회계연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연초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도 요구된 한 해였습니다.

당초 2025년도 본예산은 총수입 651.6조원, 총지출 673.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6월 대통령선거 전·후로 각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42.4조원, 703.3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결산 결과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추경(372.1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나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감소하였으며, 총수입은 추경 대비 5.0조원 감소한 637.4조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9.1조원 감소한 684.1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로 추경(111.6조원 적자) 대비 7.4조원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회계연도 정부의 재정운용을 분석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8종, 22권으로, 「결산 재정총량 분석」, 「결산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결산 총괄 분석」, 「결산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으로 구성되며, 특히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기존 3권에서 4권으로 확대 발간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2025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차 례

CONTENTS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I. 결산 개요 / 3

1. 현 황 ····· 3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8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9

II. 주요 사업 분석 / 10

〈일반회계〉

1. 조세심판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 10
2.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홈페이지 이용 실적 및 심층상담 감소 문제 ····· 15
3. 검찰개혁추진단 신규 출범을 위한 예비비 편성 및 집행결과 검토 ····· 19
4. 덩어리 규제 세부 개선과제 이행여부 지속 점검 및 관리 필요 등 ····· 24

CONTENTS

[국가보훈부]

I. 결산 개요 / 33

1. 현 황 ····· 33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40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41

II. 주요 사업 분석 / 42

〈일반회계〉

1. 독립의 전당 착공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 반복 문제 ····· 42
2.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착공 지연 문제 등 ····· 46
3.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인원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월 지급단가 상향 등 제도개선 필요 ····· 51
4.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집행현황 분석 ····· 57
   - 4-1.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보전금 미지급금 발생 문제 ····· 57
   - 4-2. 제대군인 진료비 전년도 미지급금 정산에 따른 이·전용 과다 문제 ····· 64
5. 시내버스 이용지원 미지급금 발생 및 장기화 문제 ····· 68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일반회계 전입 의존 문제 ····· 73

〈보훈기금〉

7.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 이차보전 미지급금 발생 문제 ····· 77

CONTENTS

[공정거래위원회]

I. 결산 개요 / 85

1. 현 황 ····· 85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90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91

II. 주요 사업 분석 / 92

〈일반회계〉

1.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소프트웨어 운용 방식 변경에 따른 이·전용 문제 ····· 92
2.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간 인식 차이 개선 필요 ····· 98
3.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개선을 위한 신고 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등 ··· 104
4.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제도 운영 현황 분석 ····· 111

[금융위원회]

I. 결산 개요 / 119

1. 현 황 ····· 119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26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27

CONTENTS

II. 주요 사업 분석 / 129

〈일반회계〉

1. 청년도약계좌 연내 지급 불가능한 기여금 전액 출연에 따른 비효율 발생 등 129
   1-1. 청년도약계좌 연내 집행가능성 없는 출연금 전액 교부 문제 등 ····· 129
   1-2. 청년미래적금 전환 가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계 보완 필요 ····· 135
2. 저신용자 대상 보증사고 증가에 따른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우려 ··· 141
3.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 실적 저조 상황에서 매입 목표 상향 문제 등 ····· 148
4. 새도약기금 사전 준비 부족에 따른 채권 매입 및 소각 실적 저조 문제 ····· 155
5. 반도체·원전 관련 펀드의 조속한 투자 집행 및 수요 점검 필요 ····· 16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보유 주식 매각 부진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 부채 상환 차질 우려 ····· 171

〈신용보증기금〉

7.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 불용 관련 분석 ····· 177
   7-1. 종료 예정 보증사업의 운용기간 연장을 전제한 계획 편성 문제 ····· 177
   7-2. 보증사업 부실 발생 규모에 대한 예측 정합성 제고 필요 ····· 183

CONTENTS

[국민권익위원회]

I. 결산 개요 / 189

1. 현 황 ····· 189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93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94

II. 주요 사업 분석 / 195

〈일반회계〉

1. 행정심판 운영 현황 분석 ····· 195
   1-1.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 195
   1-2.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참여 기관 확대 필요 ····· 19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 결산 개요 / 205

1. 현 황 ····· 205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210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211

CONTENTS

II. 주요 사업 분석 / 212

〈일반회계〉

1. 개인정보 사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212
   1-1.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의 실질적 활용 및 사고조사 데이터 관리체계 정비 필요 ····· 215
   1-2.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체계의 한계 개선 및 유출사고 대응체계 개선 필요 ····· 221
   1-3. 개인정보 사고조사 처리 장기화에 따른 조사역량 및 사고조사 처리체계 개선 필요 ····· 227
   1-4. 개인정보 유출 반복사고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체계 마련 필요 ····· 235
2.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241
   2-1. ISMS-P 인증기관의 유출사고 발생에 따른 인증 실효성 점검 필요 ····· 242
   2-2.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체계 및 컨설팅 운영방식 개선 필요 ····· 256
3. 마이데이터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263
   3-1. 마이데이터 10대 중점분야 확산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신속 추진 필요 ····· 266
   3-2.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활용도 제고 및 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 269
   3-3.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의 적정성 검토 필요 ····· 276
   3-4. 전년도 유보재원 활용 및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시기·규모 조정 필요 ····· 280
   3-5.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의 적정 수행기간 확보를 위한 일정 관리 강화 필요 ····· 284
   3-6. 사업비 기자재 구매의 실수요 검증 및 연말 집중 집행 관리 강화 필요 ····· 287

CONTENTS

4.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291

4-1. 가명정보 결합·반출 처리기간 장기화 개선 필요 ····· 292

4-2.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을 고려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 298

4-3.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및 지역센터 운영의 가명정보 활용성과 연계 점검 필요 ····· 302

5.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의 문제점 ····· 306

5-1.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기업 참여 제약 해소 및 기업지원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307

5-2. 당초 예산 편성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문제 개선 필요 ····· 314

6.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GPA 총회 예산 편성 부실 및 위원회 기본경비를 활용한 경비 집행 문제 ····· 318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억 7,900만원이며, 4억 4,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1%인 4억 4,500만원을 수납하고 4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79	279	279	449	445	4	0	99.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727억 9,600만원이며, 이 중 97.5%인 6,557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3억 7,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59,106	659,106	660,422	643,805	710	15,907	97.5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12,374	12,374	12,374	11,910	-	464	96.3
합계	671,480	671,480	672,796	655,715	710	16,372	97.5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자산은 4,187억 2,200만원, 부채는 15억 8,800만원으로 순자산은 4,171억 3,4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10억 5,800만원, 유·무형자산 4,169억 4,900만원, 기타자산 7억 1,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3억 8,100만원(0.1%) 증가하였다. 이는 기타자산이 4억 6,600만원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자산이 8억 7,4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5,200만원, 충당부채 15억 3,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억 1,400만원(△16.5%) 감소하였다. 이는 차입부채 1,000만원 감소, 충당부채 3억 500만원 감소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418,722	418,341	381	0.1
Ⅰ. 금융자산	1,058	1,084	△26	△2.4
Ⅱ. 유·무형자산	416,949	416,075	874	0.2
Ⅲ. 기타자산	716	1,182	△466	△39.4
부 채	1,588	1,902	△314	△16.5
Ⅰ. 차입부채	52	62	△10	△16.1
Ⅱ. 충당부채	1,536	1,841	△305	△16.6
Ⅲ. 기타부채	-	-	-	-
순 자 산	417,134	416,438	696	0.2
Ⅰ. 기본순자산	△962,532	△962,532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673,449,765	△589,704,068	△83,745,697	△14.2
Ⅲ. 순자산 조정	92,310,324	61,008,814	31,301,510	51.3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6,639억 9,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순원가 5,339억 3,800만원, 관리운영비 1,301억 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4,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22억 4,700만원(3.8%) 증가한 6,639억 9,4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비용이 전년도 대비 176억 6,2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533,938	516,276	17,662	3.4
가. 프로그램 총원가	533,938	516,276	17,662	3.4
나. 프로그램 수익	-	-	-	-
Ⅱ. 관리운영비	130,102	123,353	6,749	5.5
Ⅲ. 비배분비용	-	-	-	-
Ⅳ. 비배분수익	46	82	△36	△43.9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663,994	639,547	24,447	3.8
Ⅵ. 비교환수익 등	-	-	-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663,994	639,547	24,447	3.8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4,164억 3,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171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600만원(0.2%)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244억 4,7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은 전년 대비 207억 6,400만원 감소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416,438	412,120	4,318	1.0
Ⅱ. 재정운영결과	663,994	639,547	24,447	3.8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64,935	644,171	20,764	3.2
Ⅳ. 조정항목	△245	△305	60	19.7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417,134	416,438	696	0.2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다. 재정 구조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재정은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총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의 국가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2억 1,700만원이 전출되었다.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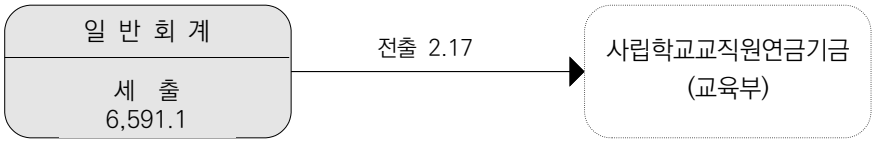

주: 총계 기준
자료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 ②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③ 광복8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사업** 등이 있다.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은 1차 구축사업의 운용실적 및 미비점 등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에 2차 구축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5년도 2차 구축 예산 등 총 14억 8,800만원이 감액(34억 4,600만원→19억 5,800만원)되었고,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은 2025년 7월 종료 예정임을 고려하여 추가 편성된 5개월(8월 ~ 12월) 분 임차료 약 4억 7,000만원 등 운영경비 총 6억 4,800만원이 감액(44억 4,300만원→37억 9,500만원)되었다. 끝으로, 광복8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일부 사업 내용이 중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1억 8,000만원이 감액(21억 2,900만원→19억 4,900만원)되었다[1].

1) 정무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1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① **국정과제 집중 점검·관리** 및 **효과적인 정부 업무평가 추진**, ②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 확대** 및 **청년정책 소통·홍보 강화**, ③ **신설·강화 규제심사**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추진 등**을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검찰개혁추진단 신규 출범 및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예측가능성·시급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자문위 구성 및 실무지원 인력 채용 절차 지연 등으로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예비비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비비를 반영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혁신추진단이 존속기한 만료(2025.7.31.)로 폐지된 이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미흡한 인수인계 등으로 상당 기간 덩어리 규제 세부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관리가 부실했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조직 존폐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사업 분석

1 조세심판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세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무조정실은 조세심판원의 인건비, 기본경비, 홍보사업비(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의 경우 조세심판원 지원 사업[1] 예산현액 145억 8,200만원 중 139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조세심판원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12,243	12,243	-	-	12,243	11,681	-	562	12,465	12,465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15	715	-	△2	713	687	-	26	777	777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1,440	1,440	22	3	1,465	1,454	-	11	1,560	1,560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167	167	-	△6	161	159	-	2	117	117
합 계	14,565	14,565	22	△5	14,582	13,981	-	601	14,919	14,919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7001-102
일반회계 7011-202
일반회계 7011-252
일반회계 7035-325

조세심판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소송 이전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제도로 「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2]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나. 분석의견

조세심판 청구사건이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여 처리되는 건수와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고 평균 처리기간은 늘어난 문제가 있으므로,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적 전치주의인 조세심판의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심판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그런데 2025년 조세심판 처리건수를 처리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법정 처리기간인 90일 이내에 처리된 건수는 1,024건으로 전체 처리건수 대비 12.8%에 불과하며, 법정 처리기간 준수 비율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처리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25일로 202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5년 중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

2)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조세심판 처리기간별 현황]

(단위: 건, %, 일)

연도	90일 이내		91일~180일		180일 초과		평균 처리기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1	4,149	33.2	2,445	20.1	5,553	45.7	196
2022	656	5.6	5,153	44.6	5,753	49.7	234
2023	8,244	50.0	2,857	17.3	5,384	32.7	172
2024	3,596	35.4	2,818	27.7	3,764	37.0	185
2025	1,024	**12.8**	3,027	37.9	3,945	49.3	**225**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신속한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으며,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도입 추진 등 평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건처리 담당 실무인력이 부족하고 최근 동일쟁점 대량사건[4]이 감소하면서 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5년의 경우 2024년에 비해 총 처리대상 건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평균 처리기간은 증가했다는 측면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세 관련 심판청구의 성격과 내용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처리 실적을 단순 계량화하여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처리대상 건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법정기한을 도과한 사건이 증가하고 사건처리기간도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심판원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처리대상 및 처리 건수 현황]

(단위: 건)

연도	처리대상 건수			처리 건수			이월 건수
	소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소계	법정기한내	법정기한도과	
2021	16,588	3,563	13,025	12,147	4,149	7,998	4,441
2022	14,814	4,441	10,373	11,565	659	10,906	3,249
2023	20,030	3,249	16,781	16,485	8,238	8,247	3,545
2024	13,356	3,545	9,811	10,178	3,596	6,582	3,178
2025	10,403	3,178	7,225	7,996	1,024	6,972	2,40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 동일쟁점 사건이 대량으로 접수될 경우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현황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세심판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달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세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심판의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의 전반적인 권리구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심판관, 조사관 정원을 증원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이어오고 있으나, 2025년과 2026년 심판관·조사관의 정원 대비 현원 부족 문제, 인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무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처리 기간 단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조세심판원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심판관		3급 조사관		4급 조사관		4.5급		5급		6급 이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20	6	6	1	0	15	14	7	7	57	56	32	28
2021	8	7	1	1	17	16	7	7	57	59	32	28
2022	8	8	2	2	16	15	7	7	57	55	34	29
2023	8	8	2	2	16	16	7	7	57	53	32	29
2024	8	8	2	2	16	16	7	7	57	54	31	31
2025	8	6	2	2	16	14	7	7	57	54	31	32
2026	8	7	2	0	17	16	6	7	57	55	31	31

주: 각 연도 1월 1일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연도별 조세심판원 인력 관련 제도개선 현황]

적용연도	제도개선 내용
2021.1.1.	국세·지방세 심판관 각 1명 증원, 조사관 2명 증원(20.9.8.개정)
2022.1.1.	사건처리를 위한 실무자(7급) 증원(2명)(21.2.25. 개정)
2023.1.1.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7급1명, 사무운영 8급 1명 감축(22.12.13.개정)
2024.1.1.	9급 3명을 7급 2명으로 직제 변경(23.12.12.개정)
2026.1.1.	조정 검토 업무의 신속 처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판조정과 신설, 과장급 1명 증원(4.5급 1명 감원)(25.2.25. 개정)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따라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증원을 통한 실무인력 확보, 사건처리 업무 효율화 대책 마련 등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홈페이지 이용 실적 및 심층상담 감소 문제

가. 현 황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1] 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1억 5,800만원 중 21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1,958	1,958	200	1	2,158	2,157	-	1	2,558	2,558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정책을 총괄적으로 수집·안내하는 역할은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청년센터'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2022년 온라인 청년센터의 명칭을 '온통청년'으로 변경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소관 예산 사업으로 이관하였으며, 2024년도부터는 온통청년을 고도화하여 실시간·맞춤형 통합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하였다.

2025년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과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2차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비용이 집행되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7035-324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을 통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통청년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과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한국고용정보원은 홈페이지 이용 확대 및 심층 상담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은 2025년 1월 1차 구축(온통청년 시스템 고도화)이 완료되어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홈페이지(온통청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방문자 수는 2,209,073명으로 시스템 고도화 이전 2024년 방문자 수 4,890,164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2026년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월별 방문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24	2025	2026
1월	595,381	200,088	398,775
2월	1,263,561	99,690	306,616
3월	565,951	162,964	365,966
4월	396,897	171,109	273,392
5월	465,628	156,817	-
6월	354,860	115,957	-
7월	281,835	160,654	-
8월	219,117	176,647	-
9월	180,314	238,340	-
10월	176,998	222,461	-
11월	176,922	236,829	-
12월	212,700	267,517	-
합 계	4,890,164	2,209,073	1,344,749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플랫폼 운영 실적 저조는 온통청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상담시스템 제공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신규로 운영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온라인 심층 상담은 2024년 6,258건 대비 64.9% 감소한 2,198건에 불과하였으며, 유선을 통한 일반정책 상담은 2024년 5만 5,881건 대비 91.9% 감소한 4,53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청년정책 플랫폼 실시간 상담시스템 운영 실적]

(단위: 건)

구분	온라인 청년센터	온통청년				
					통합플랫폼 구축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4
심층상담	5,390	4,936	6,446	6,258	**2,198**	1,571
찾아가는 상담	192	220	757	1,457	**1,831**	439
일반 정책상담	82,347	44,480	49,584	55,881	**4,534**	1,844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이처럼 동 사업을 통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한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 가입자 수, 상담건수 등이 시스템 고도화 이전 기존 홈페이지에 비해 저조한 것은 통합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 부족 및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상담 내용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이 구축된 온통청년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또한 2025년 86.8점으로 통합플랫폼 구축 이전인 2024년 실적(87.3점)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청년정책 플랫폼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미조사	미조사	미설정	미설정	88
성과			87.3	86.8	-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방문자 집계 방식을 변경하면서 결과치가 감소한 측면[2]과 새로운 온통청년에 대한 홍보 기간이 다소 짧은 측면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방문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온통청년 시스템의 인지도 향상을 비롯하여 상담실적 확대, 홈페이지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고도화 과정에 있는 홈페이지 이용실적이 이전에 비해 부진한 것은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동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며, 시스템 고도화의 본격적인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한국고용정보원은 온통청년 홈페이지 이용실적을 높일 수 있는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심층상담 건수가 감소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상담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2024년 1차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문자 집계 방식을 기존 로그 분석 방식에서 스크립트 분석(페이지 태그)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스크립트 분석 방식이 보다 정교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나 사용자 설정에 따라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는 등 자료 집계 상의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3 검찰개혁추진단 신규 출범을 위한 예비비 편성 및 집행결과 검토

가. 현 황

검찰개혁추진단 운영[1] 사업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6억 6,300만원 중 4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	-	-	663	663	475	62	126	1,734	1,734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시기(2025.10.1.)에 맞추어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였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와 검찰개혁 업무에 관한 입법 관련 자문을 담당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기획총괄·입법지원·행정지원 실무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7036-316

[검찰개혁추진단 개요]

구 분	내 용
운영 목적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개혁 후속조치 지원
주요 역할	법령 제·개정안 마련 및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조직설계·행정사항 준비
인원 구성	- 단장: 국무조정실장 - 추진협의회: 국무조정실 1차장, 재정경제부 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법제처 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등 - 자문위원회: 대학교수, 변호사 등 입법 관련 전문가 - 기타 기획총괄국, 입법지원국, 행정지원국 등 실무 지원 조직
활동 기간	2025.10.1. ~ 2026.9.30. (1년)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분석의견

검찰개혁추진단 신규 출범 및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예측가능성·시급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자문위 구성 및 실무지원 인력 채용 절차 지연 등으로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예비비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소요 산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과정상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검찰개혁 지원 업무를 담당할 신규 추진단을 설치하기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동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이처럼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없던 신규사업을 예비비를 통해 추진하는 것은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 취지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예비비 사용 요건인 예측가능성, 시급성, 보충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에 예비비 편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검찰개혁 관련 안건은 2025년 6월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인데, 2025년 본예산안 편성 및 심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새정부 출범 및 그에 따른 정부조직 개

편의 세부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검찰개혁추진단 설치를 위한 예산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가능성 없는 추가적인 재정 소요로 인정될 수 있다.

시급성 측면을 살펴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2025년 10월 1일 이후 개정안 시행(2026.10.2.)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관련 규정 정비, 조직 설계 및 행정지원 등의 실무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이후 곧바로 추진단의 활동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시급성 또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충성의 측면에서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무조정실 내 기본경비 집행잔액을 이·전용하는 방식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검찰개혁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2025년 추가 재정 소요를 9억 4,000만원으로 추산한 가운데, 2025년 9월까지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의 68.4%,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의 74.5%가 이미 집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여유 재원을 활용한 전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배정된 예비비는 6억 6,300만원이며 결산 집행액은 4억 7,500만원으로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의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5억 9,9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예비비 편성 당시 연말 집행잔액을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예비비 편성 이후(2025.11.6.) 기본경비 예상 잔액 중 일부(5,800만원)를 이·전용하여 부동산감독 추진단을 신규로 출범하는 등의 사정으로 예산현액은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개혁추진단 신규 출범을 위한 예비비 편성이 보충성 요건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 예비비는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5회계연도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예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요구	배정	집행	이월 및 불용
940	663	475	188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결산 현황(현액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예산액(A)	2025 예산현액	2025 결산		잔액 (A-B)
			9월 말	12월 말(B)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2,950	2,984	2,024	2,791	159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6,525	6,384	4,850	6,085	440
합 계	9,475	9,368	6,874	8,876	**599**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다만, 추진단 설치 이후 자문위원회 구성 시기가 지연되거나 실무 지원인력 채용이 늦어지면서 예비비 불용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자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수용비와 실무원에 대한 상용임금 등이 10월부터 소요될 것을 전제하고 예비비를 편성하였는데, 자문위원회는 10월 29일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최초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실무원(3명)은 11월에 채용되면서 10월분으로 편성된 예산이 일부 불용된 것이다. 그 외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국내여비 일부가 불용되었고, 연구용역 종료 시점(2026년 1월)에 따라 연구비 일부가 이월되었다.

[2025회계연도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예산 이월·불용 발생 사유]

(단위: 백만원)

구분		규모	사유
불용	수용비	4	자문위원회 구성 시기 지연(10월말)에 따라 10월분 회의 운영 예산 불용
	상용임금	21	실무원(3명) 채용 지연에 따라 10월분 인건비 불용
	국내여비	50	온라인 회의 개최 등에 따라 여비 불용
	기타	51	특근매식비, 임차료, 유류비, 직책수행경비 등 일부 불용
이월	연구비	62	연구용역 종료시점(2026.1.)을 반영하여 선금 외 용역비 불용
합계		188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모두 예상해서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검찰개혁추진단이 2025년 10월 1일 출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교수·전문가 등의 섭외,

실무원 채용 공고·면접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사전에 면밀하게 고려했다면 예비비 잔액 발생 규모를 일부 축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주요한 국정현안으로 대두된 검찰개혁 관련 후속 조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예산에 없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예비비를 편성한 취지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시급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배정된 예비비를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사유로 불용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본예산에 없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 필요한 재원 규모 산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여 적정 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비 집행 과정상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덩어리 규제 세부 개선과제 이행여부 지속 점검 및 관리 필요 등

가. 현 황

규제혁신추진단 운영[1] 사업은 덩어리 규제 발굴 및 개선을 담당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37억 9,500만원 중 33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7,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3,795	3,795	-	-	3,795	3,317	-	478	-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규제혁신추진단은 다수 부처 또는 여러 법 규정이 관련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규제(덩어리규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2년 6월 22일 제정된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단을 설치하였으며, 3년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2025년 7월 폐지되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7033-305

나. 분석의견

첫째, 규제혁신추진단이 존속기한 만료(2025.7.31.)로 폐지된 이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미흡한 인수인계 등으로 상당 기간 덩어리 규제 세부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관리가 부실했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조직 존폐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규제혁신추진단의 업무 프로세스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① 전문위원·자문위원 의견과 외부 현장 간담회 결과, 부처 요청 등을 반영하여 덩어리 과제를 발굴하고, ② 소관부처 협의 및 필요 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논의하며, ③ 부처 협의가 완료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④ 소관부처 집행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덩어리 규제 발굴 단계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개선안 논의 과정에서 세부 개선과제를 선정하며, 세부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규제혁신추진단이 발굴한 덩어리 규제, 각 규제별로 선정된 세부 개선과제, 세부 개선과제의 이행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 실적을 정량적인 측면에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제출한 덩어리 규제 세부 개선과제 관련 추진단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규제혁신추진단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발굴한 총 41개의 덩어리 규제에 대해 434건의 세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2026년 5월말 기준 301개의 개선과제가 이행완료 되었고 133개가 아직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이행률은 69.4% 수준이다.

[2022~2025년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실적]

(단위: 건)

구분	발굴 덩어리 규제	규제별 세부 개선과제	이행 완료 세부 개선과제	미이행 세부 개선과제
2022	2	34	22	12
2023	17	98	74	24
2024	13	267	180	87
2025	9	35	25	10
합계	**41**	**434**	**301**	**133**

주: 이행여부 통계자료는 2026년 5월말 기준임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이처럼 규제혁신추진단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신규 덩어리 규제 발굴 업무가 중단되었더라도 이미 발표된 세부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 관리는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내 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인해 상당 기간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추진단에서 덩어리 규제 세부 개선과제 이행점검 업무를 담당했던 파견직원이 추진단 폐지에 따라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025.9.)로 인해 규제혁신추진단이 G드라이브 및 규제정보시스템 등에 보관하였던 관련 데이터가 소실되거나 규제정보시스템 접속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사정이 발생함으로 인해 인수인계가 미흡하여 각 부처가 입력한 덩어리 규제 세부 개선과제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못한 것이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추진단 폐지 후 인수인계 문제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규제혁신추진단이 그동안 발표하였던 보도자료나 성과자료집 등의 발간물을 통하여 덩어리 규제 세부과제 이행점검 목록을 재구성하고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 이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노력은 다소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 실제로 규제혁신추진단이 발굴한 덩어리 규제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자료 요구가 본격화되자 신설 조직인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 이행여부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하였으며, 상기 제시한 표가 이때 확인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서 살펴본 사정에 따라 2025년 9월 이후부터 2026년 6월까지 세부 개선과제 이행 여부 점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것인데, 이는 여러 부처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총괄 부처로서 추진한 동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일시적으로 초래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조직 존폐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혁신추진단이 발표한 덩어리규제 개선과제의 이행률이 여전히 부진하므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덩어리규제 개선과제의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규제 관리 총괄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제혁신추진단이 활동기간 동안 제시한 434건의 세부 개선과제 중 2026년 5월 말 기준 301개의 개선과제가 이행완료 되어 이행률은 69.4% 수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이행점검 시 보고된 이행률 45.7%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2022년에 발표한 34개 세부 과제 중 12건은 지난해 점검에 이어 2026년 5월 말에 실시된 점검에서도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장기 미이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규제혁신추진단 이행점검 결과 비교]

(단위: 건)

연도	발굴 덩어리 규제	규제별 세부 개선과제	2025년 이행률	2026년 이행률
2022	2	34	22/34 (64.7%)	22/34 (64.7%)
2023	17	98	66/98 (67.4%)	74/98 (75.5%)
2024	13	267	95/267(35.4%)	180/267 (67.4%)
2025	9	35	-	25/35 (71.4%)
합계	**41**	**434**	**183/399 (45.7%)**	**301/434 (69.4%)**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특히 2022년과 2023년 제안된 세부 개선과제 중 일부는 법률 개정 필요 여부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자치법규 개정이나 관련 부처 간 협업, 개선방안 논의 과정 등이 지연됨에 따라 과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각 부처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촉구하는 총괄 부처 차원의 강화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2022~2023년 세부 개선과제 중 미이행 개선과제 현황(예시)]

덩어리 규제 개선과제	세부 개선과제	이행 현황
인증규제 재선방안 (2022.12.21.)	소방장비인증	소방장비인증 유효기간 연장안 재논의 예정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2023.4.17.)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범위 기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
	기술연수업체별 연수 허용인원기준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 발급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중
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2023.9.20.)	경영위기 학교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 마련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 완료 이후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 추진 중
그림자 규제 혁파 (2023.11.8.)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 및 근거 마련	가설건축물 변경 절차 2026년 하반기 중 마련 예정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이처럼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기간 동안 발굴된 덩어리 규제의 세부 개선과제 중 일부 개선과제가 상당 기간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단일 부처가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은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된 규제혁신추진단이 발굴한 덩어리 규제 관련 잔여 개선과제가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하는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덩어리 규제 개선율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제혁신추진단은 근거 규정의 존속기한에 따라 2025년 7월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임차 사무실 복구에 필요한 공사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전용을 통해 충당한 것은 바람직한 재정 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임시조직 활동기간 만료에 따른 폐지에 필요한 절차 및 예산을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규제혁신추진단은 동 사업 정책연구비 집행잔액 일부를 공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공사비를 집행하게 된 것은 2025년 7월 추진단의 활동기간이 만료되면서 임차 사무실 원상복구를 위한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2025회계연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감액	증액	규모	사유
전용 (2025.6.20.)	정책연구비 (260-02)	공사비 (420-03)	60	민간건물 임차 사무실 반환 관련 원상복구 공사비 확보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그러나 추진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인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2022년 7월 설치된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설치된 날부터 3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2025년 7월 임차 사무실 원상복구 소요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예산안 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므로, 공사비 예산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존속기한을 명시한 규정이 예외적으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을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언급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던 당시에는 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2)]

그러나 정부 스스로 마련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이 임시조직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3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존속기한 경과 시에는 임시조

2) 국무조정실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2024년 9월)한 다음해에 조직 연장을 위해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직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2025년 5월),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직을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기간 연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활동기한 연장을 전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규제혁신추진단과 유사한 임시조직인 부패예방추진단을 운영함에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훈령 개정을 통해 활동기간을 수 차례 연장하고 있는데,[3] 임시조직의 존속기한에 따른 존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관행을 참고하여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기대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근거 규정상의 존속기한에 따라 연내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추진단의 사무실 복구 비용을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용을 통해 충당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활동기간 종료에 따라 임시조직을 폐지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예산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산하 부패예방추진단은 2014년 8월 최초 설치 당시 활동기한을 2015년 7월 31일로 설정하였으나, 이후 자체적인 훈령 개정을 통해 총 7차례 활동기한을 연장하였다.

국가보훈부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00억 8,200만원이며, 87억 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5.0%인 45억 1,700만원을 수납하고 39억 5,1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억 1,3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9,861	9,861	9,861	8,718	4,458	3,948	313	51.1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67	67	67	19	16	3	0	84.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54	154	154	44	44	0	0	100.0
합계	10,082	10,082	10,082	8,781	4,517	3,951	313	45.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조 4,157억 5,700만원이며, 이 중 99.9%인 6조 3,961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113억 9,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2억 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309,226	6,392,863	6,403,519	6,384,537	11,394	7,589	99.7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9,854	9,854	9,854	9,242	0	612	93.8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384	2,384	2,384	2,384	0	0	100.0
합 계	6,321,464	6,405,101	6,415,757	6,396,163	11,394	8,201	99.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나.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8,452억 6,100만원이며, 5,062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6.1%인 4,863억 4,700만원을 수납하고 195억 4,2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억 3,6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보훈기금	696,168	696,168	696,168	325,091	305,256	19,499	336	93.9
순국선열애국 지사사업기금	149,093	149,093	149,093	181,134	181,091	43	0	99.9
합계	845,261	845,261	845,261	506,225	486,347	19,542	336	96.1

자료: 국가보훈부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8,452억 6,100만원이며, 이 중 57.5%인 4,863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58억 2,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보훈기금	696,168	696,168	696,168	305,256	-	5,114	43.8
순국선열애국 지사사업기금	149,093	149,093	149,093	181,090	-	714	121.5
합계	845,261	845,261	845,261	486,346	-	5,828	57.5

자료: 국가보훈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361억 4,900만원(△63.1%)이 감소한 796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8억 5,600만원(△4.6%)이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6,156	10,082	10,082	4,517	△5,565	△1,639
기금	77,314	205,681	205,681	75,097	△130,584	△2,217
합계	83,470	215,763	215,763	79,614	△136,149	△3,856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7억 4,700만원(0.1%)이 증가한 6조 5,351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350억 2,800만원(2.1%)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6,166,881	6,228,881	6,312,518	6,303,580	△8,938	136,699
기금	233,205	217,849	217,849	231,534	13,685	△1,671
합계	6,400,086	6,446,730	6,530,367	6,535,114	4,747	135,02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라.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보훈부의 자산은 3조 1,219억 6,500만원, 부채는 897억 3,300만원으로 순자산은 3조 322억 3,3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3,490억 6,200만원, 유·무형자산 2조 7,628억 2,000만원, 기타자산 100억 8,3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10억 4,500만원(0.7%)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자산이 286억 4,300만원으로 크게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자산이 512억 5,1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846억 5,600만원, 장기차입부채 34억 9,600만원, 장기충당부채 15억 8,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21억 5,000만원(55.8%)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부채 308억 4,1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3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3,121,965	3,100,920	21,045	0.7
Ⅰ. 금융자산	349,062	377,705	△28,643	△7.6
Ⅱ. 유·무형자산	2,762,820	2,711,569	51,251	1.9
Ⅲ. 기타자산	10,083	11,645	△1,562	△13.4
부 채	89,733	57,583	32,150	55.8
Ⅰ. 유동부채	84,656	53,815	30,841	57.3
Ⅱ. 장기차입부채	3,496	3,019	477	15.8
Ⅲ. 장기충당부채	1,581	749	832	111.1
순 자 산	3,032,233	3,043,336	△11,103	△0.4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 6조 4,359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6조 3,723억 6,200만원, 관리운영비 1,624억 700만원, 비배분비용 9억 9,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15억 6,400만원, 비배분수익 334억 2,200만원, 비교환수익 등 248억 6,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645억 1,400만원 증가한 6조 4,607억 7,900만원이며, 이는 주로 국가보훈부 사업예산 증가 등에 기인한다.

총 10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보훈심사 및 보상프로그램 5조 967억원과 보훈의료복지 8,48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145억원과 경비 479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국가운영비용 9억 9,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6,330,798	6,159,574	171,224	2.8
가. 프로그램 총원가	6,372,362	6,194,959	177,403	2.9
나. 프로그램 수익	41,564	35,385	6,179	17.5
Ⅱ. 관리운영비	162,407	152,909	9,498	6.2
Ⅲ. 비배분비용	997	3,593	△2,596	△72.3
Ⅳ. 비배분수익	33,422	19,811	13,611	68.7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6,460,779	6,296,265	164,514	2.6
Ⅵ. 비교환수익 등	24,863	28,494	△3,631	△12.7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6,435,916	6,267,771	168,145	2.7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3조 433억 3,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조 322억 2,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11억 300만원(△0.4%)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조정항목이 기초 대비 8,517억 8,7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6조 4,257억 3,7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49억 2,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39억 9,6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3,043,336	2,184,025	859,311	39.3
Ⅱ. 재정운영결과	6,435,916	6,267,771	168,145	2.7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420,816	6,271,299	149,517	82.4
Ⅳ. 조정항목	3,996	855,783	△851,787	△99.5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3,032,233	3,043,336	△11,103	△0.4

자료: 국가보훈부

마. 재정 구조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926억원, 보훈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900억원을 예탁하고, 1,200억원의 예탁금과 32억원의 예탁이자가 상환되었다.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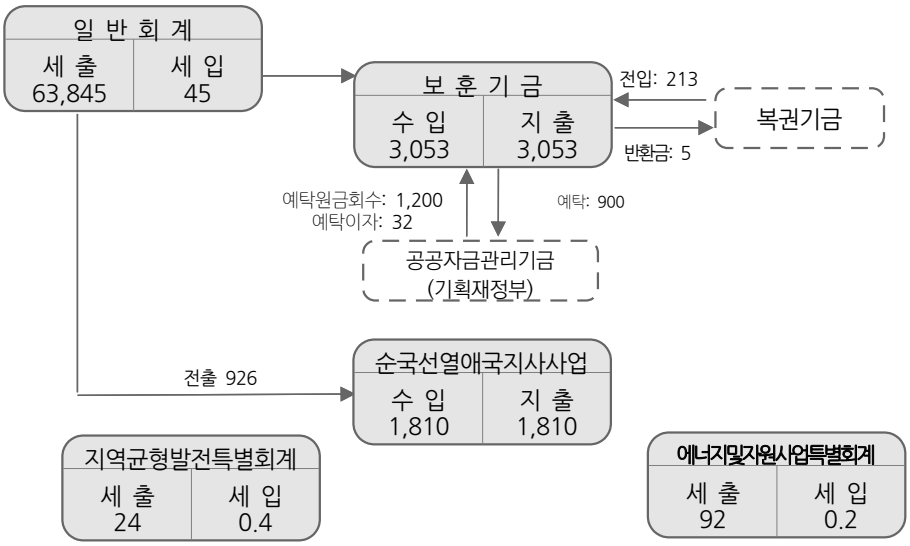

주: 총계 기준
자료 : 국가보훈부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국가보훈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감액된 사업**으로 **① 보상금 사업 ② 국립묘지조성 사업 ③ 대구보훈병원외래시설개선 사업** 등이 있다.

보상금 사업은 과다 추계된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179억원 감액(3조 5,807억 2,300만원 → 3조 5,628억 1,900만원)되었고, 국립묘지조정 사업은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비용 80억 7,400만원이 감액(381억 2,300만원 → 300억 4,900만원)되었고,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개선 사업이 30억원 감액(74억 9,000만원 → 44억 9,000만원)되었다[1].

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일상 속에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사업 추진을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며, 총 137개 세부사업에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훈급여금 인상, 보훈의료·요양서비스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삶의 질 제고**, 국립묘지 조성·확충,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하는 보훈문화 조성**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독립의 전당 착공 사전절차 지연으로 공사비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2026년 7월로 예정된 착공이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대군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전직지원금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다른 사업 예산으로 부족액을 충당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지급 인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진료인원 및 진료단가 상승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미지급금이 발생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진료비 추계 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사업 분석

1 독립의 전당 착공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 반복 문제

가. 현 황

현충시설 건립[1] 사업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보훈의식 함양과 청소년들의 역사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43억 1,700만원 중 3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다.

현충시설 건립 사업의 내역사업인 독립의 전당 사업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위패봉안관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41억 3,200만원 중 9,9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5회계연도 독립의 전당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현충시설건립	4,756	4,756	100	△439	4,317	384	4,032	1	5,909	5,909
독립의 전당	4,032	4,032	100	-	4,132	99	4,032	1	4,259	4,259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은 기존의 순국선열 위패봉안관이 협소하고 노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08년 개선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에 이르러서야 서대문 독립공원에 새로운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3146-405

위패봉안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사업이 추진되었고, 2022년 12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독립의 전당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 내용	순국선열 위패를 모시고 있는 기존의 '독립관'이 노후·협소하여 현대적인 위패봉안실 및 미래세대 체험공간을 갖추도록 확대·건립
사업 규모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333.03㎡
위치	서대문독립공원 내(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407)
시행 방법 및 주체	국가 직접 건립
소요 재원	13,348백만원
사업기간	2022년~2025년 → 2022년~2027년

자료: 국가보훈부

나. 분석의견

독립의 전당 착공 사전절차 지연으로 공사비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2026년 7월로 예정된 착공이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공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계기관 및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등 착공 사전절차 이행 현황과 예상 공정률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의 전당 건립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원을 포함한 41억 3,200만원의 97.6%에 해당하는 40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다. 이는 2024년 3월 공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2025년 12월까지 지연되면서 2025년도에 편성된 공사비 34억 400만원과 감리비 6억 2,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2)]

대규모 이월액이 발생한 것은 건립 대상 부지인 서대문 독립공원이 도시계획시설임에 따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였으나, 공원과의 조화 및 경관 보존 등의 측면에서 예상보다 논의가 길게 진행되어 2024년 8월에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후속 절차가 순연되었기 때문이다.

2) 집행액 9,9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을 우선 집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2023년 12월 완료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실시설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거쳐 2025년 9월에서야 완료되었고, 2024년 3월로 예정되어 있던 공사계약 체결 절차 또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면서 공사비와 감리비를 집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독립의 전당 공정 과정별 계획 및 현황]

구분	계획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일정 지연 사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2022.6.	2022.6.	-
공공건축 심의	2022.9.	2022.8.	-
설계용역 계약	2022.12.	2022.12.	-
계획설계 완료	2022.3.	2023.4.	-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2023.6.	2023.6. 2024..9	'23.6 최초 허가를 받았으나 공원조성 계획 심의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24.9 재허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2023.10.	2024.8.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심의 의견(공원과의 조화, 경관 보존 등) 보완에 따른 심의기간 소요
실시설계 완료	2023.12.	2025.9.	부지 교환(보훈부-서울시) 서울시 의회 의결,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의견(서대문구) 보완기간 소요
공사 계약 체결	2024.3.	2025.12.	선행절차 지연에 따른 순연 및 기존 건물(독립관) 해체심의 기간 소요 * '26.6월 현재 해체공사 중
착공	2024 상반기	2026.6.	
준공(예정)	2025.12.	2027.9.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로, 국가보훈부는 20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공사가 2개년(2024~2025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비 예산을 2024년과 2025년 2개년에 나누어 각각 41억 4,600만원, 70억 3,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24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2024년에는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40억 5,0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독립의 전당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편성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	226	226	152	69	5
2023	494	562	421	49	93
2024	4,146	4,195	45	100	4,050
2025	4,032	4,132	99	4,032	1
2026	4,259	4,259	18	-	-

자료: 국가보훈부

이후 2025년 착공을 목표로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체 공사비를 3개년(2025년~2027년)에 걸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연차별로는 2025년 40억 3,200만원, 2026년 42억 5,900만원, 2027년 42억 6,000만원으로 배분되었다.

[독립의 전당 연차별 재정 투입 계획 및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최초 계획 수립	11,900	226	494	**4,526**	**6,654**	-	-
계획 변경	13,348	226	491	80	**4,032**	**4,259**	**4,260**

주: 볼드 표시는 공사 기간 투입 예산(공사비, 감리비 등)임
자료: 국가보훈부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2026년 6월이 되어서야 기존 건물(독립관) 해체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26년 7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조속한 착공을 통해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준공 시기는 2028년 이후로 재차 연기될 가능성도 있으며, 2025년 예산 이월액을 선금으로 우선 지급하게 되면 2026년 예산은 공정률에 따라 이월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후속 공정 절차가 수정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공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계기관 및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등 착공 사전절차 이행 현황과 예상 공정률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공사비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착공 지연 문제 등

가. 현 황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1] 사업은 대구보훈병원 서관동을 철거하고 재건축(증축)하기 위한 재원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민간보조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3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4,490	4,490	-	△4,190	300	300	-	-	6,221	6,221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대구보훈병원의 개원 후 30년 경과에 따른 건물 노후화 및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공간 협소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보훈병원 서관동을 재건축(증축)하는 내용의 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시행 주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며, 정부 재정은 공단에 대한 민간보조의 형태로 지원된다.

당초 공사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 소요 재원 460억 7,0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325억 9,2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2156-391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 내용	노후화된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증축
사업 규모	지하2층 ~ 지상5층, 연면적 11,003㎡, 107개 병상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시행 방법 및 주체	국고보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시행
소요 재원	46,070백만원 (국비 70% 32,592백만원)
사업기간	2023년 ~ 2027년

자료: 국가보훈부

나. 분석의견

첫째,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증축(철거 후 재건축) 사업의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예산이 낭비되고 보훈병원 이용자의 불편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 완공 예정 시점이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공사비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전설계를 바탕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는 당초 2024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3월 공사 계약 체결 후 4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에는 3년차 사업비 중 공사비 44억 9,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진료과 배치 관련 협의기간이 소요되면서 계획설계가 당초 계획 대비 3개월 지연되었고, 공사비 절감 방안 및 공사규모 재검토에 따른 중간설계 과정에 5개월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또한, 실시설계 기간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지적[2]에 따라 설계 기간을 2개월 연장하면서 당초 2024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실시설계 완료 시기는 2025년 10월까지 지연되었다.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11.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공정 과정별 계획 및 현황]

구분	계획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일정 지연 사유
계획 수립	2023년 1~3월	2023년 1~3월	-
건축기획 심의 조달약정 체결 등	2023년 4~6월	2023년 4~8월	공공건축계획 심의 및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 체결 행정기간 소요
설계 입찰 및 계약	2023년 7~10월	2023년 8~11월	순연
계획설계	2023년 11월 ~2024년 12월	2023년 11월 ~2024년 5월	진료과 배치 관련 협의기간 소요로 계획설계 지연(3개월)
중간설계		2024년 5월 ~2025년 5월	공사비 절감방안, 공사규모 재검토로 중간설계 지연(5개월)
실시설계		2025년 5월 ~2025년 10월	실시설계 기간 과소 계상 지적(국회 예결위)에 따른 기간 증가(2개월)
공사 입찰 및 계약	2025년 1~3월	2025년 12월 ~2026년 4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건설사업관리) 계약 체결 및 입찰 검토 등 추가소요
착공	2025년 4월	2026년 5월	순연
준공	2027년 3월	2028년 6월	순연

자료: 국가보훈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국가보훈부는 공사비로 편성한 2025년 보조금 44억 9,000만원 중 41억 9,000만원을 제대군인 의료비 지원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제대군인 의료지원 세부사업으로 전용(2025.12.22.)하였고, 나머지 3억원의 공사비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교부되었으나 공단은 피교부액 3억원 전액을 이월하였다. 즉, 동 사업에 편성된 2025년도 공사비는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이다.

[2025회계연도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예산액	이·전용액	집행액(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4,490	4,190	300	-	300

자료: 국가보훈부

또한, 2025년 3월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계약 체결은 2026년 4월 완료되었고, 2025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로 예정된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증축 공사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8년 6월까지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공사비로 편성한 예산 전액을 전용하거나 실집행기관 차원에서 이월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며, 설계 과정이 지연되어 당초 목표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것은 노후화되고 협소한 시설을 증축함으로써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동 사업 추진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설계 지연 사유 중 국회 지적에 따라 실시설계 기간이 2개월 증가한 것은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초 국가보훈부가 동 사업 규모에 비해 실시설계 기간을 과소 계상하였다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정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공사 사업 추진 시 보다 면밀한 사전 준비와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3)]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의 변경된 완공 예상 시점이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공사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 검토 및 공정률에 대한 점검 등을 바탕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보훈부가 공사 계약 체결 및 착공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회계연도 말(2025.12.22.)에 공사비 예산 일부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교부하고 공단은 해당 보조금을 전액 이월하여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으므로, 국가보훈부는 향후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실집행기관에 유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훈부는 2025년 예산 44억 9,000만원 중 41억 9,0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2025.12.22.)하고 나머지 3억원을 실집행기관인

3)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은 공사의 규모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종별 설계기간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공사비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사업의 실시설계는 7개월을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보훈부는 공사비 384억 3,100만원 규모인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개선 사업의 실시설계를 5개월로 반영하였다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을 감안하여 2개월 추가한 것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교부(2025.12.22.)하였으나, 공단은 교부된 보조금 3억원을 전액 이월하였다.

국가보훈부는 공사 계약 후 선금 지급과 차년도 공사비 예산(6,221백만원) 및 실집행 가능액을 감안하여 2025년도 공사비 일부(3억원)를 공단에 교부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설계 완료(2025.10.) 후 2025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실제 입찰을 비롯한 계약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3억원의 보조금이 공단으로 교부된 시점(2025.12.22.)에서는 연내 계약 체결 및 착수금 지급 소요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 계약 절차는 2026년 4월이 되어서야 완료되었고, 2026년 5월 19일 공사비가 최초로 집행되었다.

즉, 국가보훈부는 연내 공사 계약 체결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공사비 명목으로 편성된 보조금 일부를 불용처리하지 않고 공단에 지급하였으며, 공단은 연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보조금을 정산 반납하지 않고 이월한 것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실집행기관에 유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인원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월 지급단가 상향 등 제도개선 필요

가. 현 황

제대군인 전직지원금[1] 사업은 연금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취·창업 촉진을 위한 구직급여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36억 5,700만원 중 128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7,382	7,382	-	6,275	13,657	12,888	-	769	9,583	9,583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2]에 근거하여 5년 이상 군에 복무하다 제대한 군인 중 군인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동 사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 제대군인은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자와 10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장기복무자로 구분되는데, 2025년 기준 월 지급단가는 중기복무자 58만원, 장기복무자 81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전역 후 6개월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요건에 부합하는 제대군인은 미취업기간 6개월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기간 내 중도취업하는 경우 잔여 지급액의 50%가 일시 지급된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4160-391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비연금 중장기복무자 중 미취업자
신청기간	전역 후 6개월 이내
월 지급단가	중기: 58만원, 장기: 81만원
지급 기간	미취업기간 6개월
기타	중도 취업 시 잔여 지급액의 50%를 일시 지급

자료: 국가보훈부

나. 분석의견

첫째, 제대군인에 지급하기 위한 전직지원금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다른 사업 예산으로 부족액을 충당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지급 인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73억 8,200만원은 8월에 모두 소진되었으며, 국가보훈부는 다른 사업으로부터 본예산의 85.0%에 달하는 62억 7,500만원을 이·전용하여 부족액을 충당하였다.

[2025회계연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이·전용감액 세부사업	이·전용증액 세부사업	금액
이용(8.20.)	고엽제환자검진	제대군인전직지원금	500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수업료면제)		200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		100
전용(8.20.)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325
이용(9.17.)	국립묘지조성		5,150
합 계			6,275

자료: 국가보훈부

이와 같은 지원금 조기 소진과 이·전용을 통한 부족액 충당 집행은 2022년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조기 소진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고 부족액 규모도 증

가 추세에 있다. 2022년에는 12월에 본예산이 소진되어 9억 1,500만원을 이·전용하는 정도였으나,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도의 경우 8월에 이미 예산이 소진되어 62억 7,500만원을 이·전용한 것이다.

[연도별 지원금 소진 시기 및 부족액 현황 등]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예산 소진 시기	부족분 충당방식	규모
2021	3,314	3,314	-	-	-
2022	6,172	7,087	12월	이용	915
2023	6,172	9,135	9월	이용	3,000
2024	7,005	11,923	8월	이·전용	4,946
2025	7,382	12,888	8월	이·전용	6,275

자료: 국가보훈부

지원금이 조기 소진되어 부족액이 발생한 이유는 정부가 지급 인원 증가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 규모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복무자 지급 인원은 2021년 1,569명에서 2024년 2,789명으로 증가하였고, 장기복무자 지급 인원은 2021년 399명에서 2024년 937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국가보훈부는 2025년 계획 인원을 2024년과 동일하게 각각 1,705명, 454명으로 적용한 것이다.

[연도별 전직지원금 지급 계획 인원 및 실제 지급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중기복무	계획인원	1,857	1,802	1,710	**1,705**	**1,705**
	지급인원	1,569	1,916	2,536	2,789	2,649
장기복무	계획인원	365	394	376	**454**	**454**
	지급인원	399	559	712	937	1,025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2026년 예산의 경우 지급 계획 인원을 최근 3년 평균 지급 인원 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2025년 대비 22억 100만원 증액(29.8%)된 9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3년간 지급 인원을 단순 평균한 것은 앞서 살펴본 지급 인원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국가보훈부의 산출 방식에 따라 반영된 중기복무자 지급 계획 인원 2,414명과 장기복무자 지급 계획 인원 736명은 2025년 실적에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즉, 2026년에도 지원금 조기 소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2026년 예산 편성 내역]

2026년 전직지원금 9,583백만원 - 장기복무자: 2,862백만원(**736명** × 4.86백만원(월81만원 × 6개월) × 80%) - 중기복무자: 6,721백만원(**2,414명** × 3.48백만원(월58만원 × 6개월) × 80%)

자료: 국가보훈부

[최근 3년간 평균 지급 인원]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평균**
장기복무자	559	712	937	**736**
중기복무자	1,916	2,536	2,789	**2,414**

자료: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은 법정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제대군인을 예우하고자 하는 취지와 국가의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매년 부족액을 다른 사업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정부 예산을 심의·확정한 국회의 예산안 심사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지급 인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함으로써 조기 소진에 따른 부족액 충당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전역한 군인의 생활안정과 취·창업 촉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구직급여와 동일한 목적임에도 월 지급액 및 지급기간 등에 있어 구조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의 월 지급단가를 법정 한도인 구직급여 월 상한액의 50%까지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구

직급여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르면,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은 구직활동 기간 중 최장 6개월이며,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된다.[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구직급여의 50%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전직지원금 월 지급단가는 중기복무자의 경우 58만원으로 구직급여 월 상한액(198만원)의 29.3%, 장기복무자의 경우 81만원으로 구직급여 월 상한액의 40.9%에 불과한 상황이다.[4] 2026년의 경우 구직급여 월 상한액이 204.3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월 지급단가는 동결됨에 따라 구직급여 대비 지급단가는 중기복무자 28%, 장기복무자 40%로 더 낮아지게 되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단가와 구직급여 상한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08~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구직급여		1,200	1,290	1,500	1,800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2,043
전직 지원금	중기	-	250	250	250	250	250	250	500	500	550	580	580
	장기	500	500	500	500	500	500	500	700	700	770	810	810

자료: 국가보훈부

구직급여와 전직지원금 지급 가능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구직급여의 경우 연령 및 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지급될 수 있으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전역 후 미취업기간 6개월까지만 지급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50세 미만 퇴직자의 피보험기간이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10일(7개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10년 이상인 경우 240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2024년 중기복무자 55만원, 장기복무자 77만원에 비해 인상된 것이다.

일(8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제대군인의 경우 연령과 복무 기간이 같은 경우에도 전직지원금을 최장 6개월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및 구직급여 주요 지원내용 비교]

구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구직급여
지원 대상	비연금 중장기복무자 중 미취업자	180일 이상 근무 후 실직자
신청기간	전역 후 6개월 이내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월 지급단가	**중기 : 58만원(구직급여 28%)** **장기 : 81만원(구직급여 40%)**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월2,403천원**
지급 기간	**미취업기간 6개월**	**연령 및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자료: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은 전역한 군인의 생활안정과 취·창업 촉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같은 목적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살펴본 바와 같이 구직급여에 비해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대군인의 경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취·창업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이 구직급여에 비해 불리하게 설정된 것은 오랜 기간 군 복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을 예우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의 월 지급단가를 법정 한도인 구직급여 월 상한액의 50%까지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구직급여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5)]

5) 관련하여, 전직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및 지급 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2026.01.02.)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4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집행현황 분석

4-1.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보전금 미지급금 발생 문제

가. 현 황

보훈병원 진료 사업[1] 및 위탁병원 진료 사업[2]은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면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진료 사업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4,421억 3,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위탁병원 진료 사업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836억 8,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보훈병원 진료	392,296	442,138	-	-	442,138	442,138	-	-	450,483	450,483
위탁병원 진료	249,113	283,686	-	-	283,686	283,686	-	-	269,486	269,486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병원에 대한 사후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진료비 지원 방식은 국비 진료와 감면 진료로 구분되는데, 직접적 희생이 있는 상이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국비 진료 방식으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무공·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직접적 희생이 없는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 진료 방식으로 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30~90%를 지원하고 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2150-365

2) 코드: 일반회계 2150-366

진료비 지급 및 정산 방식을 살펴보면, 보훈병원 진료비의 경우 국가보훈부가 당해연도 확정 예산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월별로 균분 교부하고, 공단은 매월 보훈병원별로 발생한 진료실적에 대해 가정산(2달 소요)하여 보훈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연도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진료실적을 확정하여 정산이 완료된다.

위탁병원 진료비의 경우 국가보훈부가 수립·통보한 위탁 진료보상금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매월 공단의 익월 예산 청구 및 균분 교부 방식으로 지급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위탁관리단 적정관리부 심사 반영 후 확정 금액을 보훈공단에서 위탁병원 등으로 입금하게 된다. 이후 공단은 월별 심사 현황 및 감면액을 바탕으로 차년도 1월 초 가결산을 거쳐 4월경 최종 정산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5년 5월 기준 보훈병원은 중앙(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지역에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병원은 전국 1,02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보훈병원 현황]

구 분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소재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부산 사상구 (주례동)	광주 광산구 (산월동)	대구 달서구 (도원동)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진료권	서울,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전남광주, 전북,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인천, 경기서북부
병상	1,383병상	659병상	660병상	456병상	387병상	137병상
진료과	32과목	20과목	24과목	22과목	19과목	16과목

자료: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지정 현황]

(단위: 개)

구 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계
의 원	278	135	121	86	78	33	731
병 원	39	29	24	13	14	3	122
요양병원	26	16	14	10	14	3	83
종합병원	29	14	17	9	12	8	89
합 계	372	194	176	118	118	47	1,025

자료: 국가보훈부

나. 분석의견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진료인원 및 진료단가 상승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으며, 2026년 예산으로 미지급금을 정산함에 따라 진료비 부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므로, 국가보훈부는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진료비 추계 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 5월말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 사업 예산의 60% 이상이 소진되자 진료비 부족액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진료비 보전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훈병원 진료 예산은 본예산 3,852억 7,800만원에서 추경을 통해 4,351억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나 5,112억 900만원의 지급소요가 발생하여 760억 8,9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으며, 위탁병원 진료 예산은 본예산 2,467억 1,500만원에서 추경을 통해 2,812억 8,8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나 3,190억 1,700만원의 지급소요가 발생하여 377억 2,9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		지급소요 (B)	미지급금 (B-A)
	본예산	제2회 추경(A)		
보훈병원	385,278	435,120	511,209	76,089
위탁병원	246,715	281,288	319,017	37,729

자료: 국가보훈부

진료비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의 원인은 진료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진료인원과 진료단가 예측 오차가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의 국비진료 인원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50만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2025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207만명을 적용하였으며, 감면진료 인원이 매년 130만명 이상임에도 2025년 본예산에는 118만명을 반영하였다.

[연도별 보훈병원 진료인원 및 진료단가]

(단위: 명, 원)

구분		2022 실적	2023 실적	2024 실적	2025		
					본예산	추경	실적
국비 진료	인원	2,435,202	2,521,597	2,446,477	2,074,149	2,344,883	2,573,889
	단가	112,573	123,292	130,381	136,713	136,713	138,039
감면 진료	인원	1,303,283	1,404,170	1,400,814	1,182,621	1,336,985	1,454,575
	단가	83,464	83,681	87,713	83,109	89,109	106,637

자료: 국가보훈부

위탁병원의 경우 진료인원의 추계 오차는 보훈병원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이나,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진료단가를 낮게 적용하면서 추경을 통한 진료인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진료 단가가 매년 8.4만원 수준임에도 2025년 본예산과 추경에는 7.9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감면진료 단가는 2022년 2.7만원에서 2024년 3.4만원 수준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보훈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2025년 2.6만원을 적용하여 진료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액이 발생하였다.

[연도별 위탁병원 진료인원 및 진료단가]

(단위: 명, 원)

구분		2022 실적	2023 실적	2024 실적	2025		
					본예산	추경	실적
국비 진료	인원	2,615,897	2,851,040	2,960,269	2,856,629	3,245,489	3,077,848
	단가	84,510	83,858	84,390	78,973	78,973	84,324
감면 진료	인원	950,680	1,163,178	1,195,446	1,098,595	1,248,160	1,713,502
	단가	26,959	28,695	33,710	25,822	25,822	31,554

자료: 국가보훈부

이와 같은 진료비 부족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020년 이후 2022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진료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을 이·전용하였고, 2025년도에는 살펴본 바와 같이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지급소요를 모두 충당하지 못하였다.[3)]

[연도별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 사업 추가 재원 조달 규모]

(단위: 백만원)

연도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2021	이·전용 9,508	이·전용 15,526
2022	이·전용 △1,408	-
2023	이·전용 39,385	이·전용 7,946
2024	이·전용 55,312 예비비 5,596	이·전용 36,819
2025	추경 49,842	추경 34,573

자료: 국가보훈부

진료비 부족이 반복되는 이유는 국가보훈부의 진료비 산정방식 자체의 정합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는 진료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 산정 근거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하고, 확인 가능한 결산 실적에 N년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기도 하며, 최근 N년간의 평균치를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였는데, 2025년에는 보훈병원의 경우 2023년 실적에 최근 3년 평균증감률을 반영하였으나 위탁병원의 경우 5년 평균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등 같은 해 진료비 산정방식 간에도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보훈병원 진료인원 및 진료단가 산정 방식]

구분		산정방식
2023	인원	‘19년 결산 인원에 최근 3년 평균증감률 반영
	단가	’19~’21년 결산 진료단가의 평균값으로 반영
2024	인원	’22년 결산 인원에 최근 3년 평균증감률을 적용
	단가	’22년 결산 진료단가에 최근 3년 평균증감률을 적용
2025	인원	’23년 결산 인원에 최근 3년 평균증감률을 적용
	단가	’23년 결산 진료단가에 최근 3년 평균증감률을 적용

자료: 국가보훈부

3) 2024년도 예비비는 전공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이다.

[최근 3년간 위탁병원 진료인원 및 진료단가 산정 방식]

구분		산정방식
2023	인원	'21년 진료인원에 최근 3년 평균증감률 적용
	단가	'21년 진료단가에 최근 3년 평균증감률 적용
2024	인원	최근 3년 평균('20~'22) 진료인원 반영
	단가	최근 3년 평균('20~'22) 진료단가 반영
2025	인원	최근 5년 평균('19~'23) 진료인원 반영
	단가	최근 5년 평균('19~'23) 진료단가 반영

자료: 국가보훈부

한편, 국가보훈부의 설명에 따르면 국비 지원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부담하였으며, 국가보훈부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교부한 월별 배분액을 미지급금 정산에 우선 투입하여 정산을 완료하였다.

다만, 2026년 예산을 활용한 사후 정산으로 인해 진료비 부족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가 편성한 2026년 예산 세부내역에 따르면, 2026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국비·감면진료 인원이 2025년 실적치에 비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6년 예산에는 2025년 부족액 지급 소요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2026년 예산은 2026년에 발생할 진료비 감면분을 보전하기에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3개월치 예산을 2025년 미지급금 정산에 우선 사용함에 따라 진료비 보전액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2026년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편성내역]

(단위: 명, 원, 백만원)

구분		2025 실적			2026 예산		
		인원	단가	진료비	인원	단가	진료비
보훈병원 진료	국비	2,573,889	138,039	355,298	2,279,884	139,488	318,016
	감면	1,454,575	106,637	155,112	1,388,230	88,347	122,646
위탁병원 진료	국비	3,077,848	84,325	259,539	2,822,573	81,214	229,232
	감면	1,713,502	31,554	54,068	1,212,153	36,197	43,877

자료: 국가보훈부

또한, 국가보훈부는 미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정부 재정 부족으로 인한 부담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나 보훈병원에 전가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법정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진료비 보전금이 부족하여 이·전용, 추경 편성 등을 통한 충당이 반복되는 것은 재정 운용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원활한 진료를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민간에 일정 부분 전가하게 됨으로써 국가 책임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진료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과거 실적치에 증감률을 적용하는 현행 추계 방식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지역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 대상 보훈대상자 현황과 진료비 상승 원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진료비 산출 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4-2. 제대군인 진료비 전년도 미지급금 정산에 따른 이·전용 과다 문제

가. 현 황

제대군인 의료지원[4] 사업은 전·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더라도 상이처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65억 5,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제대군인의료지원	2,365	2,365	-	4,190	6,555	6,555	-	-	2,301	2,301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동 사업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제대군인에 대해 실시한 진료비 일부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지급하고, 국가보훈부가 진료비 감면분을 국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보훈부 소관 세부사업인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보철구 지급 사업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부분을 따로 구분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나. 분석의견

제대군인에 대한 진료비 부족 및 전년도 미지급금 정산 등에 따른 이·전용 규모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에 대한 진료비 부족액을 다른 사업으로 충당하거나 다음연도 예산으로 사후정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4) 코드: 일반회계 2150-450

제대군인에 대한 진료비 역시 앞서 살펴본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 예산과 마찬가지로 매년 부족액 발생에 따라 이·전용을 통한 충당이 반복되고 있다. 이·전용 규모는 2021년 12억 8,400만원, 2022년 14억 800만원, 2023년 22억 8,4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24년도에는 재원 부족으로 인해 이·전용을 통한 충당도 불가능해지자 국가보훈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해야 할 보전금 51억 5,200만원 중 23억 6,500만원만을 지급하였고, 지급 소요의 54.1%에 해당하는 27억 8,7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연도별 제대군인 의료지원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지급소요	이·전용등	지급액	미지급액
2021	2,365	3,649	1,284	3,649	-
2022	2,365	3,773	1,408	3,773	-
2023	2,365	4,649	2,284	4,649	-
2024	2,365	5,152	-	2,365	2,787
2025	2,365	3,768	4,190	6,555	-

자료: 국가보훈부

2025년 예산은 이전과 동일한 23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 미지급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2025년 진료비 보전을 위한 지급소요도 37억 6,8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하자 국가보훈부는 부족액 충당을 위해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개선 세부사업에 편성된 보조금을 전용(2025.12.22.)하여 충당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미지급금은 2025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정산이 완료되었다.

이와 같은 제대군인 의료지원 진료비 부족 문제 역시 진료인원과 진료단가 추계 정확성이 부족하여 발생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024년 진료인원을 보훈병원 6,704명 위탁병원 1만 7,520명으로 추산하였으나 실제 진료인원은 보훈병원 7,001명, 위탁병원 3만 8,297명이었으며, 2025년 진료인원을 보훈병원 6,909명, 위탁병원 1만 2,953명으로 추산하였으나, 실제 진료인원은 보훈병원 7,232명, 위탁병원 4만 1,611명 수준이었다.

[연도별 진료인원 및 진료단가]

(단위: 명, 원)

구분		2023		2024		2025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보훈병원	인원	7,369	7,307	6,704	7,001	6,909	7,232
	단가	151,269	164,142	149,319	173,564	153,745	174,343
위탁병원	인원	25,545	32,965	17,520	38,297	12,953	41,611
	단가	46,445	102,715	74,199	101,124	95,656	58,717

주: 보철구 지원 예산 제외
자료: 국가보훈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국가보훈부로 하여금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제대군인 의료지원 진료비 부족 관련 국회 시정요구]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국가보훈부는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것	주의	국가보훈부

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24년 실제 지원인원과 단가에 최근 5년간 평균증감률을 적용한 후 보훈병원의 경우 지원인원 실소요의 77.3%인 5,488명, 위탁병원의 경우 지원인원 실소요의 29.3%인 1만 2,378명만을 반영하여 2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다.[5] 이는 실제 지급 소요 예상치가 아닌 확보 가능한 재정 여건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서 예산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라는 국회 시정요구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보철구 지급 예산 6,400만원이 다른 사업으로 이관된 것을 고려하면 이전까지와 같은 규모이다.

[2026년 제대군인 의료지원 진료인원 산정방식]

구분	산정방식
보훈병원	2024년 지원인원에 최근 5년간 평균증감률을 적용하되 77.3%만 반영
위탁병원	2024년 지원인원에 최근 5년간 평균증감률을 적용하되 29.3%만 반영

자료: 국가보훈부

[2026년 제대군인 진료비 편성내역]

(단위: 명, 원, 백만원)

구분	2025 실적			2026 예산		
	인원	단가	진료비	인원	단가	진료비
보훈병원	7,233	174,330	1,261	5,488	182,482	1,001
위탁병원	29,645	82,410	2,443	12,378	105,096	1,330
합 계	-	-	3,704	-	-	2,301

주: 보철구 지원 예산 제외
자료: 국가보훈부

이처럼 국가보훈부는 진료비 보전금이 부족하여 이·전용을 통한 충당이 반복되고 2024년에 발생한 미지급금을 다음연도말에 정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산정방식 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현행 방식으로 산출한 예산에 대해서도 일부만을 반영하는 등 비합리적인 재정 운용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진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 결산 심사 및 시정요구 취지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에 대한 진료비 부족액을 다른 사업으로 충당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추산 가능한 진료인원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예산 편성 관행을 반드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

5 시내버스 이용지원 미지급금 발생 및 장기화 문제

가. 현 황

교통시설 이용지원[1]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12억 6,200만원 중 112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교통시설이용지원	10,729	10,729	533	-	11,262	11,258	-	4	21,776	21,776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의 버스·고속열차·내항여객선 감면이용에 따른 비용을 국비로 보조하기 위해 1992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가보훈부는 교통수단에 따라 신용카드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철도공사, 개별 내항여객선사 등과의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시내버스와 내항 여객선의 경우 대상자등급별로 무임 또는 감면액이 적용되며, 고속열차의 경우 연간 6회 무임 이용 후 50% 감면액이 적용된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2139-318

[교통시설 이용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대상	감면율	비고
버스	시내(농어촌)버스 *좌석·광역(급행)·마을버스 제외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무임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시외버스	·애국지사 ·1~5급 상이 국가유공자 ·1~7급 5·18민주부상자	70% 감면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6~7급 상이 국가유공자 ·8~14급 5·18민주부상자	30% 감면	
	고속버스 * 프리미엄고속버스 제외	·애국지사 ·1~5급 상이 국가유공자 ·1~7급 5·18민주부상자	50% 감면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6~7급 상이 국가유공자 ·8~14급 5·18민주부상자	30% 감면	
열차 (KTX·SRT 포함)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지원공상, 재해부상자	연간 6회 무임 후 50% 감면	애국지사 및 1~2급 상이(장해)자는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내항 여객선		·애국지사 ·1~5급 상이 국가유공자 ·1~7급 5·18민주부상자	무임	육상거주자: 연 6회 도서거주자: 연 12회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6~7급 상이 국가유공자 ·8~14급 5·18민주부상자	50% 감면	

자료: 국가보훈부

나. 분석의견

시내버스 이용 지원 정산 방식 변경에 따른 보전율 상향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른 미지급금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보조금 미지급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제도개편에 따라 수반되는 재원 규모의 증가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는 2022년까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민영버스 이용지원 보조 협약을 통해 시내버스, 시외·고속버스 전체에 대해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2023년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와의 계약을 통해 감면액 전액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사전에 추계한 계약금액으로 정액 보조하는 방식이 유지되나,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확인 가능한 실제 이용액을 100% 정산하게 된 것이다.

[민간버스 이용 보조 방식 간 비교]

구분	협약 체결 대상	보전 방식
시외·고속버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계약에 의한 정액 보조
시내버스	신용카드사	이용액 전액 사후 보전

자료: 국가보훈부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 시행을 통한 보전 방식 변경 이후에도 매년 동 사업 예산을 보전 방식 변경 전인 2022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고 있다. 민영버스의 경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84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산출내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민영버스 보조 예산 편성 내역 및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산출내역
2021	7,979	2019년 버스감면액 × 평균운임인상률 × 보조율 0.4046
2022	8,484	2019년 버스감면액 × 평균운임인상률 × 보조율 0.43346
2023	8,484	전년 동
2024	8,484	전년 동
2025	8,484	전년 동

자료: 국가보훈부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신용카드사에 지급해야 할 사후 정산 보전금의 미지급액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 또는 이용액 감면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손실분을 국비로 전액 보전해야 하나, 편성 예산 규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면액의 일부만 보전하던 2022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부족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지급금 발생 규모는 2023년 40억 1,700만원, 2024년 59억 800만원, 2025년 56억 7,700만원이며, 2025년말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누적 미지급액이 156억 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시내버스 보조금 미지급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지급 소요액	보조금 교부액	미지급액	정산액	누적 미지급액
2023	11,154	7,137	4,017	-	4,017
2024	13,088	7,179	5,908	-	9,926
2025	12,867	7,190	5,677	-	15,603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요인, 코로나 이후 운임실적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증액 편성(8,484백만원→ 9,605백만원)하였으며, 시내버스 미지급금 정산 소요액을 추가로 반영하여 카드사에 대한 누적 미지급금을 정산 지급하였다.

[2026년 민간버스 이용지원 보조금 편성내역]

가. 민영버스 (19,531백만원)

· 무임이용 지원

86,875원(1인당 버스지원액) × 110,560명(대상자 수) = 9,605백만원

· 시내버스 정산 소요액

4,017백만원('23년 정산) + 5,909백만원('24년 정산) = 9,926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그러나 2026년 예산에는 정부 예산안 편성 당시 확인 가능했던 2023년과 2024년 미지급금 정산을 위한 재원만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5년에 추가로 발생한 미지급금 56억 7,700만원은 2026년 지급 소요를 위해 편성한 재원으로 정산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미지급금 장기화에 따른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정부 재정 부족으로 인한 부담을 민간에 전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동 사업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교통시설 무료 이용 또는 감면 이용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교통시설 이용 과정에서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금을 다음연도에도 정산하지 못해 민간사업자(신용카드사)의 부담을 장기화시키는 것은 보훈행정에 대한 국가 책임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과정에서 정부행정의 신뢰 저하로 이어져 사업 수행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시내버스 이용 지원 보조금 미지급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제도개편에 따라 수반되는 재원 규모의 증가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일반회계 전입 의존 문제

가. 현 황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손)자녀 생활지원금[1] 사업은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992억 2,800만원 중 988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손)자녀 생활지원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96,997	104,378	-	-	104,378	103,795	-	583	98,097
(손)자녀 생활지원금	91,878	99,228	-	-	99,228	98,810	-	418	92,981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2]에 근거하여 2018년 1월부터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3141-401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소요의 대부분을 기금 자체 재원이 아닌 일반회계 전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보훈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친일귀속재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지자체·국방부 등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기금 수입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3]에 근거하여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순애기금") 지출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실적을 살펴보면, 지급인원이 2021년 2만 498명에서 2025년 2만 2,556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요 재원 역시 2021년 877억 6,400만원에서 2025년 988억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지급 인원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매년 2만 1,186명으로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후 부족한 재원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연도별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편성	예산	79,534	87,849	91,878	91,878	91,878
	인원	18,766	20,535	21,186	21,186	21,186
지원	예산	87,764	90,504	93,378	94,865	98,810
	인원	20,498	20,905	21,479	21,734	22,556

자료: 국가보훈부

그런데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있어 일반회계 재정으로부터의 전입 의존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규모 대비 일반회계 전입 규모는 매년 90% 이상이었으며, 2025년의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경우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긴 하였으나 전입금이 차지하는 규모는 93.7%로 사실상 생활지원금 지급 소요 재원의 대부분을 재정으로부터 보전받고 있다.

[연도별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A)	87,764	90,504	93,378	94,865	98,810
일반회계 전입 규모(B)	80,826	88,848	92,651	92,651	92,583
일반회계 전입 비중(B/A)	92.1	98.2	99.2	97.7	93.7

자료: 국가보훈부

생활지원금 지출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 규모가 과다한 이유는 순애기금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예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제외한 순애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광복회관 임대 수입과 친일재산 매각액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연간 900억원 이상인 생활지원금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광복회관 임대 수입의 경우 임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4] 이후 매년 30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광복회관 운용에 필요한 지출 소요를 차감한 순수익은 2025년 9억 2,7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연도별 광복회관 임대사업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입	694	3,060	3,334	3,489	3,635	3,435	4,068
지출	2,024	2,699	2,407	2,416	3,063	3,079	3,141
순수익	△1,330	361	927	1,073	572	356	927

자료: 국가보훈부

순애기금 귀속 대상 친일 재산의 경우 총 1,600필지 중 2026년 1월 기준 778필지가 매각되고 822필지가 남아있으나, 잔여 재산의 공시가액은 404억 6,300만원

4) 2018.8. 준공 후 2019년 임차인 모집 진행

수준에 불과하며, 국가보훈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중 상당 부분이 도로, 하천, 공원, 군부대 등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매각이 제한되어 있다. 실제로 친일귀속재산 토지매각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15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한 이후 매각액과 수납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2025년에는 11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재산 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필지	면적	공시가액
귀속 재산(A)	1,600	8,745,026	84,975
매각 재산(B)	778	2,382,205	44,512
잔여 재산(A-B)	822	6,362,821	40,463

주: 2026년 1월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연도별 친일귀속재산 토지매각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필지	12	20	4	2	11	20	36
매각액	4	61	7	150	8	22	11
수납액	17	15	57	153	9	18	12

자료: 국가보훈부

이와 같이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출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순애기금의 자체수입 확대 가능성은 사실상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일반회계 전입 의존 또한 꾸준히 심화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은 지출 소요의 대부분을 일반회계 재정으로부터 전입하고 있음에도 기금 수입-지출 과정을 거침으로써 재정운용의 비효율과 복잡성만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보훈부 차원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친일귀속재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지자체·국방부 등과의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기금 수입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 이차보전 미지급금 발생 문제

가. 현 황

국가유공자 등 대부[1] 사업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저금리 대부를 국가보훈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대상자별 세부사업의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226억 7,900만원 중 221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8,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유공자 등 대부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계	22,679	22,679	-	-	22,679	22,192	-	487	22,679
국가유공자	22,388	22,388	-	-	22,388	21,991	-	397	22,388
5·18민주유공자	178	178	-	-	178	102	-	76	178
특수임무유공자	113	113	-	-	113	99	-	14	113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대부 관리[2] 사업은 직접 대부 수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에 대부 사업을 위탁한 후 은행이율과 보훈부대부 이율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대상자별 세부사업의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174억 1,000만원 중 173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을 불용하였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보훈기금 2259-387, 388, 389

2) 코드: 보훈기금 2259-390, 391, 392

[2025회계연도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계	10,657	17,410	-	-	17,410	17,372	-	38	11,100
국가유공자	10,498	17,161	-	-	17,161	17,123	-	38	10,927
5·18민주유공자	87	140	-	-	140	140	-	-	96
특수임무유공자	72	109	-	-	109	109	-	-	77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1962년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접 대부 사업을 수행해왔으나,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7년 위탁대부 방식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위탁대부는 민간은행 전용 상품인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는데, 국가보훈부는 시중금리와 보훈금리 간의 차이를 보훈기금 재원으로 보전하고 있으며, 신용에 문제가 있어 민간은행을 통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민간은행 상품을 통해 실시된 대출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가 해당 채권을 양수하고 있는데, 채권 양수 재원은 직접 대부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국가보훈부 대부(융자) 사업 개요]

구분	대상	대출기관	재원	담보	금리
위탁대부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1명 또는 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제대군인	위탁은행 (AA은행, BB은행)	은행자금 (금리차 국가 지원)	보훈급여금, 부동산, 보증보험	고정금리
직접대부	상기 대출 대상 중 은행 대출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 등	보훈관서	보훈기금	보훈급여금, 부동산, 연대보증	고정금리
채권양수	6개월 이상 미납된 위탁대부 채권		보훈기금		

자료: 국가보훈부

나. 분석의견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 사업 이차보전율 과소 계상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및 미지급금 발생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이차보전 규모 산정에 필요한 누적 잔액 증가 추세와 시중금리 변동 현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 사업의 연도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 매년 이차보전금 지급 부족액 충당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증액 변경이 반복되고 있다. 증액 변경 규모는 2022년 47억 4,800만원, 2023년 61억 800만원, 2024년과 2025년 67억 5,300만원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액 대비 과도한 규모이다.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증·감 변경액	계획현액	집행액
2021	3,576	△2,066	1,510	1,487
2022	3,031	4,748	7,779	7,779
2023	4,727	6,108	10,835	10,835
2024	10,527	6,753	17,280	17,280
2025	10,547	6,753	17,300	17,300

주: 대상자별 세부사업을 합산한 규모임
자료: 국가보훈부

계획액 부족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보훈부가 이차보전 재원 산정 근거가 되는 대출채권 누적 잔액과 이차보전율을 과소 계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채권 누적 잔액은 2023년부터 이미 6,000억원을 크게 상회하여 2024년에는 7,000억원 수준이었으나, 국가보훈부는 2025년 계획액 편성 당시 평균 잔액을 6,04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차보전율 역시 최근 실적치에 비해 낮게 설정하고 있다. 이차보전율의 차이는 국가보훈부가 계획액을 지원 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2022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추세[3]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시중금리 추이(신용): (2022.1.) 3.3%, → (2022.12.) 6.18%, → (2023.9.) 5.55% → (2024.9.) 5.10% → (2025.9.) 4.24%

[최근 3년간 누적 대출채권 평균 잔액 및 이차보전율 현황]

(단위: 백만원, %p)

연도	누적 대출 평잔		이차보전율	
	계획	지출	계획	실적
2023	585,400	646,289	0.81	1.68
2024	587,220	683,041	1.79	2.53
2025	604,495	667,228	1.74	2.59

주: 누적 잔액은 대상자별 수치 합산액, 이차보전율은 대상자별 평잔 합산액에 대상자별 이차보전액 합산액으로 계산

자료: 국가보훈부

또한, 국가보훈부는 살펴본 바와 같은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변경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지급소요를 모두 충당하지 못해 매년 미지급금을 발생시키고 있다. 미지급금 규모는 2022년 1억 2,6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 96억 8,000만원, 2024년 119억 6,900만원, 2025년 75억 1,800만원으로 앞서 살펴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액과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계획 규모 대비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 사업 미지급금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미지급액(A)	당해연도 발생 지급소요액(B)	당해연도 지급액(B)	미지급액 (A+B-C)	미지급액 사후지급일자
2021	-	1,561	1,487	74	2022.1.14
2022	74	7,831	7,779	126	2023.1.13.
2023	126	20,389	10,835	9,680	2024.1.15.
2024	9,680	19,569	17,280	11,969	2025.1.15.
2025	11,969	12,849	17,300	7,518	2026.2.13.

주: 대상자별 세부사업을 합산한 규모임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당해연도에 편성한 계획액과 기금운용계획 증액변경으로도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액을 다음연도 계획액을 통해 연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1월 15일에 전년도 미지급액 119억 6,900만원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은 계획액으로는 당해연도 지급 소요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 대상 대출의 경우 1월~4월 청구분에 대해

서만 지급되었고, 특수임무유공자 대상 대출의 경우 1월부터 3월까지 청구분에 대해서만 지급되었으며, 5·18민주유공자 대상 대출의 경우 전년도 미지급분조차 다 정산하지 못하여 당해연도 청구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25년 세부사업별 지출액 구성]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지출액	지출액 구성
국가유공자 대부관리	17,051	① 11,738: 전년도 미지급분 ② 5,240: '25.1월~4월 청구분 ③ 73 '25.5월 청구분 중 일부
5·18민주유공자 대부관리	140	① 140: 전년도 미지급분
특수임무유공자 대부관리	109	① 80: 전년도 미지급분 ② 22: '25.1월~3월 청구분 ③ 7: '25.4월 청구분 중 일부
합 계	17,300	-

자료: 국가보훈부

이처럼 매년 적정 이차보전율을 산정하지 못하고 연내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한 국회 심사 취지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정부의 기금운용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또한, 반복적인 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정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민간은행에게 금리 인하에 따르는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보훈행정에 대한 국가 책임 측면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이차보전 규모 산정에 필요한 누적 잔액 증가 추세와 시중금리 변동 현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과 미지급금 발생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394억 2,600만원이며, 8,262억 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5.7%인 3,779억 4,700만원을 수납하고 4,482억 6,1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 처리한 금액은 없다.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39,426	539,426	539,426	826,209	377,947	448,261	-	45.7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642억 9,900만원이며, 이 중 97.6%인 1,604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9,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5억 7,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63,370	163,370	164,299	160,426	299	3,574	97.6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라.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산은 1,900억 8,200만원, 부채는 156억 8,500만원으로 순자산은 1,743억 9,8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1,722억 6,400만원, 유·무형자산 173억 2,300만원, 기타자산 496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993억 3,100만원(△34.3%)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미수채권 등 금융자산이 955억 1,300만원 감소(△35.7%)하였고, 유·무형자산이 감가상각으로 40억 9,200만원 감소(△19.1%)하였기 때문이다.

부채는 차입부채 18억 7,600만원, 충당부채 138억 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억 6,700만원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금융리스부채 상환으로 인해 차입부채가 4억 5,500만원 감소(△19.5%)하였으나, 소송충당부채가 9억 2,100만원 증가(7.1%)하였기 때문이다.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90,082	289,413	△99,331	△34.3
Ⅰ. 금융자산	172,264	267,777	△95,513	△35.7
Ⅱ. 유·무형자산	17,323	21,415	△4,092	△19.1
Ⅲ. 기타자산	496	221	275	124.4
부 채	15,685	15,218	467	3.1
Ⅰ. 차입부채	1,876	2,331	△455	△19.5
Ⅱ. 충당부채	13,809	12,888	921	7.1
Ⅲ. 기타부채	-	-	-	-
순 자 산	174,398	274,195	△99,797	△36.4
Ⅰ. 기본순자산	7,933	7,933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63,591	263,355	△99,764	△37.9
Ⅲ. 순자산 조정	2,874	2,907	△33	△1.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1,419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의 3,462억 5,800만원보다 2,043억 1,100만원 감소(△59.0%)하였다. 이는 주로 관리운영비 중 인건비가 34억 3,200만원 증가하였으나, 기타국가운영비용인 대손상각비가 1,736억 9,700만원 감소하는 등 비배분비용이 전년대비 1,787억 9,100만원 감소(△97.6%)하였고 기타국가운영수익인 대손충당금환입이 342억 4,800만원 발생하는 등 비배분수익이 전년대비 336억 8,300만원이 증가(2,621.2%)하였기 때문이다.

2025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 846억 100만원이며, 총 3개 프로그램은 경쟁촉진 프로그램(199억 4,100만원),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프로그램(28억 8,400만원), 소비자후생 증진(617억 7,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74억 8,900만원, 운영비 162억 8,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국가운영비용 43억 5,300만원, 비배분수익은 기타국가운영수익 349억 6,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프로그램순원가	84,601	82,183	2,418	2.9
Ⅱ. 관리운영비	87,961	82,216	5,745	7.0
Ⅲ. 비배분비용	4,353	183,144	△178,791	△97.6
Ⅳ. 비배분수익	34,968	1,285	33,683	2,621.2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41,947	346,258	△204,311	△59.0
Ⅵ. 비교환수익 등	-	-	-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41,947	346,258	△204,311	△59.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성질별 재정운영결과는 1,419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의 3,462억 5,800만원보다 2,043억 1,100만원 감소(△59.0%)하였다.

이는 주로 출연사업비 등 이전비용은 전년대비 16억 8,800만원 증가(2.5%)하였고 대손충당금환입 증가 등 기타 국가운영수익이 336억 8,300만원 증가(2,621.2%)하였으나, 대손상각비 감소 등 국가운영비용이 1,723억 1,600만원 감소(△61.3%)하였기 때문이다.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성질별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수익합계(a)	34,968	1,285	33,683	2,621.2
Ⅰ.이전수익	-	-	-	-
Ⅱ.국가운영수익	34,968	1,285	33,683	2,621.2
비용합계(b)	176,915	347,543	△170,628	△49.1
Ⅲ.이전비용	68,124	66,436	1,688	2.5
Ⅳ.국가운영비용	108,791	281,107	△172,316	△61.3
재정운영결과(b-a)	141,947	346,258	△204,311	△59.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기말순자산은 1,743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말 2,741억 9,500만원보다 997억 9,700만원 감소(△36.4%)하였다. 이는 주로 재정운영결과가 전년대비 2,043억 1,100만원 감소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4,250억 8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4,204억 7,1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3,782억 8,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274,195	153,295	120,900	78.9
Ⅱ. 재정운영결과	141,947	346,258	△204,311	△59.0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2,183	467,191	△425,008	△91.0
Ⅳ. 조정항목	△33	△33	-	-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74,398	274,195	△99,797	△36.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중에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5,374억 7,500만원은 주로 제재금수익으로 인한 부담금 제재금 수입 등에서 발생하였고,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5,358억 6,200만원은 제재금 수입금의 국고이전지출 등에서 발생하였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6억 2,100만원은 관사 임차보증금의 반납 등으로 발생하였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6억 9,500만원은 주로 일반유형자산 취득 등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5억 3,900만원은 주로 관사임차보증금 지급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현금흐름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13	-	1,613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74	-	△1,074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9	-	△539	-
Ⅳ. 현금의증감(Ⅰ + Ⅱ + Ⅲ)	-	-	-	-
Ⅴ. 기초의현금	-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② 대외활동 강화 사업** 등이 있다.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전부처 공통 관서업무추진비 감액을 반영하여 0.14억원이 감액(13.6억원→ 13.46억원)되었고, 대외활동 강화 사업은 행사·홍보성 경비를 일부 감액반영하여 0.08억원이 감액(6.26억원 →6.18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없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은 없다.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②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③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④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을 2025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플랫폼 운용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전용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다른 사업의 규모 조정이 수반되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규정 및 정부 지침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점검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이 계약서에 미반영된 사유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간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 불균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대상 홍보 및 컨설팅 확대 등의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동제 미반영 합의 강요, 분할 계약 등 원사업자의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사업 분석

1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소프트웨어 운용 방식 변경에 따른 이·전용 문제

가. 현 황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1]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사업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7억 8,300만원 중 5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795	1,792	-	20	1,812	1,589	203	20	1,304	1,304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660	660	-	123	783	578	203	2	173	173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란 소비자가 대금을 2개월 또는 2회 이상 나누어 선지급하고 상조·적립식 여행 등의 서비스를 공급받는 형태의 거래로, 서비스 제공 시기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대금을 선지급한 후 상당 기간 후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성상 업체 폐업 등의 사정이 발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1431-600

생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소비자가 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 목적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사업 내용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의 가입 정보, 납입 금액, 고인의 상조 상품 가입 여부 등을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시장 현황·사업자 재무 정보 등을 통합 공시하는 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방식	구축 용역 위탁(입찰)
사업 기간	2025. 6. 26 ~ 2026. 9. 30.
사업 비용	예산 660,000,000원(계약 금액 653,257,000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는 상품 가입 여부, 계약 정보, 시장·사업자 관련 통계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 현황과 통계 및 사업자의 법 위반내역 등을 관리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사용자별 주요 기능(안)]

구분	내 용
소비자	-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 확인 - 가입 상품 계약정보 조회 - 상속인의 사망자 가입 여부 조회 -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시장상황·사업자 관련 통계 조회
정부	- 시장 현황·통계 관리 - 법 위반내역 관리
사업자	- 경영·재무정보 제출·관리 -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관리 - 선수금 등 정보 제출·관리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분석의견

첫째,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플랫폼 운용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전용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다른 사업의 규모 조정이 수반되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규정 및 정부 지침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점검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6억 6,000만원으로 반영하였으나,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소요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1억 2,300만원을 전용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예산	전용규모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비목		
선진소비자 정책추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자산취득비	-	123
	소비자정책 연구용역	일반연구비	40	△23
	전자상거래분야 거래환경개선	일반연구비	50	△20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운영	일반수용비	38	△38
		업무추진비	2	△2
	소비자관련 법률 교육컨텐츠 제작	일반용역비	40	△20
소비자권익 증진지원	우수시지자체 포상금	포상금	20	△2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내역]

(단위: 백만원)

품명	수량	단가	지출 규모
DB암호화	2	34	69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AGENT	2	9.4	18.8
통합계정관리(IAM)	2	9	18
통합계정인증(SSO)	2	6	12
형상관리 AGENT	2	1.5	3
조달수수료	2	0.54	0.6
합 계			12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 구입 재원을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전용으로 충당해야 했던 이유는 ISP 수립(2024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플랫폼 운용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하려는 플랫폼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ISP를 수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이용량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플랫폼 구축 예산에 자체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대상 기관 및 정보]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		
내부업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제외**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프트웨어 구입 재원을 다른 사업 예산의 전용을 통해 확보함에 따라 감액된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 문제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정책연구용역 및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 개선의 일반연구 사업의 경우 당초 관련 연구용역을 각각 1~2건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전용 감액으로 인해 우선 추진 필요성이 높은 연구용역 각 1건씩을 수행하는 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관련 법률 교육컨텐츠 제작 내역사업의 경우 기존 제작 콘텐츠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운영 내역사업과 소비자권익 증진 지원 사업의 우수 지자체 포상금 내역사업은 편성된 예산 전액을 전용 감액하면서 2025년 실적이 창출되지 못하였다.

[전용 감액 사업의 당초 추진 계획 및 2025년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감액 규모	예산 현액	기존 사업추진 목표	사업추진 실적
선진 소비자 정책 추진	소비자 정책연구 용역	40	17	소비자정책 관련 연구용역 1~2건 추진	연구용역 과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우선 추진 필요성이 높은 연구용역 1건 수행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 개선	50	30	전자상거래 분야 등 연구용역 1~2건 추진	연구용역 과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우선 추진 필요성이 높은 연구용역 1건 수행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운영	38	-	소비자피해 발생 예상분야를 신규 발굴하여 위반행위 점검 추진	집행실적 없음
	소비자관련 법률 교육컨텐츠 제작	40	20	그린워싱, AI 부당광고 등 신유형 부당광고 피해 예방 교육콘텐츠 제작·홍보	기존 제작 콘텐츠를 활용하고, 일부 콘텐츠는 AI를 활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운영 효율화 추진
소비자 권익 증진 지원	우수지자체 포상금	20	-	전국 지자체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	집행실적 없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처럼 ISP 수립 단계에서 정부 지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운용 방식(민간 클라우드 이용 → 소프트웨어 확보)이 변경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 준비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운용 방식이라는 핵심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전용을 통해 충당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의 축소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정부 지침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점검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에서 관리할 예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 가입 정보 등의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개정안 심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사업에 편성된 플랫폼 구축비 6억 6,000만원 중 2억 3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 잔금이 지급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플랫폼 구축이 지연된 이유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에서 관리할 예정인 소비자 가입 정보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제기됨에 따라 구축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기 때문이다.[2)]

이에 현재(2026년 6월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및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 등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플랫폼 구축 지연이 장기화되고 2025년도 이월액이 불용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플랫폼 구축이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신규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간 인식 차이 개선 필요

가. 현 황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하도급분야 거래행태개선은 하도급분야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5억 4,700만원 중 14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5,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하도급분야 거래행태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1,718	-	-	-	1,718	1,631	-	87	2,696	2,696
하도급분야 거래행태개선	1,551	1,551	-	△4	1,547	1,493	-	54	2,529	2,529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내역사업을 통해 하도급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조사(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 기술탈취·유용 행위 예방 및 사건 처리,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급변하더라도 이에 연동하여 납품단가가 조정되게 함으로써 원-수급사업자간 비용 분담 효과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2023년 10월 시행된 제도이다.

연동 대상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비용'(2026.8.시행 예정)이며,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요건, 연동 산식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1331-400

등을 자율적으로 정한 후 요건 충족 시 대금이 자동으로 증액 또는 감액되도록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하도급대금 규모가 1억원 이하인 소액 계약인 경우,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양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개요]

구분	내 용
사업 목적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원-수급사업자 간 비용 분담 도모
사업 내용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이에 연동하여 납품단가 자동 조정 요건을 하도급 계약에 반영
사업 수행방식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요건, 연동 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정한 후 요건 충족 시 대금 증액 또는 감액 조정
연동 대상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비용'
연동 예외사항	① 소액 거래(하도급대금 1억원 이하)인 경우 ② 단기 거래(거래기간 90일 이내)인 경우 ③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④ 양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분석의견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이 계약서에 미반영된 사유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간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 불균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대상 홍보 및 컨설팅 확대 등의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동제 미반영 합의 강요, 분할 계약 등 원사업자의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 및 간담회, 컨설팅, 우수사례 발표 등과 함께 연동제 적용 현황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매년 원사업자 1만개사, 수급사업자 9만개사 대상으

로 진행되며, 2025년의 경우 원사업자 조사 대상의 88.1%인 8,806개사와 수급사업자 조사 대상의 24.1%인 21,703개사가 조사에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비슷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원사업자의 15.6%와 수급사업자의 14.8%가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원사업자의 55.4%와 수급사업자의 55.1%가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 존재 여부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단위: 개사, %)

구분	해당항목 응답 수	있음	없음	잘 모름
원사업자	25,824 (100.0)	4,024 (15.6)	14,303 (55.4)	7,497 (29.0)
수급사업자	599,996 (100.0)	88,665 (14.8)	330,299 (55.1)	181,033 (30.2)

주: 항목별 응답 업체 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수치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계약서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인식 정도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모든 계약 또는 일부 계약에 반영된 것으로 응답한 원사업자는 전체 응답 수의 73.3%,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 수의 73.5%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계약서 반영 여부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단위: 개사, %)

구분	해당항목 응답 수	모든 계약 반영	일부 계약 반영	모든 계약 미반영
원사업자	4,024 (100.0)	1,568 (39.0)	1,381 (34.3)	1,075 (26.7)
수급사업자	88,665 (100.0)	53,165 (60.0)	11,997 (13.5)	23,502 (26.5)

주: 항목별 응답 업체 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수치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그런데,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거나 합의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6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 계약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5%, 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 계약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4.3%로 뒤를 이은 반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2.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연동 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4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와 합의하였거나 합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7.6%, 거래 규모가 소액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6.5%, 단기 계약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3.3%로 원사업자의 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 계약서 미반영 사유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단위: 개사, %)

구분	해당항목 응답수	합의 (예정)	소액	단기	이해 부족	원사업자 소기업	기타
원사업자	2,456 (100.0)	**1,607** **(65.4)**	798 (32.5)	597 (24.3)	303 (12.3)	57 (2.3)	178 (7.3)
수급 사업자	35,499 (100.0)	9,791 (27.6)	5,853 (16.5)	4,720 (13.3)	**14,396** **(40.6)**	1,432 (4.0)	3,493 (9.8)

주: 1. 항목별 응답 업체 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수치임
2. 중복응답이 반영된 수치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처럼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상 입장 및 지위 등에 따른 인식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동제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수급사업자는 연동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원사업자(39.3%)가 수급사업자(30.3%)에 비해 높은 반면 전혀 모

른다고 응답한 비중은 수급사업자(35.4%)가 원사업자(19.2%)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단위: 개사, %)

구분	해당항목 응답 수	알고 있음	명칭은 알지만 내용은 잘 모름	전혀 모름
원사업자	25,824 (100.0)	10,138 (39.3)	10,724 (41.5)	4,962 (19.2)
수급사업자	599,996 (100.0)	181,866 (30.3)	205,985 (34.3)	212,145 (35.4)

주: 항목별 응답 업체 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수치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연동제 계약 미반영 사유를 ①합의하였거나 합의할 예정, ②하도급 대금 1억원 미만인 소액 계약, ③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 계약이라는 응답 비중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결과에 대해 계약 과정에서의 편법 또는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제 미반영 합의를 강요하였거나, 하도급거래 계약을 분리 계약하여 대금 규모 또는 거래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을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계약에 연동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합의, 소액 계약, 단기 계약 등의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수급사업자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연동제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거래당사자 간 지위 불균형에 따른 연동제 미반영 사례가 상당 부분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실질적 협상에 기반한 하도급대금 연동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사업자 대상 교육·컨설팅 등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하여, 현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연동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벌점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하도급대급 연동제와 관련한 원사업자의 탈법

행위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2]이 논의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아직 시행(2023.10.4.) 초기 단계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제도 미반영 사유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하도급거래 관행에 있어 연동제 정착 및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되, 특히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집중적인 컨설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연동제를 계약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강요, 분할 계약 등 원사업자의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 발생 시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6.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3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개선을 위한 신고 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등

가. 현 황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사업은 공정거래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32억원 중 13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3,470	3,470	-	46	3,516	1,711	-	1,805	2,074	2,074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3,200	3,200	-	-	3,200	1,397	-	1,803	1,710	1,710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신고로 인한 적발이 효과적인 14가지 행위유형을 구분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1251-330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유형]

①부당공동행위 ②사업자단체금지행위 ③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④부당지원행위 ⑤부당고객유인행위 ⑥사원판매행위 ⑦미등록다단계 ⑧사행적판매원확장금지 ⑨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⑩하도급법 위반행위 ⑪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⑫가맹거래법 위반행위 ⑬대리점법 위반행위 ⑭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포상금 규모는 신고된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액에 대해 구간별 요율을 적용하여 기본액을 산정하며, 지급기본액이 최저지급기본액 미만으로 산정될 경우 최저지급기본액을 적용하고 있다. 지급 한도는 담합 30억원, 부당지원·사익편취 20억원,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 5억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것은 포상금 지급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와 건전한 신고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문화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은 총 34건에 대해 13억 4,700만원이 지급되어 포상금 지급 계획 31억 5,0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건수는 2023년 67건 이후 2024년 37건, 2025년 34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액 또한 2023년 33억 6,200만원에서 2024년 14억 1,500만원, 2025년 13억 4,700만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단위: 건, 천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지급건수	31	43	67	37	**34**
	지급액	2,353,500	3,157,982	3,361,515	1,414,595	**1,347,069**
부당한 공동행위	지급건수	6	9	17	14	8
	지급액	2,186,000	2,486,220	3,214,290	897,757	1,288,515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지급건수	4	3	17	5	3
	지급액	7,200	892	75,385	2,550	5,130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지급건수	2	2	2	-	-
	지급액	650	300	300	-	-
부당한 지원행위	지급건수	2	2	-	1	-
	지급액	148,300	573,700	-	470,450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지급건수	1	1	2	-	4
	지급액	400	6,120	20,270	-	6,500
사원판매행위	지급건수	-	-	2	-	1
	지급액	-	-	1,900	-	400
미등록다단계	지급건수	1	-	1	-	1
	지급액	1,000	-	250	-	300
사행적판매원 확장금지	지급건수	-	-	-	-	1
	지급액	-	-	-	-	1,500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지급건수	-	1	1	1	-
	지급액	-	51,955	31,760	17,238	-
하도급법 위반행위	지급건수	-	-	-	-	1
	지급액	-	-	-	-	4,000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지급건수	-	-	-	-	-
	지급액	-	-	-	-	-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지급건수	15	24	22	13	14
	지급액	9,950	38,295	7,600	24,300	39,974
대리점법 위반행위	지급건수	-	1	3	2	1
	지급액	-	500	9,760	700	750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행위	지급건수	-	-	-	1	-
	지급액	-	-	-	1,60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및 2025년의 경우 2023년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사건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작아 이에 연동하는 포상금 규모도 감소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 포상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제도개편을 통해 지급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사건 과징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과징금 규모	149,023	321,120	46,047	59,492
포상금 규모	3,158	3,362	1,415	1,34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다만,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신고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포상금 규모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일 수 있으며, 후술할 내용인 포상금 지급 대상 요건에 대한 모호한 규정에 따른 해석 문제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SNS를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 방안을 활용하고 있으나, 최근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홍보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현황]

연도	홍보 내용
2022	버스 내부 영상 게시 및 블라인드를 통해 홍보
2023	지하철 내부 홍보배너 게시 및 블라인드,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
2024	포스터·리플릿 배포, 배너광고·인포그래픽 영상의 블라인드 앱, 유튜브 등 매체별 광고 집행
2025	직장인 어플 '블라인드' 내 신고포상금 홍보 동영상 게시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매체별 광고 집행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처럼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가 감소하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것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도모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동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문화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제외 요건을 규정한 일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시행령의 경우 법 위반 사업체의 임직원에 대한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자 편의 제고 및 적극적인 내부 신고 독려 등을 위해 지급요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 관련 6개 법률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제외 요건을 각각의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급 대상자 제외 요건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공급업자 등을 포함) 및 그 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위반 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언급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른 법 시행령과 달리 임직원 중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을 신고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와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특성상 위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의 내부신고 없이는 위반행위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2]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경우 예외적으로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존에는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본문에서 설명한 목적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다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3] 이는 앞서 설명한 취지상 타당한 측면이 있는 조치로 보인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법률 시행령의 지급 대상자 제외 요건]

근거 규정	해당 법률 시행령의 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외 요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신고자 또는 제보자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해당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또는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해당 위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 및 그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해당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가맹본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해당 위반행위를 한 공급업자 및 그 공급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다만, 각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자', '원사업자'의 개념과 시행령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내부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를 정의함에 있어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를 정의함에 있어 임직원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5] 신고자 입장에서

3) 내부신고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포상금을 별도로 구분·관리하지는 않고 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시행령 규정을 해석하기에 따라 자신의 수급 가능성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자 편의 제고 및 적극적인 내부 신고 독려 등을 위해 포상금 지급요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4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제도 운영 현황 분석

가. 현 황

과징금[1]은 공정거래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처분으로, 2025년 징수결정액 7,926억 3,300만원 중 3,636억 4,800만원이 수납되었다.

[2025회계연도 과징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과징금	534,811	534,811	534,811	792,633	363,648	428,985	-	45.9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분석의견

정부의 계획대로 반복된 담합 기업에 대해 리니언시 혜택을 축소하는 제도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담합 기업에게 부과되는 불이익 확대, 담합 적발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내부신고 문화 안착,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징후에 대한 조사 강화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상향, 조사 인력 확대 등의 제도개선 세부사항을 적절히 추진하는 등 리니언시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리니언시 제도란 사업자가 자신의 담합행위를 자진신고 하거나, 증거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시정조치, 고발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2]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56-565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현직 임직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의 증거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간 자진신고 가능성에 따른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담합을 해체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부터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감경조치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였거나,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자진신고한 담합을 중단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순위에 따라서 감면 여부 및 정도가 결정된다. 1순위 신고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시정명령·고발조치 등이 면제되며, 2순위 신고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50% 및 시정명령 감경과 고발조치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리니언시 제도 자진신고 순위별 감면요건 및 감면내용]

구분	1순위	2순위
감면요건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두번째의 자일 것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해당없음)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	(좌동)
	자진신고한 담합을 중단하였을 것	(좌동)
	담합을 강요했거나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지 않았을 것	(좌동)
감면내용	과징금·시정명령·고발 면제	과징금(50%) 및 시정명령 감경, 고발 면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를 통해 제재조치를 감면받았던 사업자가 감면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담합행위를 하거나, 과거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조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제한요건도 마련되어 있다.[3)]

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리니언시 제도 시행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건수는 총 958건이며, 과징금 부과 대상 사건 중 리니언시가 적용된 건수는 561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60.1% 수준이다. 2024년에는 52건의 과징금 부과 대상 담합 사건 중 46건(88.5%)에 대해 리니언시 혜택이 적용되었다.

[최근 5년간 리니언시 제도 적용 담합 사건 수]

(단위: 건, %)

연도	과징금 부과 담합 사건 (A)	과징금 부과 대상 중 리니언시 적용 건수(B)	리니언시 적용 비율 (B/A)
2020	68	48	70.6
2021	52	34	65.4
2022	45	28	62.2
2023	47	24	51.1
2024	52	46	88.5
누적 (1999~)	958	561	60.1

주: 과징금 부과 담합 사건 수 기준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과징금 부과액수 및 감면액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4] 2025년에는 147건의 과징금 부과 건수 중 95건에 대해 과징금 감경이 이루어졌고, 액수로는 2,646억 1,600만원의 부과액 중 416억 8,700만원이 감경되어 최종적으로 2,229억 2,900만원이 부과되었다.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시 제도 최초 시행 이후 누적 통계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과 함께 현재 확인 가능한 2008년 이후 통계 자료를 제출하였다

[최근 5년간 리니언시 제도 과징금 감경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과징금 부과건수	과징금 감경건수	과징금 부과액 (A)	과징금 감면액 (B)	최종 부과액 (A-B)
2021	55	34	552,164	125,275	426,889
2022	45	28	908,737	163,649	745,088
2023	47	24	175,529	45,579	129,950
2024	52	46	218,124	47,994	170,130
2025	147	95	264,616	41,687	222,929

주: 과징금 부과 건수 및 액수 기준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그런데 최근 담합 참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 번 담합이 적발된 경우 더 오랫동안 리니언시 감면에 불이익이 발생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진신고 감면을 받거나,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지 5년 이내에 다시 담합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감면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에 더하여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행위를 할 경우에도 과징금 감경 혜택 수준이 1/2로 축소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전액이 면제되으나 50% 감경으로 변경되며, 2순위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감경률은 기존 5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담합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리니언시 혜택을 축소시킴으로써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고 준법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긍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번 조치만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혜택 자체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적어도 기존에 담합으로 제재를 받거나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지 5년 이상 된 사업자에게는 자진신고 유인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혜택 축소 대상인 기업이 이미 담합에 다시 참여한 상황이라면 자진신고 하기보다는 담합 징후를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담합의 경우 자진신고 또는 내부신고 없이는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담합의 증거를 원활하게 확보하고자 한 취지에는 다소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반복된 담합 기업에 대해 리니언시 혜택을 축소하는 제도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담합 기업에게 부과되는 불이익 확대, 담합 적발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내부신고 문화 안착,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징후에 대한 조사 강화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4월 30일부터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확대를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시행하였고, 담합 징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26년 6월 18일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2026년 6월 11일 입법예고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선사항이 적기에 반영되고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리니언시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011억 700만원이며, 2,255억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5.5%인 1,250억 7,000만원을 수납하고 1,004억 7,6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01,107	101,107	101,107	225,546	125,070	100,476	0	55.5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조 6,706억 6,000만원이며, 이 중 99.9%인 5조 6,688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6,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7,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183,766	5,670,620	5,670,660	5,668,816	69	1,775	99.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나.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29조 9,259억 3,800만원이며, 46조 3,888억 1,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6.5%인 26조 2,257억 7,400만원을 수납하고 18조 1,372억 1,5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조 8,336억 2,8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공적자금상환기금	6,438,424	6,438,424	6,438,424	6,066,405	5,950,405	0	0	98.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2,265,114	2,265,114	2,265,114	4,765,320	2,237,578	2,459,179	68,563	47.0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51,095	51,095	51,095	125,330	49,130	0	0	39.2
신용보증기금	11,512,538	11,612,538	11,612,538	22,866,874	9,381,044	12,068,568	1,417,261	41.0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4,749,605	4,749,605	4,749,605	3,434,340	3,434,340	0	0	100.0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4,809,162	4,809,162	4,809,162	9,130,548	5,173,277	3,609,468	347,804	56.7
합계	29,825,938	29,925,938	29,925,938	46,388,817	26,225,774	18,137,215	1,833,628	56.5

자료: 금융위원회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29조 9,259억 3,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계획현액은 29조 9,365억 2,400만원으로 이 중 87.6%인 26조 2,257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7,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조 2,153억 9,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공적자금상환기금	6,438,424	6,438,424	6,438,424	5,950,405	0	485,712	92.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2,265,114	2,265,114	2,265,114	2,237,578	0	3,355	98.8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51,095	51,095	51,095	49,130	0	961	96.2
신용보증기금	11,512,538	11,612,538	11,622,295	9,381,044	0	921,323	80.7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4,749,605	4,749,605	4,749,605	3,434,340	0	602,198	72.3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4,809,162	4,809,162	4,809,991	5,173,277	271	201,841	107.6
합계	29,825,938	29,925,938	29,936,524	26,225,774	271	2,215,390	87.6

자료: 금융위원회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5,951억 6,400만원(△15.2%)이 감소한 3조 3,257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조 914억 1,100만원(△38.6%)이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44,616	101,107	101,107	125,070	23,963	△19,546
기금	5,272,531	3,819,793	3,819,793	3,200,666	△619,127	△2,071,865
합계	5,417,147	3,920,900	3,920,900	3,325,736	△595,164	△2,091,41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억원(△0.1%)이 감소한 3조 1,688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6,692억 4,700만원(111.3%)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499,429	1,683,766	3,170,660	3,168,816	△1,844	1,669,387
기금	141	57	57	1	△56	△140
합계	1,499,570	1,683,823	3,170,717	3,168,817	△1,900	1,669,247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라.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금융위원회의 자산은 38조 2,487억 700만원, 부채는 20조 7,318억 2,100만원으로 순자산은 17조 5,168억 8,5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37조 6,462억 9,600만원, 유·무형자산 5,700억 200만원, 기타자산 324억 9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조 2,423억 300만원(15.9%) 증가하였다. 이는 선급법인세 등 기타자산이 343억 3,400만원 감소되었으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확대 등으로 금융자산이 전년 대비 5조 2,585억 6,5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15조 3,163억 200만원, 충당부채 4조 7,304억 8,900만원, 기타부채 6,850억 3,0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조 78억 4,200만원(22.5%) 감소하였다. 이는 정부내차입금의 상환 등에 따라 차입부채가 5조 5,657억 200만원 감소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38,248,707	33,006,404	5,242,303	15.9
Ⅰ. 금융자산	37,646,296	32,387,731	5,258,565	16.2
Ⅱ. 유·무형자산	570,002	551,930	18,072	3.3
Ⅲ. 기타자산	32,409	66,743	△34,334	△51.4
부 채	20,731,821	26,739,663	△6,007,842	△22.5
Ⅰ. 차입부채	15,316,302	20,882,004	△5,565,702	△26.7
Ⅱ. 충당부채	4,730,489	5,175,776	△445,287	△8.6
Ⅲ. 기타부채	685,030	681,884	3,146	0.5
순 자 산	17,516,885	6,266,741	11,250,144	179.5
Ⅰ. 기본순자산	76,948,724	76,948,724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61,183,504	△68,756,045	7,572,540	11.0
Ⅲ. 순자산 조정	1,751,666	△1,925,938	3,677,604	191.0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수입(수익)이 재정지출(비용)을 초과하여 순이익이 4조 251억 3,7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4조 8,646억 3,900만원, 관리운영비 2,140억 300만원, 비배분비용 4,449억 6,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조 4,273억 4,500만원, 비배분수익 1조 5,461억 1,400만원, 비교환수익등 5조 5,752억 8,7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6,929억 6,400만원(△30.9%) 감소한 1조 5,501억 5,000만원이며 이는 농림수산업금융지원 및 신용보증금융지원 프로그램수익의 증가 등으로 프로그램수익이 6,086억 6,1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총 8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금융지원프로그램(1조 5,277억 2,200만원), 주택금융지원 프로그램(6,176억 9,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125억 9,000만원과 경비 1,014억 1,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3,631억 700만원, 기타비용 818억 6,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437,294	3,080,427	△643,133	△20.9
가. 프로그램 총원가	4,864,639	4,899,111	△34,472	△0.7
나. 프로그램 수익	2,427,345	1,818,684	608,661	33.5
Ⅱ. 관리운영비	214,003	212,133	1,870	0.9
Ⅲ. 비배분비용	444,967	525,701	△80,734	△15.4
Ⅳ. 비배분수익	1,546,114	1,575,147	△29,033	△1.8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550,150	2,243,114	△692,964	△30.9
Ⅵ. 비교환수익 등	5,575,287	5,563,351	11,936	0.2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4,025,137	△3,320,238	△704,899	△21.2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6조 2,667억 4,1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7조 5,168억 8,5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1조 2,501억 4,400만원(179.5%)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대비 7,048억 9,900만원 감소,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전년대비 3조 9,096억 7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5조 8,300억 9,9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2조 6,664억 3,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3조 6,708억 7,1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67억 3,300만원, 출연금의 증가 3,837억 3,8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6,266,741	△497,871	6,764,612	1358.7
Ⅱ. 재정운영결과	△4,025,137	△3,320,238	△704,899	△21.2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163,666	3,292,640	△128,974	△3.9
Ⅳ. 조정항목	4,061,342	151,735	3,909,607	2,576.6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7,516,885	6,266,741	11,250,144	179.5

자료: 금융위원회

마. 재정 구조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2조 5,000억원 전출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241억원 출연되었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3조 2,000억원 전출하였다.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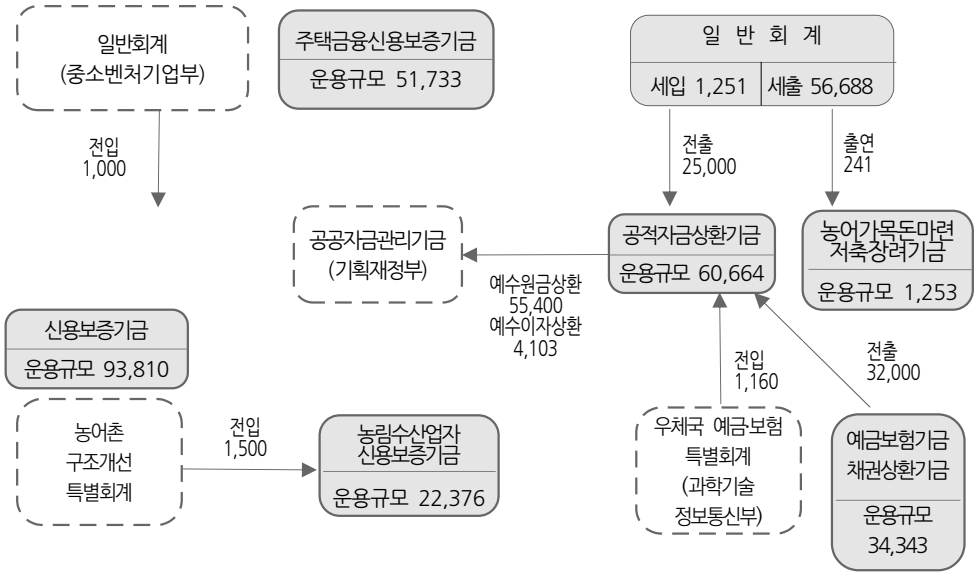

주: 총계 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금융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②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등이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는 최근 2년간 실집행저조 등을 고려하여 기여금 등 280억원이 감액(3,750억원→3,470억원)되었고,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는 238억원이 감액(2,000억원→1,762억원)되었다[1].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직업 전환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2].

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2)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금융위원회는 '시장안전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고 ① **시장안전**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②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③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의 3대 핵심목표를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권 매입 목표가 과도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매입 목표가 오히려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향후 사업 설계 시 목표 산정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오히려 목표치를 상향하는 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새도약기금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16.4조원 규모의 채권 일괄 매입을 추진한 것임에도 공공기관 보유 채권 외에는 적기 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과 채무자 간 지원 형평성 문제가 유발된 측면이 있다.

셋째, 새도약기금의 매입 채권 소각 여부 결정을 위한 상환능력 심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는 등 면밀한 사업설계와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채권 매입이 추진됨에 따라 소각 실적이 부진한 문제가 있다.

넷째, 반도체생태계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의 본격적인 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동 사업 펀드의 투자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펀드 운용 및 투자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말 종료가 예정된 대환보증의 2025년 신규 공급분을 전제하고 대위변제액을 추산하여 과다한 불용을 유발하였으므로, 향후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실발생 규모에 대한 예측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사업 분석

1 청년도약계좌 연내 지급 불가능한 기여금 전액 출연에 따른 비효율 발생 등

1-1. 청년도약계좌 연내 집행가능성 없는 출연금 전액 교부 문제 등

가. 현 황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재정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현액 3,467억 6,500만원 중 99.9%인 3,467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서민금융 진흥원출연 (청년도약계좌)	347,015	347,015	40	△290	346,765	346,758	-	7	124,185	124,185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구간별로 차등적인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1831-882

[청년도약계좌 사업 개요]

<table>
<tr><th>구분</th><th>내 용</th></tr>
<tr><td>사업목적</td><td>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중 개인소득이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자</td></tr>
<tr><td>상품내용</td><td>월 최대납입 70만원,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td></tr>
<tr><td>금리</td><td>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td></tr>
<tr><td>지원내용</td><td>① 납입금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table>
<tr><th colspan="2">개인소득</th><th colspan="3">정부기여금 지급구간 I</th><th colspan="3">정부기여금 지급구간 II</th></tr>
<tr><th>총급여 기준</th><th>종합소득 기준</th><th>기준금액</th><th>지급 비율</th><th>월 최대 기여금</th><th>기준금액</th><th>지급 비율</th><th>월 최대 기여금</th></tr>
<tr><td>2,400만원</td><td>1,600만원</td><td>월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작은 금액</td><td>6.0%</td><td>2.4만원</td><td>40만원 초과 월 납입원금</td><td rowspan="3">3.0%</td><td>9,000원</td></tr>
<tr><td>3,600만원</td><td>2,600만원</td><td>월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작은 금액</td><td>4.6%</td><td>2.3만원</td><td>50만원 초과 월 납입원금</td><td>6,000원</td></tr>
<tr><td>4,800만원</td><td>3,600만원</td><td>월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작은 금액</td><td>3.7%</td><td>2.2만원</td><td>60만원 초과 월 납입원금</td><td>3,000원</td></tr>
<tr><td>6,000만원</td><td>4,800만원</td><td>월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작은 금액</td><td>3.0%</td><td>2.1만원</td><td colspan="3">미지급</td></tr>
<tr><td>7,500만원</td><td>6,300만원</td><td colspan="6">미지급</td></tr>
</table>
②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및 비과세혜택</td></tr>
<tr><td>금리</td><td>취급 은행별 상이, 최대 6.0%</td></tr>
<tr><td>이자지급방식</td><td>만기일시지급</td></tr>
<tr><td>취급은행</td><td>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iM, 광주, 전북, 경남은행</td></tr>
</table>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되어 2025년말 기준 11개 은행에서 취급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2026년부터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 지급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청년도약계좌 가입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전액 교부함에 따른 비효율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향후 정부기여금 매칭 상품 운용에 있어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가입 목표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내 집행가능성 없는 출연금을 연말에 전액 교부하여 출연기관에 유보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3년 6월 신규 출시되어 2025년 12월까지 신규 가입 기간을 운용한 청년도약계좌는 매년 과다 산정된 가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2023년의 경우 신규 출시한 상품 가입인원을 306만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가입인원은 51만명에 불과하였고, 2024년 누적 가입 유지자(기여급 지급 인원)를 250만명으로 설정하였으나 134만명이 가입을 유지하는데 그쳤으며, 2025년 누적 가입 유지자를 230만명으로 축소하였음에도 실제 가입 유지인원은 205만명으로 다소 부진한 실적이 반복되었다.

[연도별 청년도약계좌 가입 목표 및 실적]

연도	목표(가입 유지 인원 = 기여금 지급 인원)	실적	
		신규가입	가입유지
2023	306만명	51만명	47만명
2024	250만명	106만명	134만명
2025	230만명	98만명	205만명

자료: 금융위원회

이처럼 가입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매년 편성된 출연금을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 교부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보하는 방식으로 이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해 온 문제가 있다. 기여금 실집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교부액 3,440억원 중 3,008억원을 이월하였고, 2024년 신규 교부액 3,030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6,038억원 중 3,19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025년 신규 교부액 3,368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6,563억원 중 2,544억원을 이월하였다.

[연도별 청년도약계좌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교부액	서민금융진흥원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유보액
2023	344,037	344,037	-	344,037	43,222	300,815
2024	359,043	302,993	300,815	603,808	284,329	319,479
2025	336,804	336,804	319,479	656,283	401,911	254,372

자료: 금융위원회

특히 가입 실적 추세를 바탕으로 연내 기여금 지급 소요가 확정된 연말에 집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출연금 잔액을 전부 교부하는 방식이 반복되었는데, 이는 한정된 정부 재정이 출연기관에 유보된다는 점에서 예산의 낭비를 유발하는 것이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정 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도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잔액 및 교부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24	교부일시	2.6.	2.28.	3.29.	7.1.	8.8.	10.18	11.27.
	교부액	19,336	58,000	138,000	52,000	33,000	1,650	1,007
	잔액	300,816	324,643	400,176	371,599	387,304	353,077	336,530
2025	교부일시	1.17.	2.27.	4.18.	5.16.	7.10.	11.1.	12.9.
	교부액	64,243	12,600	82,600	4,106	11,000	46,690	115,565
	잔액	359,302	345,913	368,396	340,853	281,954	177,710	254,372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자에게 기여금이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구조상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나, 월별 가입 실적 추세를 바탕으로 연말 기여금 지급 소요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 없는 잔액은 불용처리하고 차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볼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가입 목표 산정 및 소요 재원 규모 산출의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향후 청년미래적금을 비롯한 정부기여금 매칭 상품을 운용함에 있어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가입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내 집행가능성 없는 출연금을 연말에 전액 교부하여 출연기관에 유보함에 따른 예산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일한 목적의 신규 적금 상품 출시를 위해 당초 2032년까지 신규 가입 기간을 운용할 계획이었던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 기간을 조기 종료(2025년 12월)함으로써 정책금융의 일관성이 저해된 측면이 있으며, 청년미래적금 출시(2026년 6월) 전까지의 신규 가입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지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신규 출시되면서 신규 가입 기간을 2023년 6월부터 2032년 6월까지 10년간 운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적금 납입금에 비례한 기여금을 정부가 매칭한다는 내용의 유사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2026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되면서,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신규 가입을 조기 종료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 지급 및 관리 업무만 수행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미래적금 상품 개요 비교]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	(당초) 2023.6. ~ 2032.6. (변경) 2023.6. ~ 2025.12.	2026.6.~
상품내용	월 최대납입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월 최대납입 50만원,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지원내용	매월 정부기여금 지급 (소득구간별 최대 6%) 납입금 및 기여금 비과세	매월 정부기여금 지급 (6%, 12%) 납입금 및 기여금 비과세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의 한정된 재원 하에서 지원 내용을 강화한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상품 조기 종료가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 상품을 출시하면서 공시한 상품 운용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은 정책금융의 일관성과 청년층의 신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가입 대상 청년들에게 혼란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

한편,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출시되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을 2025년 12월에 종료하였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 청년들의 적금 상품 신규 가입에 공백이 유발된 문제도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026년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정책금융 상품의 조기 종료 및 신규 출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금융 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1-2. 청년미래적금 전환 가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계 보완 필요

가. 현 황

청년미래적금[2]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미래적금 기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재정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2025회계연도 청년미래적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청년미래적금	-	-	-	-	-	-	-	-	744,625	744,625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 기준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인 경우 충족되며, 가구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충족된다.

상품 내용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금이며, 정부 재정으로 개인 납입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기여금 지원 비율은 납입금액의 6% 또는 12%로 설정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재직 청년 및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월 납입액의 12%가 적용된다.

2) 코드: 일반회계 1831-891

[청년미래적금 상품 개요]

구분	내 용
사업 목적	청년층 종잣돈 마련 및 자산형성 지원
지원 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 충족한 자 ①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②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자
상품 내용	월 최대 납입 50만원,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
지원 내용	납입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 기여금(납입금의 6, 12%* 수준) 매칭 형태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 및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매월 납입금의 12%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금리	미정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나. 분석의견

청년도약계좌의 2026년 예산은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충분한 전환 가입 수요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실적 달성을 위한 전환 가입 활성화 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청년미래적금 상품 가입 기간과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허용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의 직접적인 분석 대상 사업은 아닐 수 있으나, 결산 심사 대상인 청년도약계좌의 2026년 예산 규모가 청년미래적금 전환 가입 인원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므로 두 사업 간 연계 가입에 따른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2026년 예산은 2025년말까지의 가입 인원을 270만명으로 예상한 가운데,[3] 2026년에는 평균 약 135만명이 가입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여 기여금을 편성하였다. 2025년말 가입 인원의 절반 정도가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 것으로 판단한 것은 해당 인원이 신규로 출시한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청년미래적금 사업에는 총 320만명의 평균 가입 유

3) 2025년 예산 편성 시에는 가입유지 인원을 230만명으로 산정하였으나, 2025년 상반기 가입자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였음

지인원에 대한 5개월치(8월~12월) 기여금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인원 약 135만명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미래적금 기여금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규모: 1,194억원 = 소요 기여금 3,727억원 - 2025년 잔액 2,533억원 소요기여금은 **2025년말 예상 가입자 270만명 중 2026년 평균 135만명 가입 유지를 가정**하여 일반가입자 2.55만원,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자 2.35만원 적용
청년미래적금	기여금 규모: 7,367억원 = 일반형 2,412억원 + 우대형 4,806억원 일반형: 160만명 × 월기여금 3만원 × 5개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중위가구소득 200% 이하 청년 250만명 중 140만명 + 연매출 1~3억원 소상공인 20만명) 우대형: 160만명 × 월기여금 6만원 × 5개월 (중소기업 재직자 중 소득 3,600만원 이하 & 중위가구소득 150% 이하 대상자 297만명 중 147만명 +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17만명 중 9만명 +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 10만명 - 중복 6만명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이러한 전환 가입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를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추가하였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 청년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및 계좌개설 후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납입한 금액에 매칭된 기여금 전액을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 입장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더라도 기여금이 환수되는 불이익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전환 가입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상품 특성 차이에 따른 실제 전환 가입 수요는 정부의 예상과 다른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

래적금 상품 특성의 차이는 크게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과 청년 본인의 자유납입액 한도로 구분된다. 먼저, 기여금 매칭 비율을 살펴보면 청년도약계좌가 소득구간별 매칭 비율을 최대 6% 이내에서 구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청년미래적금은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6%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는 우대형 기여금 비율인 12%가 적용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매년 소득을 재심사하여 기여금 매칭 비율을 조정하였으나, 청년미래적금에서는 최초 소득심사 시 적용된 기여금 매칭 비율을 만기 시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기여금 매칭 비율 측면에서는 신규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기존 상품 유지 및 신규 상품 전환 가입에 따른 혜택 비교]

구분	청년도약계좌 유지	청년미래적금 전환 가입
기여금 비율	소득구간에 따라 6% 이내	**6% 일괄 적용** **중소기업 재직 등 우대형 12%**
월 납입 한도	**최대 70만원**	최대 50만원
기여금 매칭 한도	**소득구간에 따라 40~70만원**	최대 50만원
만기	5년	3년
이자 혜택	**기 납입한 적금 + 기여금에 대한 이자 적용**	기 납입한 적금 청산 후 신규 납입금부터 이자 적용
비고	매년 소득 재심사 후 기여금 비율 재반영	**최초 소득심사 후 기여금 비율 유지**

주: 볼드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 혜택에 적용한 것임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청년 본인의 납입 한도는 청년도약계좌가 70만원인 것과 달리 청년미래적금은 5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가입 청년 입장에서는 기여금 매칭과 적금 이자의 토대가 되는 납입 규모가 축소됨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26년 5월 기준 납입액 구간별 계좌 건수를 살펴보면, 납입 청년의 70% 이상이 최대 한도인 70만원을 납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청년들 입장에서는 최대 3년 정도의 가입기간 동안 매달 70만원씩 꾸준히 납입해 온 적금을 청산하고 납입 한도가 50만원으로 축소된 신규 상품에 가입할 유인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소득구간별 납입 현황(26.5월 기준)]

(단위: 만건)

소득구간 (총급여)	정부기여금[1]		납입구간					
	매칭비율	매칭 인정 한도	40만원 미만	40만원대	50만원대	60만원대	70만원	합계 (비중)
2,400만원 이하	6.0%	40만원	12.8	5.1	3.2	0.5	52.5	74.1 (44.3%)
3,600만원 이하	4.6%	50만원	5.6	3.3	2.7	0.4	30.8	42.7 (25.6%)
4,800만원 이하	3.7%	60만원	3.4	1.5	1.9	0.6	23.1	30.4 (18.2%)
6,000만원 이하	3.0%	70만원	1.5	0.5	0.6	0.1	10.9	13.6 (8.2%)
6,000만원 초과	0.0%	-	0.9	0.3	0.3	0.04	4.7	6.2 (3.7%)
합계 (비중)			24.3 (14.5%)	10.6 (6.4%)	8.6 (5.2%)	1.6 (1.0%)	**122.0 (73.0%)**	167.1 (100%)

주: 1) 2025년 1월 부터는 월 납입금액 중 기존 매칭인정한도 초과 금액에 매칭비율 3%를 추가로 적용함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특히,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청년도약계좌 해지수령금은 청년미래적금으로 일시납입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 입장에서는 기납입금과 그에 따른 기여금으로 구성된 적금 규모에 적용되는 금리를 포기하고 월 50만원씩 새로 납입을 시작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4]

또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허용 기간을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1회 운용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특별중도해지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전환 가입 수요가 예측보다 저조할 우려도 있다.

한편, 전환 가입 기간과 별개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 신청 기간도 매년 6월과 12월 단 두 달에 한해 각각 2주씩만 운영할 예정으로 발표하였다.[5] 이는 가입자격 심사 및 기여금 지급 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4) 참고로, 청년희망적금이 저축장려금을 만기에 일시 지급한 것과 달리 청년도약계좌가 기여금을 매달 매칭해주는 것으로 개선한 것에는 월별로 매칭되어 쌓여가는 기여금에 적용되는 이자 혜택을 추가해 주기 위한 취지도 있었다

수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행정상의 효율 증진 외에는 큰 실익이 없는 조치로 보이며, 오히려 가입 대상 청년들의 가입 기회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청년미래적금 운용 계획]

구분	내용
개요	2026년 6월 출시 후 매년 반기별 1회 가입 신청기간 운영
가입 신청	매년 6월·12월 각 2주간 운영
가입 요건 확인	개인·가구소득 등 가입요건 심사 4~5주 소요
계좌 개설	가입 적격자에 대한 계좌개설 업무 2주 소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허용	2026년 6월 신규 출시 후 최초 가입기간 1회 허용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적금 상품 구조의 차이로 인해 실제 전환 가입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예상만큼 전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실적 저조 현상과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부족 현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청년미래적금 전환 가입 시 납입 한도 축소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등 사업설계를 보완하는 한편, 상품 가입 기간 및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허용 기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금융위원회는 가입 수요가 과다할 경우 6월 첫 모집 시에 재원 여력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모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저신용자 대상 보증사고 증가에 따른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우려

가. 현 황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1] 사업은 저신용자 대상 대출 보증 상품인 햇살론15를 공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현액 9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2]은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특례 보증을 공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손실 보전을 위한 정부 재정을 출연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현액 92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햇살론15)	90,000	90,000	-	-	90,000	90,000	-	-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56,000	92,500	-	-	92,500	92,500	-	-	-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햇살론15 상품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거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1,400만원의 대출을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1831-884

2) 코드: 일반회계 1831-881

보증한다. 대출 금리는 9.9%의 보증료율을 포함한 15.9%이며, 채무자는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햇살론15 상품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상품 지원
지원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대출 한도	최대 1,400만원 (2025년말까지 최대한도 2,000만원으로 한시 상향)
대출 금리	연 15.9% 단일금리 (보증료 연 9.9% 이내)
보증 비율	100% 전액 보증
상환 방식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서 연체경험 등으로 인해 햇살론15 등 다른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최저신용자가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방식으로 최대 1,000만원을 연 15.9%의 금리(보증료율 포함)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이다.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기존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 조달 지원
지원 대상	신용점수 하위 10%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근 3개월 내 연체경험 등으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대출 한도	최대 1,000만원
대출 금리	연 15.9% 단일금리 (보증료 연 9.9% 이내)
보증 비율	100% 전액 보증
상환 방식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2025년말까지 각각 운용되어 왔으나, 2026년부터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용하는 유사 보증 상품인 햇살론15와 통합하여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개편되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정책 보증 상품 개편방향]

현행	햇살론뱅크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햇살론 카드
개편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햇살론카드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특례보증 상품 통합 개요]

구 분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15	**햇살론특례보증(신규)**
사업 목적	기존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자금 조달 지원		
지원 대상	신용점수 하위 10%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근 3개월 내 연체경험 등으로 햇살론15 보증거절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대출 한도	최대 1,000만원 (최초 일반대출 이용 시 최대 500만원, 누적 성실상환기간 180일 이상의 경우 추가 대출 1회 가능)	최대 1,400만원 (2025년말까지 최대한도 2,000만원으로 한시 상향)	**최대 1,000만원**
대출 금리	연 15.9% 이내 (보증료 연 9.9% 이내)		연 12.5% 이내 (사회적배려자 연 9.9%)
보증 비율	100% 전액 보증		
상환 방식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 선택)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나. 분석의견

2025년말 신규 보증공급이 종료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당초 예상 대비 가파른 대위변제 상승 추세로 인해 보증공급이 축소되거나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수반된 바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두 상품을 통합한 신규 보증상품인 햇살론 특례보증이 정책보증 상품으로서 지속가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증사고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운용을 위한 정부 출연금은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의 예상 사업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교부된다. 구체적으로는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율에서 구상채권 회수율을 차감한 순대위변제율에서 보증료수입과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인 것이다.

예상 사업손실률은 햇살론15 13.7%,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33.0%로 설정되어 있는데, 햇살론15의 경우 대위변제율 33.3%, 구상채권 회수율 8.7%, 순대위변제율 24.6%을 전제하고 있으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대위변제율 53.5%, 구상채권 회수율 11.1%, 순대위변제율 42.4%를 전제하고 있다.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사업손실률 산출 근거]

햇살론15 사업손실률: 13.7% = 순대위변제율 24.6% (대위변제율 33.3% - 구상채권 회수율 8.7%) - 보증료수입률(13.9%) + 운영비용(3.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사업손실률 33.0% = 순대위변제율 42.4% (대위변제율 53.5% - 구상채권 회수율 11.1%) - 보증료수입률(12.4%) + 운영비용(3.0%)

주: 순대위변제율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각 기간말 누적 보증공급액

자료: 금융위원회

그런데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을 살펴보면, 햇살론15의 경우 2025년말 기준 순대위변제율이 26.8%로 동 상품의 최종적인 예상 순대위변제율 24.6%를 이미 상회하고 있으며, 2026년 4월말 기준 28.4%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구상채권 회수율이 2025년말 기준 11.7%로 동 상품의 최종적인 예상 구상채권 회수율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예상보다 구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보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순대위변제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순대위변제율은 2025년말 기준 28.8%, 2026년 4월 기준 32.5%로 최종 예상치인 42.4%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나, 2022년 신규로 출시하여 보증공급 기간이 5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다른 보증상품에 비해 빠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상품 순대위변제율]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4.
햇살론15	14.0	15.5	21.3	25.5	26.8	28.4
최저신용자특례보증	-	0.01	14.5	26.8	28.8	32.5

주: 순대위변제율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각 기간말 누적 보증공급액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이처럼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게 되면 동일한 보증공급 규모에도 불구하고 사업손실 보전에 필요한 재정 투입 규모가 확대되거나, 동일한 정부 재정 출연 규모에도 불구하고 보증공급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동 사업 출연금은 최종적인 손실 보전을 위한 성격이면서 동시에 출연 즉시 곧바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 재원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동일한 규모의 재정(560억원)을 출연하였으나, 예상보다 빠른 대위변제 상승 추세로 인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보증공급 규모가 감소하였고, 2025년에는 대위변제 추세를 고려하여 예상 사업손실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보증공급 규모 자체를 축소하였다. 이후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2025년 목표 보증공급 규모를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추가 출연금이 편성·교부되기도 하였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출연 규모 및 운용 실적 등]

(단위: 억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본예산	1회 추경
재정출연 규모	480	560[1)]	560	560	925
목표 보증공급	600	2,800	2,800	1,700	2,800
실제 보증공급	1,002	2,924	1,935		2,962
예상 사업손실률			20.0		33.0

주: 1) 전년도 이월액 280억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예상 대위변제율이 53.5%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동 상품의 보증을 통해 제공된 대출액의 절반 이상이 보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정책보증 상품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로 이어진다. 지원 대상 최저신용자에게 부여되는 상환의무, 구상의무에도 불구하고 재정 손실까지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보증 상품이 직접적인 재정지원 정책 수단에 비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한편, 정부는 2026년부터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하여 신규로 운용을 시작하였는데,[3)] 햇살론 특례보증의 예상 대위변제율은 37.6%, 구상채권 회수율 9.2%를 차감한 순대위변제율은 28.3%로 설정되어 있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보증대상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대로 햇살론15의 순대위변제율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순대위변제율이 각각 28.4%, 32.5%라는 점에서 신규 보증 상품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에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3) 기존에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공급된 보증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다.

[2026년 햇살론특례보증 사업손실률 산출 근거]

햇살론 특례보증(일반) 사업손실률 17.3% = 순대위변제율 28.3% (대위변제율 37.6% - 구상채권 회수율 9.2%) - 보증료수입률(13.6%) + 운영비용(2.5%)

주: 순대위변제율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각 기간말 누적 보증공급액

자료: 금융위원회

종합적으로, 2025년말 통합 운용을 위해 신규 보증공급이 종료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당초 예상 대비 가파른 대위변제 상승 추세로 인해 보증공급이 축소되거나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등 정책보증 상품으로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는 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포괄하는 신규 보증상품인 햇살론 특례보증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는 취약계층 대상 대출 보증이라는 성격상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서는 보증사고 위험 증가를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대위변제 축소를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딜레마에 따른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특례보증이 정책보증 상품으로서 지속가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증사고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신용자 대상 지원 수단으로서 보증 사업을 확대 운용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재정건전성, 상환부담과 구상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효과 등의 측면에서 타 정책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사업의 취지가 기존의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장기·반복 연체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기초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 실적 저조 상황에서 매입 목표 상향 문제 등

가. 현 황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1]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자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부실채권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현액 1조 2,0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500,000	1,200,000	-	-	1,200,000	1,200,000	-	-	-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된 것으로,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추심 중단, 원금 조정, 장기·분할 상환, 금리 인하, 거치기간 부여 등을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SPC[2] 형태의 새출발기금을 신설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채무조정 방식은 “채권매입형”과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으로 구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2432-303

2)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분된다. 매입형은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을 하는 방식이고,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동의 하에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한편,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코로나 이후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

◦ (지원내용) ① 원금조정(순부채 60~80%), ② 금리감면, ③상환기간 연장(최대 10년, 부동산담보 최대 20년), ④ 거치기간 부여(최대 1년, 부동산담보·취약차주 최대 3년), ⑤ 추심중단 등

◦ (지원대상) 2020.4월~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우려) 차주

◦ (지원방식) 채무자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매입형 및 중개형으로 구분

-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권은 매입형(새출발기금)으로 지원
- 부실 담보 및 부실우려차주는 중개형(신복위)으로 지원

구분	매입형 채무조정(한국자산관리공사)	중개형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채권	부실차주 신용·보증*채무 *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무	부실우려차주 신용·담보·보증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
지원 내용	원금조정: 순부채의 60~80% 감면 (취약계층 90%) 금리조정: 이자·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조정 : 없음 금리조정 : 연체기간 및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연체이자 감면) * (연체 30일 이하) 9% 초과 고금리는 9%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 적용
만기 연장	최대 1년 거치(부동산담보·취약차주는 3년), 최대 10년 분할상환(부동산담보·취약차주는 20년)	

(매입형)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청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지원

(중개형) 신복위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 지원(비동의 시 기금 매입하여 지원)

◦ (사업기간 / 수행주체) 2022.10.4~2026.12월까지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 금융위원회

정부 재정은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출자된다.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손실액만큼을 정부 분담분으로 배정하고, 새출발기금이 채권 매입 재원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별로 나누어 출자하는 것이다.

나. 분석의견

첫째,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권 매입 목표가 과도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매입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으므로, 향후 사업 설계 시 목표 산정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오히려 목표치를 상향하는 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을 신규로 출범하면서 목표 매입 규모를 총 30조원 규모로 설정하였다가,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매입 목표를 33.4조원으로 상향하였다. 수정된 매입 목표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 각각 11조원 이상의 채권 매입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2025년 채권 매입 실적은 6.3조원으로 목표 대비 부진하였으며, 2025년말까지의 누적 매입 실적은 13.4조원으로 수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6년에만 약 20조원 규모의 추가 매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계획 및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3.	합계
채권매입 계획	당초 (2022추경)	60,000	90,000	90,000	60,000	-	300,000
	수정 (2025본예산)	2,952	26,145	75,603	115,850	113,450	334,000
채권매입 실적		2,952	26,145	42,303	62,540	14,201	148,141

자료: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은 채무자 신청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채권을 매입하는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매입 규모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채무조정을 위한 매입이 진행되지 않은 결과에는 경기여건 변화, 채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다른 조치가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입 실적이 저조하다는 통계만으로 새출발기금 운용상의 문제를 지적할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매년 정부 예·결산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 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었고,[3] 특히 2025년 본예산 편성연도인 2024년에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채권매입 저조를 고려하여 전체 매입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2025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목표 매입 규모를 오히려 상향 조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새출발기금 매입실적 저조 관련 국회 시정요구]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금융위원회는 **저조한 채권매입 추이에 근거하여 전체 매입계획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관련 협약기관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한편,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신청은 2026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매입 실적 추세를 고려할 때 목표 매입 규모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25년까지 총 13.4조원이 매입되어 전체 목표치인 33.4조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6년 약 20조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나, 2026년 3월말 기준 매입 규모는 1.4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원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예산 낭비를 비롯한 재정운용 상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4] 금융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업 설계 시 목표 산정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오히려 목표치를 상향하는 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출발기금에 대한 연간 정부 재정 출자 규모는 총 채권매입 목표액 내에서 채권매입 추이, 손실률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는데, 매입 목표액 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결과적으로 수정된 정부 출자 비중(33.0%)을 상회하는 만큼의 출자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다.[5]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동 사업의 채

3) 국회예산정책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결산 분석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에서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실적 저조와 소요 예산 재검토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었다.

4)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채권 매입에 따라 예상되는 최종적인 사업손실분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구조이며, 재정 출자분 전액을 사전에 편성·교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적 저조가 곧바로 예산 낭비를 유발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2026년에는 정부 출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채권매입 재원 전액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기 때문에 매입이 진행됨에 따라 정부출자비중은 감소할 예정이다.

권매입 실적과 채권매입에 투입된 재원 구성 등을 점검하여 추가적인 출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새출발기금 연도별 재원조달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5.	합계
정부출자(A)	11,000[1)]	2,800	3,300	12,000	-	**29,100**
자체조달(B)	-	3,600	15,600	15,500	9,400	**44,100**
정부출자비중(A/A+B)	100.0	43.8	17.5	43.6	0.0	**39.8**

주: 1) 현물출자 5,000억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둘째, 2025년 본예산과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각각 진행된 사업손실률 상향 조정에 따라 매입 재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향후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사업손실 발생 및 매입가율 상승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채권 매입 재원 중 최종적인 사업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하기 위한 규모의 출자금이 편성되는데, 정부는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 재정 출자 규모를 결정하는 예상 사업손실률을 20.0%에서 29.5%로 상향 조정하였고, 2025년 제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33.0%로 한 차례 더 상향 조정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원금감면율 확대 등에 따른 영향과 실제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가 대비 손실률 등을 고려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재원 조성 계획]

구분	당초계획	2025년 본예산(2024.9.)	추경안(2025.6.)
채무조정 규모	30조원	40조원 + @	40조원 + @
채권매입 규모	30조원 목표	33.4조원 목표 (채권매입 비율 83.5% 적용)	33.4조원 목표 (채권매입 비율 83.5% 적용)
채권매입 소요 재원	18조원 = 30조원 × 60% (예상 매입가율 60% 적용)	13.6조원 = 33.4조원 × 40.7% (예상 매입가율 40.7% 적용)	13.6조원 = 33.4조원 × 40.7% (예상 매입가율 40.7% 적용)
정부 출자	**3.6조원 = 18조원 × 20% (예상 부도율 20% 적용)**	**4.01조원 = 13.6조원 × 29.5% (예상 부도율 29.5% 적용)**	**4.48조원 = 13.6조원 × 33.0% (예상 부도율 33.0% 적용)**
캠코채 발행	14.4조원 = 18조원 - 정부출자금	9.59조원 = 13.6조원 - 정부출자금	9.12조원 = 13.6조원 - 정부출자금

자료: 금융위원회

이 과정에서 매입가율 현실화에 따른 전체 채권매입 소요 재원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출자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당초 계획에 따르면 30조원 규모의 채권 매입을 위해 18조원(매입가율 60%)이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20% 손실 보전을 위한 3.6조원의 재정 출자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매입가율 현실화(40.7%로 하향 조정)[6]를 통해 채권 매입 소요 재원이 13.6조원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자 규모는 매입 재원의 33.0%에 해당하는 4.48조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한편, 실제 매입가율은 2025년말 기준 44.4%로 2025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하향조정한 40.7%를 상회하고 있으며, 점차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규모의 채권 매입을 위한 소요 재원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추가적인 채권 매입이 진행될수록 상대적으로 우량 채권이 매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적인 매입가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6) 이는 실제 매입가율 추이와 국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연도별 새출발기금 채권매입가율(누적)]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2025
담보	85.3	85.7	84.2	84.1
무담보	22.8	36.6	38.6	38.7
합계	29.2	41.8	43.9	44.4

자료: 금융위원회

원금감면율 상향, 지원대상 확대 등 채무조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률 상향 조정이 수반되는 가운데 향후 매입가율 또한 상승한다면 중장기적인 정부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새출발기금 주요 제도개선 내역]

구분	기존 (22.10월)	1차 ('24. 2월)	2차 ('24. 9월)	3차 ('25. 3월)	4차 ('25. 9월)
지원대상	코로나19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20. 4월~ '23. 11월 사업영위 소상공인 자영업자	'20. 4월~ '24. 6월 사업영위 (+7개월)	'20. 4월~ '24. 11월 사업영위 (+5개월)	'20. 4월~ '25. 6월 사업영위 (+7개월)
신청기간	'22. 10월 ~ '25. 10월		'22. 10월 ~ '26. 12월(+15개월)		
취업·재창업 연계	원금감면율 60~80%		원금감면율 최대 90%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취·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저소득·사회 취약계층 채무조정 강화	원금감면율(순부채) 60~80%				원금감면율 (순부채) 90%
	거치·상환기간 최장 1년·10년				거치·상환기간 최장 3년·20년

자료: 금융위원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도 발생 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 매입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손실발생 여부 및 매입가율 상승 추세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4 새도약기금 사전 준비 부족에 따른 채권 매입 및 소각 실적 저조 문제

가. 현 황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1] 사업은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정부 재정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예산현액 4,0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400,000	-	-	400,000	400,000	-	-	-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 재정 출자금으로 2025년 8월 12일 장기연체채권정리기금(새도약기금)을 설립하였으며, 2025년 10월부터 채권 매입 업무를 시작하였다.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이며, 새도약기금과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 후 새도약기금이 매입 대상 채권을 협약기관으로부터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입이 이루어진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절차가 중단되며, 새도약기금은 매입한 채권의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채권을 소각하고,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2432-305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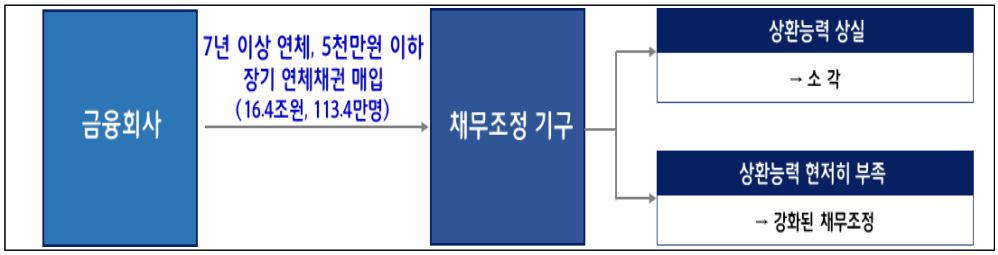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입 대상 채권 규모가 16.4조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매입가율을 5%로 설정하여 약 8,400억원의 매입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정부 재정 출자금을 4,000억원 편성·교부한 것이다.

정부 재정 출자 외 나머지 4,400억원 규모의 재원은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충당하였다. 즉,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았다는 점에서 매입 대상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이중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이다.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 재원 구성]

매입 채권 규모	16.4조원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
예상 매입가율	5% (과거 채무조정 프로그램 매입가율 사례를 바탕으로 추산)
소요 매입가액	8,400억원 = 16.4조원 × 5%
재원 조달 구성	**정부 출자금: 4,000억원** 금융회사 출연금: 4,40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나. 분석의견

첫째, 새도약기금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16.4조원 규모의 채권 일괄 매입을 추진한 것임에도 공공기관 보유 채권 외에는 적기 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과 채무자 간 지원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였으므로, 새도약기금 활동 기한인 2026년 10월까지 목표한 채권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부업권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매입 협약 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동 세부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총 16.4조원 규모의 채권 일괄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2025년말 기준 실제 매입 채권 규모는 7조 7,220억원에 불과하여 당초 목표한 만큼의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부터 매입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새도약기금의 활동기간을 고려하면 실적 문제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나,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방식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월별로 순차적인 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도약기금과 채권 보유기관 사이의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기관의 보유 채권이 일괄적으로 매입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간에 따른 매입 추세를 바탕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실제로 정부의 일괄 매입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매입에 필요한 4,000억원의 정부 출자금이 추경 예산에 전부 편성되어 일괄 교부된 것이다.[2)]

한편 2025년말까지 매입한 채권의 보유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보유 채권이 5조 5,485억원으로 전체 매입 채권의 71.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대부업,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의 기관이 보유한 채권의 매입 실적이 특히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새도약기금이 채권 보유기관과의 매입 협약 체결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협약 체결이 상대적으로 쉬운 공공기관 보유 채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금융위원회의 설명대로 매입 기간을 고려한다면,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는 새도약기금의 2025년 활동 기간(10월~12월)만큼의 매입 재원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새도약기금 채권매입 계획 및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매입 대상 채권 규모	매입 규모	
		2025.12.	2026.3.
공공기관	**71,585(43.5)**	**55,485(71.9)**	**58,539(71.0)**
대부	48,584(29.5)	3,449(4.5)	4,893(5.9)
카드	13,732(8.4)	7,897(10.2)	7,897(9.4)
은행	8,881(5.4)	5,410(7.0)	5,417(6.6)
기타(AMC 등)	4,791(2.9)	-(-)	4(0.0)
보험	4,639(2.8)	1,665(2.2)	1,665(2.0)
캐피탈	4,611(2.8)	2,592(3.4)	2,592(3.1)
상호금융	4,368(2.7)	-(-)	773(0.9)
저축은행	3,246(2.0)	723(0.9)	723(0.9)
합 계	164,437(100.0)	77,220(100.0)	82,503(100.0)

주: 괄호 안은 전체 매입 규모 대비 비중
자료: 금융위원회

이처럼 전체적인 채권 매입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매입 채권이 공공기관 보유 채권으로 집중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배분의 비효율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적을 위해 연내 추가 재정을 편성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비해 재정 투입의 시급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경우 국고채 추가발행 19.8조원과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등 재원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된 만큼 연내 집행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 배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 규모 전체에 해당하는 16.4조원을 일괄 매입 대상으로 설정하고, 매입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약 8,400억원(매입가율 5% 반영)으로 추산하여 정부 재정 출자금 4,000억원과 금융회사 출연금 4,400억원 투입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또한 편성된 정부 재정 출자금 4,000억원을 연내 전액 교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2025년말까지 실제 매입에 사용된 재원은 2,321억원에 불과하여 투입된 정부 재정의 낭비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3)]

3)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협약 가입과 일괄 매입이라는 조건 하에서 연도별 매입목표액을 제시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새도약기금 매입 채권액 및 매입가액]

(단위: 억원, %)

구분	채권액	매입가액	매입가율
공공기관	55,485	1,366	2.46
은행	5,410	222	4.11
보험	1,665	58	3.51
카드	7,897	359	4.54
캐피탈	2,592	143	5.51
저축은행	723	41	5.71
대부	3,449	132	3.83
합 계	**77,220**	**2,321**	**3.01**

주: 2025년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 더욱 클 가능성이 있는 대부업 등이 보유한 채권 매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권 보유 채권은 4조 8,584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2025년말까지 매입이 이루어진 채권은 3,449억원으로 매입 대상 채권 대비 7.1%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대부업권 보유 채권 중에는 은행 대출 채권이 이전된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같은 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해당 채권이 대부업권으로 이전됨에 따라 채무자 간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 지원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나, 매입 대상 채권의 거래 이력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새도약기금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16.4조원 규모의 채권 일괄 매입을 추진한 것임에도 공공기관 보유 채권 외에는 적극적인 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과 채무자 간 지원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새도약기금이 설정한 채권매입 기한인 2026년 10월까지 목표한 채권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부업권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매입 협약 체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매입 채권 소각 여부 결정을 위한 상환능력 심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는 등 면밀한 사업설계와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채권 매입이 추진됨에 따라 소각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목표한 채권 소각 업무에 재차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조정기구의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 시행 이후 매입 채권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소각되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 채권이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인 점을 고려할 때, 채무자 상환능력 부재에 따른 소각 대상이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25년말 기준 매입된 7조 7,220억원의 채권 중 소각된 채권 규모는 1조 1,305억원에 불과하여 소각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매입된 채권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인정되어 채무조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조회가 진행되지 못해 소각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권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각된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제외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등의 채권뿐인 상황이다.

[새도약기금 매입 채권 소각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매입 실적	소각 실적
2025.12.	77,220	11,305
2026.3.	82,503	17,591

자료: 금융위원회

구체적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데,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4] 모든 신용정보주체의 개별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 동의를 받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새도약기금을 비롯한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자산정보를 차주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개정안은 채권 매입 업무 시작 이후인 2025년 10월 30일 최초로 발의되었으며,[5] 2026년 4월 23일 의결되어 뒤늦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금융위원회는 채권 소각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면서 소각 여부 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매입 업무를 먼저 추진하였다가 매입한 채권 소각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이는 면밀한 사업설계와 사전준비 없이 추경을 통해 동 사업을 다소 성급하게 추진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목표한 채권 소각 업무에 재차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조정기구의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 시행 이후 매입 채권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채권 매입 재원 중 손실분에 대해서만 보전하는 새출발기금과 달리 새도약기금은 매입 재원 전액을 정부 출자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목표한 만큼의 채권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잔여 재원과 채무조정 완료 후 회수재원 등의 처리방안을 기획예산처 및 출연 금융회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도약기금은 매입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일부 있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채무조정의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강화된 최대 80%의 원금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6] 이처럼 소각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새출발기금과 같은 구조의 사업인 것이다.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2025.10.30.)

6)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원금 최대 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

그런데 새출발기금이 채권 매입 재원 중 채무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만큼을 재정으로 보전하기 위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도약기금은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소각 예외 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재원 전액을 보전하기 위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새출발기금 및 새도약기금 사업 구조 및 예산 편성 방식]

구분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사업 구조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진행	채권 매입 후 상환능력 없는 경우 소각, 상환능력 있는 경우 **채무조정 진행**
예산 편성 방식	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 중 **채무조정으로 예상되는 손실분만큼**을 정부 재정 등 정책자금으로 보전	소각 여부에 관계 없이 **매입 대상 채권의 매입 재원** 전체를 정부 재정 등 정책자금으로 보전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구체적으로 새출발기금은 예상 매입가율을 적용한 전체 채권 매입 소요 재원을 13.6조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원금감면 및 연체·부도 발생에 따른 최종적인 사업손실률을 33.0%로 추산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원 4.01조원을 정부가 출자하고, 나머지 소요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즉, 채권 매입 업무를 수행하는 SPC가 채무조정을 진행함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새도약기금의 경우 예상 매입가율을 적용한 전체 채권 매입 소요 재원 8,400억원 중 4,000억원을 정부가 출자하고 나머지 소요 재원은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 채무조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SPC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매입 재원 전체를 정부 재정과 금융회사 출연금 등 외부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새출발기금 및 새도약기금 채권매입 재원 구성]

구분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목표 채권 매입 규모	33.4조원 목표	16.4조원
채권매입 소요 재원	13.6조원 = 33.4조원 × 40.7% (예상 매입가율 40.7% 적용)	8,400억원 = 16.4조원 × 5.0% (예상 매입가율 5.0% 적용)
정부 출자	4.01조원 = 13.6조원 × 33.0% **(예상 사업손실률 33.0% 적용)**	4,000억원
그 외 재원	캠코 공사채 발행 9.12조원 = 13.6조원 - 정부출자금	금융회사 출연금 4,400억원 = 8,400억원 - 정부출자금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장기간의 채무조정이 완료된 후 상환되는 회수재원이나 잔여재원이 SPC인 새도약기금의 재원 투입 없는 수익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조정의 주체가 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 재원 없이 정부 출자를 비롯한 외부 재원만으로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진행하는데, 일부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을 거쳐 상환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이 되는 채권의 경우 사실상 회수되는 재원이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도약기금이 추경을 통해 시급하게 출범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입 대상 채권 중 소각 대상과 채무조정 대상을 사전에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대상 채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률을 추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도약기금이 목표한 만큼의 채권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잔여 출자금이나 채무조정 완료 후 발생하게 되는 상환재원은 정부 재정과 금융회사 출연금 투입에 따른 것이므로, 채무조정 상환액을 비롯한 잔여재원 중 정부 재정 출자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재정 통제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기획예산처·금융회사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잔여재원의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반도체·원전 관련 펀드의 조속한 투자 집행 및 수요 점검 필요

가. 현 황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1] 사업은 반도체 분야 집중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3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30,000	30,000	-	-	30,000	30,000	-	-	-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반도체생태계펀드는 반도체 소부장 및 펩리스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한 것으로, 정부는 2025년부터 3년간 8,000억원의 신규 펀드를 조성하여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3,000억원 규모 반도체 펀드를 포함 총 1.1조원 규모의 반도체 관련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반도체 분야 대상 펀드 조성 사업이 2026년부터 국민성장펀드로 통합되면서 동 세부사업은 2025년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되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2414-321

[반도체생태계펀드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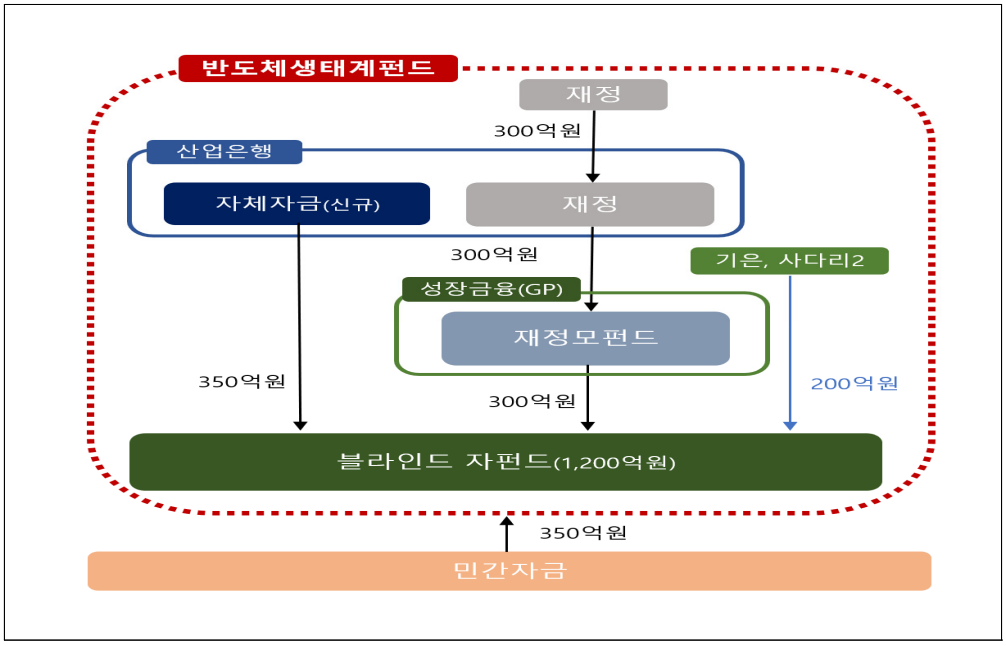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2] 사업은 원전 관련 사업 영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35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산업은행 출자 (원전산업 성장펀드)	35,000	35,000	-	-	35,000	35,000	-	-	-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 코드: 일반회계 2414-323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원전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특히 SMR 관련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한 것으로, 정부는 탈원전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초격차 기술력 개발 등에 기반한 대외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단년도 펀드 조성 재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원전산업성장펀드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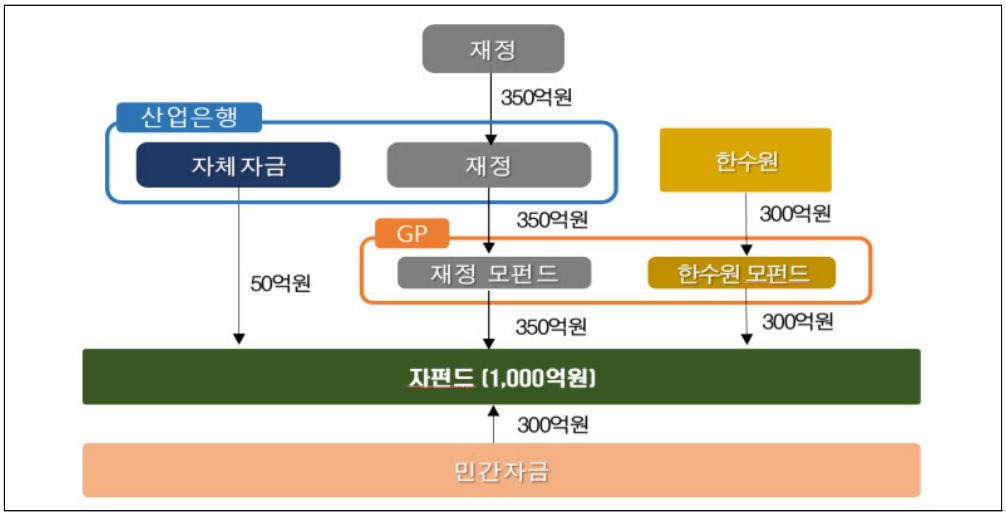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

나. 분석의견

반도체생태계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의 본격적인 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동 사업 펀드의 투자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펀드 운용 및 투자를 독려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근 반도체 시장 경기여건 변동,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분야 기업의 펀드 투자 수요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생태계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는 2026년 5월말 기준 각각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었다. 반도체생태계펀드의 경우 정부출자금 300억원과 산업은행 자체재원 350억원을 포함한 85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민간출자를 490억원 확보하여 1,34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되었다.

[2025년 반도체생태계펀드 조성 실적]

(단위: 억원)

구분	정부 출자			재정 외 정책자금				민간	자펀드 결성
	재정	회수액	소계	산은	사다리2	기은	소계		
목표	300	-	300	350	100	100	550	350	1,200
실적	300	-	300	350	100	100	550	490	1,340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정부출자금 350억원과 산업은행 자체 재원 50억원, 한수원 재원 300억원을 포함한 7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민간출자를 441억원 확보하여 1,141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되었다.

[2025년 원전산업성장펀드 조성 실적]

(단위: 억원)

구분	정부 출자			재정 외 정책자금			민간	자펀드 결성
	재정	회수액	소계	산은	한수원	소계		
목표	350	-	350	50	300	350	300	1,000
실적	350	-	350	50	300	350	441	1,141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

다만, 두 펀드 모두 2026년 5월 기준 투자 실적은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다. 반도체생태계펀드의 경우 자펀드 결성을 통해 조성된 1,340억원의 투자 재원 중 3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약정이 진행되고 있는 추가적인 투자 예정액은 2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아직까지 투자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2026년 상반기 투자 예정액은 152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반도체생태계펀드 및 원전산업성장펀드 투자 실적(2026.5.)]

(단위: 억원)

구분	조성실적	투자실적		
		투자 완료	투자 예정	계
반도체생태계	1,340	30	20	50
원전산업성장	1,141	-	152	152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

펀드 조성 사업의 경우 재정 출자 후 정책자금과 민간출자를 모집하여 자펀드를 결성하고 투자 대상을 발굴하기까지의 정책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이 있으나, 2025년 본예산으로 추진된 동 사업 펀드에서 2026년 상반기까지도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한국산업은행이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위해 도입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패키지 등 개선방안의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속한 자펀드 결성 완료와 적기 투자를 위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반도체 분야와 원전 분야의 펀드 투자 수요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조성된 정책펀드 중 반도체·원전 분야를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기존 펀드의 해당 분야 투자 비중이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집중 투자 대상에 반도체를 포함하고 조성된 소재·부품·장비펀드의 경우 총 1조 4,578억원의 자펀드 결성 재원 중 1조 3,522억원이 투자되었는데, 투자액의 43.5%인 5,879억이 반도체 분야에 투자되었다.

[소부장펀드 반도체 분야 투자 실적]

(단위: 억원)

연도	조성실적	투자실적	
		전체	반도체
2020	7,809	7,235	2,615
2021	6,769	6,287	3,264
합 계	14,578	13,522	5,879

주: 주목적 투자 대상에 반도체 분야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

다음으로,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혁신성장공동기준 상의 반도체 분야가 포함된 뉴딜펀드의 경우 총 11조 8,322억원의 자펀드 결성액 중 9조 7,093억원이 투자되었는데,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3,000억원으로 전체 투자액 대비 0.03%에 불과하였다.

[뉴딜펀드 반도체 분야 투자 실적]

(단위: 억원)

연도	조성실적	투자실적	
		전체	반도체
2021	64,437	54,911	1,447
2022	53,885	42,182	1,553
합 계	118,322	97,093	3,000

주: 주목적 투자 대상에 반도체 분야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

2025년까지 펀드 조성이 진행된 혁신성장펀드의 경우 반도체 분야와 원전 분야가 모두 주목적 투자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자펀드 결성을 통한 투자 재원 총 13조 1,399억원 중 3조 4,98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반도체 분야 투자액은 4,504억원(투자액 대비 12.9%)에 불과하고 원전 분야 투자액은 전무한 상황이다.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원전 분야 투자 실적]

(단위: 억원)

연도	조성실적	투자실적		
		전체	반도체	원전
2023	39,427	22,578	2,751	-
2024	57,207	11,303	1,698	-
2025	34,765	1,101	55	-
합 계	131,399	34,982	4,504	-

주: 주목적 투자 대상에 반도체·원전 분야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

결론적으로, 반도체·원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정책펀드 중 반도체 또는 원전 분야를 주목적 투자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펀드의 투자 재원은 총 26조 4,299억원 규모이나, 실제 두 분야에 집행된 투자액은 1조 3,383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기존 펀드 반도체·원전 분야 투자 실적]

(단위: 억원)

연도	조성실적	투자실적		
		전체	반도체	원전
소부장펀드	14,578	13,522	5,879	-
뉴딜펀드	118,322	97,093	3,000	-
혁신성장펀드	131,399	34,982	4,504	-
합 계	264,299	145,597	13,383	-

주: 주목적 투자 대상에 반도체·원전 분야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

펀드 조성으로 마련한 투자 재원은 일반적으로 다년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고, 앞서 살펴본 펀드들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반도체 분야와 원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분야가 주목적 투자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투자실적이 부진한 것은 해당 분야 기업들의 펀드 투자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2025년 본예산으로 조성을 시작한 동 사업 펀드의 투자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당 분야 기업의 투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반도체 시장 경기여건 변동,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분야 자금 수요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보유 주식 매각 부진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 부채 상환 차질 우려

가. 현 황

재고자산매각대[1] 사업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자산(증권) 매각대금을 수납하는 수입항목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5,253억 3,000만원 중 2,615억 3,600만원이 수납되었다.

[2025회계연도 재고자산매각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재고자산매각대	525,330	525,330	525,330	261,536	261,536	-	-	100.0

자료: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정부는 2002년 말 기준 상환 부담이 있는 공적자금 채무원금 97.2조원 중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28.2조원을 제외한 69조원 중 49조원[2]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는 내용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시행(2003.1.1.)하였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국채 발행자금을 예수하여 2006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공적자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을 통해 상환하고, 매년 일반회계 재정(2002년 현가 기준 매년 2조원)과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출연금을 통해 2027년까지 국채원리금 상환을 완료하기로 계획하였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73-731

2) 나머지 20조원은 금융회사 부담분이다.

[공적자금 상환대책 자금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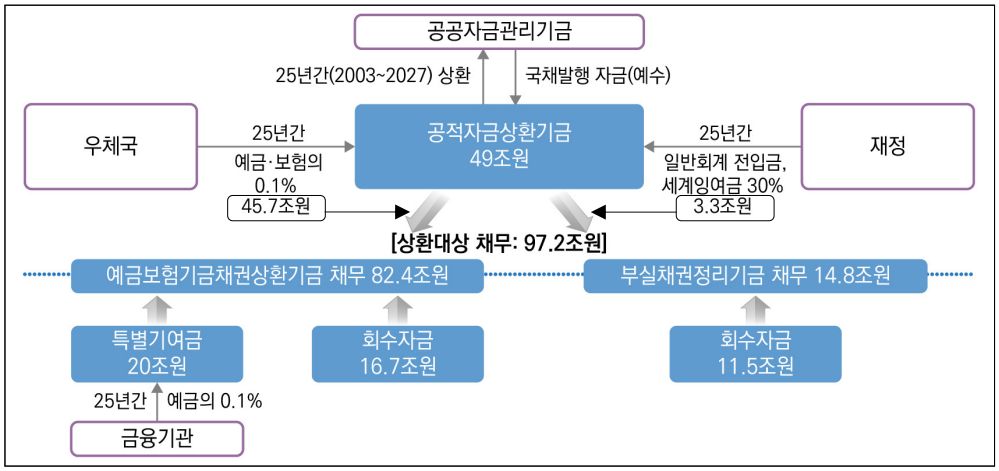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06년까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공적자금 원리금 45.7조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만기 도래 공적자금을 회수자금과 금융회사 특별기여금 등으로 상환하여 2021년 8월 차입부채 상환을 완료하였다. 이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수입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고 있다.

즉,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는 공적자금상환기금 부채 상환을 위한 전출금을 구성하는 주요 수입항목인 것이다.

나. 분석의견

예금보험채권기금상환기금 보유 주식 매각이 계획 대비 부진함에 따라 2027년 청산 예정인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잔여 부채 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26년 목표한 주식 매각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각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공적자금상환기금 부채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기금 청산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21년 8월 기금 자체 부채 상환을 완료한 이후, 주식 매각 대금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전출하고 있다. 즉,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수입 항목 수납 부진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해야 할 자금 확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2025회계연도 재고자산매각대 수납액은 2,615억 3,600만원으로, 당초 계획액인 5,253억 3,000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는데,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구성된 법정부담금[3] 외 다른 주요 수입 항목의 전반적인 수납 부진이 더해지면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규모가 당초 계획액 3조 8,000억원 대비 6,000억원 축소되었다.

[2025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요 수입 · 지출 항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년 계획
		당초	수정	결산	
수입	법정부담금	2,660,038	2,660,038	2,689,339	2,747,819
	재고자산매각대	525,330	525,330	261,536	1,818,514
	정부예금회수	1,219,382	1,219,382	250,013	10,000
	정부출자수입	227,459	227,459	167,736	195,258
지출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3,800,000	3,800,000	3,200,000	4,800,000

자료: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재고자산매각대 수납이 부진한 이유는 당초 목표한 보유 주식 매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화생명보험 주식 43,428,501주, 서울보증보험 주식 6,982,160주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반영하였으나, 한화생명보험 주식은 매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서울보증보험 주식 매각액은 1,815억원으로 당초 목표 매각 금액인 3,187억원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②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제30조의3에 따라 받은 특별기여금
제30조의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재고자산매각대 계획액 편성 및 수납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계획	수납 현황
한화생명보험	43,428,500주(5%) 매각대금 1,266	-
서울보증보험	6,982,160주(10%) 매각대금 3,187	6,982,160주 매각대금 1,815
수협중앙회	2025년 국채 만기 도래 액면가 800	2025년 국채 만기 도래 액면가 800
합계	5,253	2,615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발행 주식 수 대비 비중
자료: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수입 계획에는 한화생명보험 주식 86,857,001주, 서울보증보험 주식 23,635,946주에 대한 매각 계획이 반영되었다. 한화생명보험 매각 계획 주식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10%로 2025년 계획의 두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서울보증보험 매각 계획 주식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33.85%로 2025년 실제 매각 규모의 세배가 넘는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26년 3월 서울보증보험 잔여 지분에 대한 의무 보호 예수 기간(1년)이 종료된 이후 점진적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6년 6월 기준 현재까지 매각이 진행된 주식은 발행 주식의 4.3%에 해당하는 3,000,000주에 불과하여 연내 목표한 만큼의 매각은 쉽지 않을 전망이며, 한화생명보험 주식의 경우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 주식 매각은 향후 시장상황 및 기업실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소수지분 및 경영권 지분매각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한화생명보험 주식의 경우 현재까지는 낮은 주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매각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나, 향후 주가동향 등 매각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잔여 지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2025년말 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해야 할 잔여 부채는 원금 15.1조원 수준인데, 금융위원회는 2027년 청산 예정인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잔여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해 2026년 약 7.2조원, 2027년 약 8조원을 상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6년 상환액 7.2조원은 일반회계전입금 2.5조원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기타경상이전수입) 4.8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3,200,000**	**4,800,000**
	일반회계전입금	**2,615,961**	**2,620,637**
	기타특별회계전입금	115,961	121,843
지출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5,540,024	7,148,632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410,341	204,012

자료: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상환 재원 중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기타경상이전수입)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법정부담금 2.7조원과 재고자산매각대 1.8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재고자산매각대 1.8조원이 앞서 살펴본 2026년 주식 매각 대금인 것이다. 즉,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계획대로 주식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적자금상환기금 부채 상환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이 정부가 당초 수립한 상환계획 상의 규모(2002년 현가 기준 매년 2조원)만큼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4]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공적자금 부채 상환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 확대는 없다는 입장이며, 금융위원회는 부채 완전 상환을 위해서는 상환계획만큼의 재정 투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족 재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충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적자금상환기금 청산 여부 및 부채 상환 방식에 대한 부처별 입장]

구분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기금 청산 여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효력 만료일인 2027년 12월 31일 기금 청산	
부채 처리 방식	기금 청산과 함께 잔여 부채 완전 상환	
부채 상환 방식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보유 주식 매각 등을 통해 부채 상환 재원 자체 조달	정부가 당초 수립한 상환계획 만큼의 재정 투입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

자료: 기획예산처 및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살펴본 바와 같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채 상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관계부처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재원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고려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예정대로 부채가 청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관리를 비롯한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26년 목표한 주식 매각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각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공적자금상환기금 부채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기금 청산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7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 불용 관련 분석

7-1. 종료 예정 보증사업의 운용기간 연장을 전제한 계획 편성 문제

가. 현 황

대환보증 대위변제[1] 사업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대환보증 상품과 관련하여, 피보증인이 주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3,261억원 중 1,810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1,450억 8,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대환보증 대위변제	326,100	326,100	326,100	181,017	-	145,083	158,425

자료: 금융위원회

대환보증 지원 대상은 2023년 5월 말 이전 차입한 고금리 사업자 대출 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차입한 사업 목적 가계신용대출이며, 개인 1억원·법인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리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환보증 신규 공급을 위한 출연금 6,800억원을 최초로 편성·교부하였으며 2023년 본예산을 통해 800억원을 추가로 편성·교부하였다.[2]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신용보증기금 2431-317

2) 보증공급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확충해주는 출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대환보증 상품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적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개인기업 및 법인 소기업
대상 채무	▪ '23.5월말 이전 차입한 고금리(7% 이상) 사업자대출 ▪ '20.1.1~'23.5.31. 기간 중 차입한 사업목적 가계신용대출
보증 한도	▪ (개인) 100백만원*, (법인) 200백만원 * 사업목적 가계신용대출 대환한도(20백만원) 포함
보증료율	▪ (1년차) 면제 ▪ (2~3년차) 0.7% ▪ (4~10년차) 1.0%* * 10년치 일시납 시 총 납부금액의 15% 할인
금리상한	▪ (1년차) 5.0% ▪ (2년차) 5.5% ▪ (3~10년차) 은행채 1년물(AAA)+2.0%p
보증 비율	▪ 90%
상환구조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10년 만기)
취급 금융사	▪ 15개 은행에 업무 위탁

자료: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나. 분석의견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말 종료가 예정된 대환보증의 2025년 신규 공급분을 전제하고 대위변제액을 추산하여 과다한 불용을 유발하였으므로, 향후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실발생 규모에 대한 예측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종료가 예정된 사업의 운용기간 연장을 전제하고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환보증 대위변제를 위해 편성된 계획액의 불용액이 최근 3년간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5년도 불용 규모는 1,450억 8,300만원으로 2023년 783억 4,300만원 대비 대폭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대환보증 대위변제 지출액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집행액	불용액
2023	103,131	24,788	**78,343**
2024	254,436	123,679	**130,757**
2025	326,100	181,017	**145,083**

자료: 금융위원회

대위변제 계획액의 불용이 과다한 것은 각 보증사업의 부실 규모에 대한 예측 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사업의 직전연도말 부실잔액 예상치와 당해연도 부실순증액 예상치를 더한 값에 과거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의 5개년 대위변제발생률[3]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획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의 예측치에 비해 실제 부실이 적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 부실순증액을 4,040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발생한 부실액은 1,571억원에 불과하였다.

[2024·2025년 대환보증 부실 발생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말 부실잔액	2024년 부실순증액	2024년말 부실잔액	2025년 부실순증액
예상	191	3,243	579	4,040
실적	362	1,505	661	1,571
예측오차	**△171**	**1,738**	**△82**	**2,469**

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 부실순증액에 대한 예측오차가 크게 발생한 이유는 신용보증기금이 2025년도 신규 보증공급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면서 2025년 공급분을 7조 7,910억원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계획안 편성 당시 확인 가능했던 대환보증 공급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3) 부실발생액 중 대위변제가 진행되는 비율

[최근 5년간 신규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보증공급 목표				**95,000**	-
신규 보증공급 실적	**-**	**2,321**	**9,333**	**4,947**	**25**
부실순증액	-	2	602	1,505	1,571
대위변제액	-	-	248	1,237	1,810

자료: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년도 대환보증 부실순증액 산출근거]

(단위: 억원)

예상 부실순증액	산출근거
4,040	신규공급액 × 연차별 예상 부실률 = '22년 공급분 2,321 × 12.00% = 279 + '23년 공급분 9,333 × 15.30% = 1,428 + '24년 공급분 5,436 × 11.40% = 620 + **'25년 공급분 77,910** × 2.20% = 1,714

자료: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상기 통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2025년 대환보증 실제 공급액은 25억원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신규 보증이 2024년 12월말 종료되었기 때문이다.[4] 즉,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말 종료 예정인 대환보증 사업의 2025년 공급목표를 무려 7조 7,910억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2022년 제2회 추경을 통해 동 사업이 신규로 추진될 당시 목표 보증공급 규모는 8.5조원, 운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설정되었는데, 2023년 기금운용계획에 800억원의 출연금이 추가로 편성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자체 지침 수정을 통해 목표 보증공급 규모를 9.5조원으로 상향하고 운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면서 총 공급목표(9.5조원) 대비 잔여분 약 8.3조원을 운용기한인 2024년말까지 모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 대위변제액을 7,139억원으로 산정하여 제출하였다.

4) 25억원은 2024년 12월 신청된 건에 대한 보증이 2025년 실행된 것이다.

그런데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환보증 공급 실적에 비해 2024년에 잔여 공급분을 모두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그에 근거한 대위변제 예상치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5]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국회 지적 취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2024년 공급분을 현실화(8조 3,346억원 → 5,436억원)하고 나머지 7조 7,910억원을 2025년 공급분으로 이연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공급에서 사고 발생, 대위변제에 이르는 통상적인 시차를 고려하여 2025년 기금운용계획상의 대위변제액 또한 7,139억원에서 3,261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즉, 현황에서 살펴본 불용액은 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계획액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규모인 것이다.

[대환보증 대위변제 공급규모 설정 및 변경 내역]

구분	내용
2022년도 2차 추경	대환보증 출연금: 6,800억원 목표 보증공급액 8.5조원 운용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3년도 본예산	대환보증 출연금: 800억원
2023.3. 지침 수정 (금융위)	목표 보증공급액: 9.5조원으로 상향 운용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2025년도 본예산	(초안) 목표 보증공급액 9.5조원 중 잔여분 8.3조원을 2024년 공급분으로 설정하여 2025년 대위변제액 7,139억원 산정 (최종안) 2024년 공급분 5,436억원으로 현실화 후 잔여분 7.8조원을 2025년 공급분으로 가정하여 2025년 대위변제액 3,261억원 산정

자료: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과거 한차례 운용기한이 연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국회 지적에 따라 2025년 대위변제 추정액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운용기한 연장을 위한 논의나 금융위원회 차원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5)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2024.10.

때, 2024년 12월 31일 종료가 예정되어 있던 대환보증 사업의 보증공급 목표를 2025년으로 이연시키고 이에 근거하여 부실발생 규모와 대위변제액을 산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재정 운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신용보증기금이 동 사업 대위변제 추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2024년말 사업이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보증공급 목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액을 현실화하는 방법이 타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살펴본 바와 같이 보증공급 및 부실발생 추세 등에 비추어 과다한 대위변제액을 편성하여 과다불용을 반복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정합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또한, 2024년 종료 예정인 사업의 2024년 목표치가 과다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2024년 목표치의 대부분을 2025년으로 이연하는 방식으로 2024년 목표치를 현실화하는 것은 국회 지적 취지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실발생 규모에 대한 예측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종료가 예정된 사업의 운용기간 연장을 전제하고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7-2. 보증사업 부실 발생 규모에 대한 예측 정합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소상공인위탁보증 대위변제[6] 사업은 코로나19로 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고, 보증한 대출 건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3,479억 4,600만원 중 1,884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1,594억 4,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소상공인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347,946	347,946	347,946	188,499	-	159,447	109,590

자료: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위탁보증의 지원 대상은 업력 6개월 이상의 개인 소기업으로, 기업당 1,9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간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소상공인위탁보증은 2020년 5월 25일 출시되어 2021년 12월 31일 신규 보증공급이 종료되었다.

6) 코드: 신용보증기금 2431-316

[소상공인위탁보증 상품 개요]

구 분	기본 프로그램 ('20.5.25. ~ '21.12.31.)	집합제한(임차) 프로그램 ('21.1.18. ~ '21.12.31.)
사업 목적	소상공인 전용 위탁보증 도입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속되는 소상공인 자금애로를 해소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추가 지원 실시
지원 대상	개인 소기업(업력 6개월 이상)	기본 프로그램 대상 중 집합제한·경영위기업종 영위 임차 소기업
보증 한도	기업당 19백만원	기업당 19백만원
보증료율	(1년차) 0.3% (2~5년차) 0.9%	(1~2년차) 면제 (3~5년차) 0.4%
보증 비율	95%	
상환구조	최대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취급 금융사	12개 은행에 업무 위탁	

자료: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나. 분석의견

소상공인위탁보증 사업 보증잔액에 대한 부실 규모 과다 예측으로 인해 대위변제 계획액 불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업 부실 규모에 대한 예측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위탁보증 대위변제를 위해 편성된 계획액의 불용액이 최근 3년간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3년도 불용액 규모는 778억 6,300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825억 4,8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594억 4,700만원으로 급증하였다.

[최근 3년간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지출액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획액	집행액	불용액
2023	585,218	507,355	**77,863**
2024	555,474	472,926	**82,548**
2025	347,946	188,499	**159,447**

자료: 금융위원회

대위변제 계획액의 불용이 과다한 것은 각 보증사업의 부실 규모에 대한 예측 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사업의 직전연도말 부실잔액 예상치와 당해연도 부실순증액 예상치를 더한 값에 과거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의 5개년 대위변제발생률[7]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획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의 예측치에 비해 실제 부실이 적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위탁보증의 2024년말 부실잔액을 2,306억원, 2025년 부실순증액을 2,622억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2024년말 부실잔액은 1,274억원, 2025년 부실순증액은 978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실순증액에 대한 예측오차는 2024년에도 1,699억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부실 발생 규모를 다소 과다하게 예측해 온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2025년 소상공인위탁보증 부실 발생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말 부실잔액	2024년 부실순증액	2024년말 부실잔액	2025년 부실순증액
예상	2,049	5,449	2,306	2,622
실적	2,144	3,750	1,274	978
예측오차	**△95**	**1,699**	**1,032**	**1,644**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를 위한 재원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 발생 규모를 보수적으로 전망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2025년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실 규모를 비교적 크게 예측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한 정부의 경기부양·민생안정 목적의 조치로 인해 부실 발생 규모가 예상보다 양호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매년 부실 규모에 대한 예측 오차가 크게 발생함에 따른 과다 불용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적정 규모의 계획액을 산출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의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금운용의 정합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금운용 능력과 부실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것이다.

7) 부실발생액 중 대위변제가 진행되는 비율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계획액의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부실 규모에 대한 예측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억 1,200만원이며, 14억 100만원 징수결정하여 이 중 79.6%인 11억 1,5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8,600만원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912	912	912	1,401	1,115	286	0	79.6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083억 2,600만원이며, 이 중 96.3%인 1,043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39억 9,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05,090	105,090	108,326	104,333	0	3,994	96.3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산은 445억 3,500만원, 부채는 9,200만원, 순자산은 444억 4,3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15억 6,700만원, 유·무형자산 428억 8,000만원, 기타자산 8,8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0억 100만원(4.7%) 증가하였다. 이는 무형자산이 140억 3,6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충당부채 9,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100만원(29.6%) 증가하였다. 이는 기타충당부채가 2,500만원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44,535	42,534	2,001	4.7
Ⅰ. 금융자산	1,567	1,906	△339	△17.8
Ⅱ. 유·무형자산	42,880	28,268	14,612	51.7
Ⅲ. 기타자산	88	12,359	△12,271	△99.3
부 채	92	71	21	29.6
Ⅰ. 차입부채	-	4	△4	△100.0
Ⅱ. 충당부채	92	67	25	37.3
Ⅲ. 기타부채	-	-	-	-
순 자 산	44,443	42,463	1,980	4.7
Ⅰ. 기본순자산	13,678	13,678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23,931	21,938	1,993	9.1
Ⅲ. 순자산조정	6,834	6,847	△13	0.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103억 8,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105억 1,400만원, 비배분비용 3,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1억 6,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63억 3,800만원(6.1%) 증가한 1,103억 8,900만원이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유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순원가 64억 3,600만원이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증진 단일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 1,105억 1,400만원은 모두 국민권익증진 프로그램원가이다.

그 밖에 단일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관리운영비로 집계된 원가는 없으며, 비배분비용은 기타국가운영비용 3,700만원이며, 비배분수익은 기타국가운영수익 1억 3,200만원 등 총 1억 6,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10,514	104,078	6,436	6.2
Ⅱ. 관리운영비	-	-	-	-
Ⅲ. 비배분비용	37	139	△102	△73.4
Ⅳ. 비배분수익	162	166	△4	△2.4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10,389	104,051	6,338	6.1
Ⅵ. 비교환수익 등	-	-	-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10,389	104,051	6,338	6.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424억 6,3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44억 4,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9억 8,000만원(4.7%)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103억 8,9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1,3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123억 8,200만원으로 집계되어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이전수익 등 재원의 조달 1,134억 9,7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1억 1,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1,3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42,463	31,637	10,826	34.2
Ⅱ. 재정운영결과	110,389	104,051	6,338	6.1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12,382	114,892	△2,510	△2.2
Ⅳ. 조정항목	△13	△15	2	13.3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44,443	42,463	1,980	4.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청렴권익정책알리기, ② 청렴권익민간협력, ③ 고충민원조사활동** 등 11개 사업이 있다.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은 오프라인 홍보예산이 5,500만원 감액(14억 4,500만원→ 13억 9,000만원)되었고, 청렴권익민간협력사업은 웹진 발간에 따라 인쇄비 3,600만원이 감액(3억 5,400만원→3억 1,800만원)되었고, 고충민원조사활동사업은 차량 구입 방식을 임차로 변경하여 예산 절감차원에서 8,000만원 감액(16억 8,000만원→16억원)되었다[1].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은 없다.

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국민권익위원회는 ①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②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③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를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행정심판 재결 법정기한을 도과하는 사건 비중이 증가하고 평균 재결기간이 길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사건유형별 주요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을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필요 시 인력 확대를 검토하는 등 재결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사업 분석

1 행정심판 운영 현황 분석

1-1.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행정심판운영[1] 사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의 실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5억 4,300만원 중 13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행정심판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행정심판운영	1,543	1,543	-	-	1,543	1,324	-	219	1,344	1,344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이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불복절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행정청,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2]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1137-370

2)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그 위탁받은

나. 분석의견

행정심판 재결 법정기한을 도과하는 사건 비중이 증가하고 평균 재결기간이 길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사건유형별 주요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을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필요 시 인력 확대를 검토하는 등 재결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에 있어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있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결정)으로서,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준사법적 효력을 갖는다. 「행정심판법」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 재결의 법정기한은 원칙적으로 60일이며, 예외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재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수행한 행정심판 중 일반·보훈 분야 재결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원칙적인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재결이 이루어진 비중은 일반 유형의 경우 전체 사건 대비 47.3%, 보훈 유형의 경우 전체 사건 대비 32.8%로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으며, 예외 사유가 인정될 때의 기한인 90일을 초과한 비중은 전년 대비 높아진 문제가 있다. 또한, 평균 재결기간은 일반 유형과 보훈 유형 각각 82.4일, 84.4일로, 전년 대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최근 3년간 행정심판(일반·보훈 유형) 재결기간별 현황]

(단위: 건, %, 일)

유형	연도	60일 이내		61일~90일		90일 초과		평균 재결기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일반	2023	9,314	65.3	1,778	12.5	3,161	22.2	67.3
	2024	2,401	46.0	1,167	22.3	1,656	31.7	76.8
	2025	3,011	**47.3**	1,298	**20.4**	2,062	**32.4**	**82.4**
보훈	2023	264	21.3	283	22.8	694	55.9	101.1
	2024	418	36.8	338	29.8	380	33.5	80.5
	2025	349	**32.8**	298	**28.0**	416	**39.1**	**84.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성격과 내용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며 심판청구에서 재결까지의 필수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법정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결기간 단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행정심판 청구에서 재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사건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심판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사건유형별 주요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을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필요 시 인력 확대를 검토하는 등 재결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1-2.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참여 기관 확대 필요

가. 현 황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3] 사업의 내역사업인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운영 사업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원스톱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62억원 중 61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불용하였다.[4]

[2025회계연도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7,665	7,665	3,236	-	10,901	10,620	-	281	2,670	2,670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운영	2,964	2,964	3,236	-	6,200	6,173	-	27	-	-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운영 내역사업을 통해 2023년부터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이란 행정심판 청구인 등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여러 행정심판 담당기관의 온라인 행정심판 기능과 정보를 하나의 창구로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25년 6월 2일 개통되었다.

3) 코드: 일반회계 1132-320

4)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운영 사업은 2025년까지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이었으나, 2026년부터 신규 세부사업('행정심판시스템운영(정보화)')으로 분리되었으며, 2026년 해당 세부사업 예산은 1,822백만원임

나. 분석의견

모든 행정심판 관련 정보와 기능을 통합하고자 구축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에 대한 행정심판 담당 기관의 참여가 축소된 문제가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담당 기관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통합시스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관 간 협의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다부처 참여가 필요한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의 특성 및 근거 법률 등의 제반 사정을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3개 행정심판 수행기관 중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통합 대상 기관을 118개로 설정하였으며,[5] 구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대상 기관의 통합 시스템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2026년 4월말 기준 118개 행정심판위원회 중 90개 위원회만이 통합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관의 수는 시스템 개통 이전에 통합 의사를 밝힌 기관 수(95개)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통합시스템 개통 전후 참여 행정심판위원회 현황]

(단위: 개)

구분	시스템 개통 전(2025.5.)	시스템 개통 후(2026.4.)
참여 기관 수	95	90
미참여 기관 수	23	28
제외 기관 수	5	5
합계	123	12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미참여 기관 중 일부는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개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독자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정보원, 군인사 관련 행정심판 등 국가안보 및 군사보안의 측면에서 행정심판 관련 정보를 통합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기관을 통합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5) 특허심판, 공정거래위원회 이의신청 등의 행정심판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참여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
참여기관 (90)	일반(49)	중앙행정심판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지방교정청(4)·고등검찰청(6), 시도 행정심판위원회(17),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17)
	소청(3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시도 소청심사위원회(17), 시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17)
	보상보험(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장기요양심판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토지등(3)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광업조정위원회
미참여기관 (28)	일반(8)	대통령소속(3),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감사원, 중앙선관위, 국가정보원 등
	소청(11)	중앙소청심사위원회,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선관위, 중앙군인사, 육군·공군·해군·군무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등 소청심사위원회
	조세(3)	조세심판원, 국세심사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보상보험(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토지(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그 외 미참여 기관 중에는 개별 법령에 행정심판 불복청구의 수단으로서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이 있는 조세 관련 행정심판위원회도 있다. 「국세기본법」, 「관세법」 등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6]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관련 기능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기능통합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정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것이다.

한편, 그 외 일부 미참여 기관의 경우 담당하는 행정심판의 특성상 통합시스템에 참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나,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

6) 「국세기본법」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 행정심판 관련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는 기존의 방안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추가로 참여하는 기관이 개별 법령에서 특별한 절차적 차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추가 예산 투입이나 복잡한 개발과정 없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미참여 기관의 신규 참여 시 곧바로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시스템 참여기관이 확대되지 못하고 일부 기관의 행정심판 정보와 기능이 각각의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은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든 행정심판의 기능과 정보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함으로써 피청구인을 비롯한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동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별 행정심판법에 따라 별도 운영되거나, 별도 시스템을 운용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행정심판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간 협의를 지속하고, 향후 다부처 참여가 필요한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의 특성 및 근거 법률 등의 제반 사정을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410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34억 5,700만원이다. 이 중 98.3%인 1,999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고, 34억 2,2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억 2,0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되었다.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41,010	41,010	203,457	199,914	3,422	120	98.3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660억 3,000만원이며, 이 중 99.4%인 656억 3,300만원이 지출되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3억 9,700만원은 불용되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회계	64,548	66,030	65,633	-	397	99.4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지수 예산분석관(jskim05@assembly.go.kr, 6788-4630)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산은 180억 7,500만원, 부채는 5,900만원으로, 순자산은 180억 1,6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27억 5,200만원, 유·무형자산 153억 2,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99억 6,100만원(△52.5%) 감소하였다. 이는 유·무형자산이 전기 대비 13억 6,400만원 증가하였으나, 미수제재금수익 감소 등에 따라 금융자산이 213억 2,500만원 감소한 데 기인한다.

부채는 충당부채 5,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00만원(9.3%) 증가하였다. 이는 소송충당부채가 5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8,075	38,036	△19,961	△52.5
Ⅰ. 금융자산	2,752	24,077	△21,325	△88.6
Ⅱ. 유·무형자산	15,323	13,959	1,364	9.8
Ⅲ. 기타자산	-	-	-	-
부 채	59	54	5	9.3
Ⅰ. 차입부채	-	-	-	-
Ⅱ. 충당부채	59	54	5	9.3
Ⅲ. 기타부채	-	-	-	-
순 자 산	18,016	37,982	△19,966	△52.6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645억 3,1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순원가 419억 8,000만원, 관리운영비 246억 2,300만원, 비배분비용 1억 5,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배분수익 22억 3,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는 전년 대비 69억 800만원(12.0%) 증가한 645억 3,100만원이다. 이는 주로 외주용역비 증가 등으로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 대비 63억 1,1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한다.

총 2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316억 9,600만원)이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60억 3,300만원과 운영비 48억원, 기타국가운영비용 27억 5,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비용은 기타국가운영비용 1억 5,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정운영표(프로그램별)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프로그램순원가	41,980	35,669	6,311	17.7
Ⅱ. 관리운영비	24,623	23,495	1,128	4.8
Ⅲ. 비배분비용	158	107	51	47.7
Ⅳ. 비배분수익	2,230	1,648	582	35.3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64,531	57,623	6,908	12.0
Ⅵ. 비교환수익 등	-	-	-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64,531	57,623	6,908	12.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정운영표(성질별)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수익합계(a)	2,230	1,648	582	35.3
Ⅰ. 이전수익	-	-	-	-
Ⅱ. 국가운영수익	2,230	1,648	582	35.3
비용합계(b)	66,761	59,271	7,490	12.6
Ⅲ. 이전비용	33,425	33,867	△442	△1.3
Ⅳ. 국가운영비용	33,336	25,404	7,932	31.2
재정운영결과(b-a)	64,531	57,623	6,908	12.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379억 8,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80억 1,6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99억 6,600만원(△52.6%) 감소하였다. 이는 회계연도 중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645억 3,1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445억 6,500만원에 그쳐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2,444억 7,9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999억 1,4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37,982	7,806	30,176	386.6
Ⅱ. 재정운영결과	64,531	57,623	6,908	12.0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4,565	87,799	△43,234	△49.2
Ⅳ. 조정항목	-	-	-	-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8,016	37,982	△19,966	△52.6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1억 7,200만원이며 이는 주로 부담금제재금수입(1,978억 1,400만원) 등에서 발생하였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1억 7,200만원이며 대부분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취득 11억 3,100만원 등에서 발생하였다.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금흐름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72	-	1,172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72	-	△1,172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Ⅳ. 현금의 증감	-	-	-	-
Ⅴ. 기초의 현금	-	-	-	-
Ⅵ. 기말의 현금	-	-	-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는 **①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②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③ 위원회 법무지원, ④ 위원회 기본경비(기관운영) 사업**이 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공유 행사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감액(1억 8,500만원 → 1억 8,000만원)되었다.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은 사업수행 방식을 위탁 수행에서 직접 수행으로 변경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랩을 정부서울청사 내 여유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200만원 감액(16억 2,800만원 → 15억 9,600만원)되었다. 위원회 법무지원 사업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집행실적이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3,000만원 감액(5억 1,500만원 → 4억 8,500만원) 되었고, 위원회 기본경비(기관운영) 사업은 관서업무추진비 조정을 위해 1,000만원 감액(5억 9,100만원 → 5억 8,1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은 없다.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 데이터와 신뢰 기반의 AI 성장여건 조성, ②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③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재정비를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개인정보 사고조사는 신고 접수 이후 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조사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조사정보통합시스템도 조사 단계별 핵심 정보의 입력 및 자료 현행화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사건관리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건유형별 지연요인과 장기계류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한 사고조사 데이터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ISMS-P 인증 보유 기관·기업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우수등급 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법 위반 처분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현행 인증·평가체계가 실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충분히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 ISMS-P 인증제도 개편에 앞서 인증범위 설정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에 대해서도 유출 규모와 위험도 등을 반영한 차등평가 및 현장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수혜기업 지원이 연말에 집중되었고, 당초 계획에 없던 특화프로그램에 집행되는 등 지원 프로그램의 내실성과 예산 편성 취지와의 정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과 집행 일정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사업 분석

1 개인정보 사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개인정보 사고조사 업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8[1]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핵심 소관 사무 중 하나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행정처분을 의결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5회계연도 기준 개인정보 사고조사 관련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 위원회총액기본경비(조사조정국), 위원회기본경비(조사조정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 사고조사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개인정보 침해방지	7,486	8,782	-	64	8,846	8,811	-	35	7,665	7,665
개인정보 사고 조사 지원	1,596	1,596	-	-	1,596	1,555	-	41	2,350	2,350
위원회총액기본경비 (조사조정국)	66	66	-	-	66	63	-	3	72	72
위원회기본경비 (조사조정국)	226	226	-	△50	177	174	-	2	231	231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지수 예산분석관(jskim05@assembly.go.kr, 6788-4630)

1)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2025년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뿐만 아니라 쿠팡, 롯데카드, 네이버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기업과 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유출 규모 또한 확대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고조사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나아가 현행 개인정보 보호 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2020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의결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건을 대상으로 사고조사 업무 수행상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025년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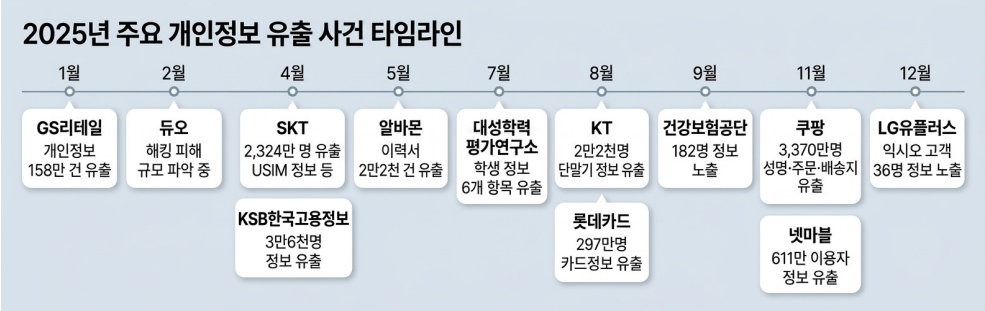

자료: 중앙일보 기사(2025.12.9.) "참 뚫리기 쉬운 한국…올해 딱 세달 빼곤 매달 정보 유출사고"를 참고하여 재작성

이를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 유형, 조사 착수 및 처분 일시, 조사 참여 인력, 유출 규모 등 사건별 사고조사 과정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료 제공의 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입장을 수차례 변경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의결이 완료된 사건에 한하여 사건별 의결일자와 처분 결과만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와 그 처리 과정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감독기관의 조사·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정보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 수행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감독기관으로서, 피감기관에 대하여 높은 수준

의 투명성과 자료 제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동 위원회 스스로도 사고조사 업무 수행 내역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충분한 투명성을 확보할 책무가 있다.

또한 결산심사 제도는 국회가 정부의 재정활동과 사업 수행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환류하기 위한 핵심 통제장치로서, 이를 위해서는 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충분하고 정확한 자료가 국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회계연도 결산분석을 위하여 자료요청을 하였음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료 제공의 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입장을 수차례 변경한 끝에 최종적으로 의결이 완료된 사건의 의결일자와 처분 결과 외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본 분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결서, 공식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등을 대체 자료로 활용하여 2020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의 의결 완료 사건에 대한 자체적인 사고조사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사고조사 업무 수행상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개요]

구분	내용
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공개 의결서 ◆ 공식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분석 기간	◆ 2020년 11월 ~ 2026년 4월 (의결 완료 기준)
연도 구분 기준	◆ 의결(행정 처분) 완료일 기준
주요 분석 항목	◆ 신고일, 조사 착수일, 조사 완료일, 의결일, 고지서 부과일, 인입경로, 기관유형, 유출규모, 사고유형 등

1-1.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의 실질적 활용 및 사고조사 데이터 관리 체계 정비 필요

가. 현 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의 접수, 조사 및 처분 등 사고조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 사고조사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약 52억원[2]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되었으며, 조사 사건의 접수·조회·관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 중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기능개발·운영' 내역의 예산은 7억 7,500만원이며, 이 중 7억 5,600만원이 집행되고 1,9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 사고조사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개인정보 침해방지	7,486	8,782	-	64	8,846	8,811	-	35	7,665	7,665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4,064	4,064	-	64	4,128	4,093	-	35	4,193	4,193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911	911	-	-	911	910	-	1	1,111	1,111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운영	1,066	1,066	-	-	1,066	1,066	-	-	1,066	1,066
개인정보 처리 실태 모니터링	608	608	-	-	608	593	-	15	608	608
고유식별정보처리 자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431	431	-	-	431	431	-	-	431	431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지원	273	273	-	64	337	337	-	-	192	192
개인정보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기능개발·운영	**775**	**775**	**-**	**-**	**775**	**756**	**-**	**19**	**785**	**785**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은 2022년 ISP 수립 1억 9,400만원, 2023년 시스템 구축 32억 3,700만원, 2024년 시스템 고도화 17억 7,500만원을 합산한 금액임

나. 분석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스템 운영체계와 사고조사 데이터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은 사고 접수부터 조사 진행, 처분 및 사후 관리까지 사고조사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임에도, 실제로는 사건의 일부 정보만을 저장하는 기능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이 사고조사 업무의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은 개인정보 침해이슈 증가에 대응하여 조사 이력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 착수부터 처분까지 사고조사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은 2022년 ISP 수립을 시작으로 2023~2024년 구축 및 고도화가 추진되었고, 2025년부터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9억 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조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운영 예산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	주요 내용
2022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194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023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3,237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시스템 구축(1단계)
2024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1,775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2단계 구축 (10.41억원)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3억원) 등
2025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기능개발·운영	775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당초 제출한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입력 현황에 따르면, 사건 기본정보, 신고인 정보, 사고 정보 및 처분 정보 등 일부 항목은 시스템에 입력되고 있는 반면, 조사 착수·진행, 조사 결과, 납부 관리, 시정조치, 불복절차 등 사고조사의 단계별 관리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은 입력·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착수일, 조사 상태, 자료제출 여부, 현장조사 여부, 이행 여부 등 사고조사 진행상황과 사후관리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항목조차 시스템상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입력 현황]

(단위: 건)

구분	기능영역	시스템 입력 건수						주요 세부 데이터 항목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사건 기본정보	등록·접수	163	167	318	307	447	168	사건번호, 접수경로, 사건유형, 담당자 등
신고인 정보	사건 접수	163	167	318	307	447	168	신고자 유형, 신고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신고내용
사고 정보	사건 상세	163	167	318	307	447	168	발생일시, 인지일시, 사고유형, 유출 개인정보 유형, 유출 규모, 사고 원인, 사고 경위
조사 정보	조사 착수·진행	-	-	-	-	-	-	조사 착수일, 조사 유형, 조사 상태, 자료제출 여부, 현장조사 여부, 조사 로그
조사 결과	결과보고	-	-	-	-	-	-	위반 여부, 위반 법조항, 위반 내용, 피해 규모, 고의/과실 여부
처분 정보	처분 결정	194	161	290	222	226	21	처분 유형, 과징금/과태료 금액, 산정 근거, 처분일
납부 관리	고지·납부	-	-	-	-	-	-	고지서 발급일, 납부기한, 납부 여부, 납부 금액, 체납 여부
시정조치	사후관리	-	-	-	-	-	-	시정조치 내용, 이행 기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불복절차	이의제기	-	-	-	-	-	-	이의제기 여부, 행정심판 여부, 소송 여부
자료관리	자료 관리	해당없음						조사 관련 자료 관리 기능
사건관리	사건 상태관리	해당없음						사건별 신고접수부터 처분 완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관리	통계	해당없음						조사 사건 유형별, 처분내역별 기준으로 통계 산출 및 관리 기능

주: 1. 주요 세부 데이터 항목은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기능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정리함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납부절차 및 불복절차 관련 사항은 타 부서 소관 업무로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어, 해당 정보를 필수로 입력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4월 10일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입력 현황 자료 제출 당시에는 자료 입력 여부가 확인되는 항목에 한하여 입력 건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6월 30일 조사정보시스템 내 조사 정보, 조사 결과 등 주요 처리정보가 모두 입력·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의결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의 공정성 등을 사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운영실태는 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3월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조사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고 유형, 신고 일시, 조사 참여 인력 등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정리·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사업설명 과정에서도 조사정보시스템이 존재함에도 관련 자료가 즉시 산출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 화재 당시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였고, 그 이전 사고 자료 역시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복구 기간 중 온나라 내부결재 및 수기대장 방식으로 조사 업무를 처리하였고, 엑셀로 관리하고 있는 사건대장을 바탕으로 미적재 사건을 시스템에 순차적으로 입력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핵심 사고조사 데이터가 별도 엑셀 대장에 의존하여 관리되고 있었다면,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이 사고조사 업무의 실시간 관리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음에도 사고조사 현황을 시스템을 통해 파악·분석할 수 있는 업무관리 체계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4)]

더욱이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업무관리 시스템으로서,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국회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 시스템의 실제 입력·관리 실태와 사고조사 업무의 수행 내역을 점검·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로 인해 위원회의 설명만으로는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이 사고조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추적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이 사고조사 전 과정의 관리수단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입력 항목의 충실성, 단계별 이력관리 여부, 통계·분석 기능의 활용도 등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은 사고조사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현행화하여 사고 대응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조사 단계별 데이터 입력 누락, 과거 사건 미적재, 정합성 검증 지연 등이 발생하고

4) 한편 이와 유사하게 진정·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e-진정시스템을 통해 민원·신고 사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건별 착수일, 조사 내용에 대한 결재·업무보고 일자, 결과보고서 등 주요 처리정보가 시스템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고조사 데이터의 입력·현행화 및 시스템과 사고 조사 자료 간 정합성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고조사 데이터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조사 데이터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발생 추이, 사고 원인, 조사 착수 및 처리 현황, 처분 결과와 시정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자료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은 개별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반복사고 예방, 사고 유형별 대응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사고조사 데이터는 조사 단계별로 누락 없이 축적·현행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3월 사업 설명 당시,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후 시스템이 복구된 12월까지 약 3개월간 조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시스템 복구 이후에도 화재 기간 중 처리된 사건 및 미적재 사건에 대한 입력·현행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이 2025년 12월 8일 가오픈된 후 같은 달 22일 기능이 복구되었으나, 미적재 사건에 대한 입력은 2026년 4월부터 시작되어 2026년 6월 완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자원 화재 이후 조사정보통합시스템 복구 및 현행화 계획]

일자	주요 내용
2025. 9. 26.	국자원 화재 발생
2025. 11. 6.	유출신고 및 신고관리 시스템 복구
2025. 12. 8.	조사정보시스템 가오픈
2025. 12. 22.	조사정보시스템 복구
2026. 2월 ~ 3월	화재기간 수정 데이터 영향도 분석
2026. 4월 ~	미적재 사건 조사정보시스템에 입력 (6월 완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다만 앞서 살펴본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입력 현황과 자료 제출 경과를 종합하면, 동 문제는 국자원 화재로 인한 약 3개월간의 시스템 중단에 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화재 기간 중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과거 자료 역시 시스템에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조사 착수·진행, 조사 결과, 시정조치 등 사고조사 단계별 핵심 항목이 관행적으로 입력·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고조사 데이터 관리 미흡이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의 결과라기보다는, 2024년 시스템 구축 이후 사고조사 자료를 정기적으로 입력·현행화하고 업무관리 자료로 활용하는 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자원 화재에 따른 시스템 중단은 외부적 사정으로 볼 수 있으나, 사고조사 업무의 핵심 시스템이라면 시스템 장애 기간 중 임시로 처리한 자료도 복구 이후 신속하게 반영되고, 기존 사건자료와의 정합성 검증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시스템 복구 이후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적재 사건 입력과 정합성 검증이 완료되지 못하고, 별도 엑셀 대장에 의존하여 자료를 순차 입력하고 있다는 점은 조사사고 업무 관리·운영상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이후 사고조사 전 과정의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입력·현행화되고 있었는지, 조사 단계별 필수 항목이 누락없이 관리되고 있었는지, 별도 대장과 시스템 간 자료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스템 장애 또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사고조사 자료가 적시에 복구·반영될 수 있도록 미적재 사건 입력, 자료 현행화, 정합성 검증 절차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고조사 데이터의 입력 책임, 입력기한, 정합성 검증 절차 및 현행화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이 사고 대응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1-2.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체계의 한계 개선 및 유출사고 대응체계 개선 필요

가. 현 황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신고 접수, 위법사항 법률 검토 및 행정처분 지원,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조사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동 사업의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출연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8억 4,600만원이며, 이 중 88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3,5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 사고조사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개인정보 침해방지	7,486	8,782	-	64	8,846	8,811	-	35	7,665	7,665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4,064	4,064	-	64	4,128	4,093	-	35	4,193	4,193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실태점검	911	911	-	-	911	910	-	1	1,111	1,111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운영	**1,066**	**1,066**	**-**	**-**	**1,066**	**1,066**	**-**	**-**	**1,066**	**1,066**
개인정보 처리 실태 모니터링	608	608	-	-	608	593	-	15	608	608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431	431	-	-	431	431	-	-	431	431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지원	273	273	-	64	337	337	-	-	192	192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기능개발·운영	775	775	-	-	775	756	-	19	785	785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3,392	4,688	-	-	4,688	4,688	-	-	3,442	3,442
개인정보 침해방지 지원	30	30	-	-	30	30	-	-	30	30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분석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는바, 신고 접수·연계 체계와 사고조사 현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는 초기 단계에서 유형과 원인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령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접수가 가능함에도 실제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초기 대응이 비효율적인바, KISA가 유출신고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접수·연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는 사고 발생 초기에는 그 원인과 유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컨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에도 그 원인이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인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유출인지, 정보주체 권리침해 또는 부정이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사고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개인정보·사이버보안 관련 신고 접수 창구 운영 현황]

분야	개인정보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유출신고	개인정보 침해신고		침해사고 신고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	불법 스팸 신고
		정보주체 직접신고	제3자 공익제보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	제48조의3 (침해 사고의 신고)	제8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소관부처	개인정보위, KISA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KISA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
신고·접수		KISA(권한위탁)		과기정통부, KISA	KISA(권한위탁)	KISA(권한위탁)
신고창구	개인정보 유출신고시스템 (brss.pipc.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보호나라 (boho.or.kr)	보호나라 + 불법스팸대응센터	불법스팸대응센터 (spam.kisa.or.kr)
(접점 안내 창구)	118 상담센터 (24시간, 365일 → 필요시 각종 신고센터 안내)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 및 사이버보안 관련 신고·접수 처리체계는 시스템 운영상 분절되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5]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접수될 수 있고, 개인정보 침해신고 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상담·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6]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경우 법령상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한 신고가 가능함에도, 실제 시스템 운영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신고시스템(brss.pipc.go.kr)을 통해 접수를 전담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유출신고를 직접 접수·분류하거나 시스템상 연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신고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신고창구에 개인정보 관련 사고를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안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유출신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다시 신고하도록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고 초기에는 유출 여부, 침해 여부, 해킹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고, 신고자 입장에서도 소관 법령과 접수기관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에도, 현행 방식과 같이 접수기관이 해당 신고를 즉시 접수·분류·이관하지 못하고 재신고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사고 초기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신고 접수 및 대응체계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신고,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사이버보안 관련 주요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 유출신고에 대해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6)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③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존 신고 접수·상담 기반을 활용할 경우, 신고자가 사고 유형과 소관 법령을 사전에 구분하지 않더라도 우선 접수 후 분류·연계가 가능하여 신고 편의성과 초기 대응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만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유출·침해·해킹 관련 신고를 우선 접수하고, 이후 사고 유형과 소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분담·이관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7)]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 유출신고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접수·분류·연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권한과 업무처리 권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건수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고조사 및 처분 실적은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고된 유출사고의 조사 착수 여부, 미착수 사유, 처리 단계 및 장기계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163건에서 2025년 447건으로 약 2.7배 증가하였다. 특히 해킹에 따른 유출사고는 2021년 55건에서 2025년 276건으로 약 5배 증가하여,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규모와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7) 한편,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있어, 민간기업에 한정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침해신고와 신고창구 등을 일원화할 경우 공공기관 관련 사이버 침해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부처 간 업무 소관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고창구의 일원화가 곧 소관 업무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접수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사건의 성격과 신고 주체에 따라 소관 부처로 분류·이첩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부처 간 업무 소관 혼선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오히려 현행과 같이 신고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이 사이버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신고 주체가 사고 성격에 따라 신고 대상 기관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접수·전파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2021~2025년 개인정보 유출사고[1] 원인별 신고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건수		**163**	**167**	**318**	**307**	**447**
유출 원인	해킹	55	51	151	171	276
	업무과실	60	67	116	91	110
	고의유출	14	13	9	5	16
	기타[2]	34	36	42	40	45

주: 1)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한 건수 기준
2) '기타' 항목에는 시스템 오류, 원인 미상 등이 포함됨

자료: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조사·처분 사례(2024~2025)」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2025년 연도별·인입경로별 개인정보 의결(처분) 건수]

(단위: 건)

의결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개인정보 의결 건수	191	161	290	222	227
유출신고 의결 건수	**55**	**84**	**166**	**101**	**109**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반면 의결이 완료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개인정보 의결 건수는 2021년 191건에서 2025년 227건으로 증가 폭이 제한적이며, 유출신고를 인입경로로 하는 처분 건수도 2021년 55건에서 2025년 109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의결 건수는 처분이 완료된 사건을 의결연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므로, 해당 연도에 접수된 유출신고 건수와 직접적으로 대응되지는 않으며, 신고 이후 조사·처분까지 일정한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출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사고조사에 착수한 건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신고 건수 중 사고조사 착수 건수, 조사 미착수 건의 주요 사유 및 사유별 건수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처분이 완료되어 공개된 사건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된 유출사고 중 실제 조사에 착수된 사건 수, 미착수 사건 수, 미착수 사유, 조사 지연 또는 장기계류 사건 현황 등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일반 정보주체가 권리침해를 호소하는 민원성 침해신고와 달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한 공식적인 사고 접수 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출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유출 규모, 유출 경위, 유출 정보의 민감도, 피해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신고 이후 조사 착수 여부와 미착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출신고 증가에 대응하여 사고조사 체계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조사 대상 선별 기준이 합리적인지, 중대한 유출사고가 지연 없이 처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5년 의결된 사고조사의 평균 조사일수가 약 24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 이전에 신고된 사건 중 상당수는 2025년까지 의결 또는 종결 등 일정한 처리 단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유출신고 건수 증가 폭에 비해 유출신고 기반 처분 건수의 증가 폭이 제한적인 점은, 일부 신고 사건이 조사에 착수되지 않았거나 조사·처분 단계에서 장기간 계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건에 대하여 신고 접수 이후 조사 착수 여부, 미착수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출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회의 예·결산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고조사 대응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1-3. 개인정보 사고조사 처리 장기화에 따른 조사역량 및 사고조사 처리체계 개선 필요

가. 현 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기능개발·운영 등 사고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사업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개인정보 사고조사는 신고 접수 이후 처분까지의 소요일이 전반적으로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조사 착수 전 대기와 착수 이후 처분까지의 조사·심의 단계에서 지연이 누적되고 있는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건유형별 지연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고조사 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에 대한 사고조사는 일반적으로 신고 접수 이후 조사 착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등 조사 수행, 조사결과 확인, 위원회 의결 및 처분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조사 절차]

① 접수 및 검토	⇒	② 사고조사 착수	⇒	사실조사	⇒	③ 사고조사 완료	⇒	사전 통지	⇒	④ 의결(처분)	⇒	⑤ 고지서 송달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검토		사고 조사 착수		자료제출 요구, 기술조사, 현장조사		사고조사 결과보고		피심인에 사전통지서 송부 및 의견수렴		위원회 의결		과태료· 과징금 부과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과정에서 평균 사고조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연도별 조사 소요기간 자료에 따르면, 의결이 완료된 사건의 평균 조사기간은 최근 5년간 대체로 200일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특히 2023년에는 약 292일에 달하는 등 사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처분 건수 및 조사 소요기간]

(단위: 건, 일)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신고 건수[1)] (유출신고 한정)	163	167	318	307	447
처분 건수[2)]	301	161	303	337	227
평균 조사기간[3)]	**216.3**	**195.7**	**291.9**	**259.4**	**239.4**

주: 1) 신고 건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한 건수의 연간 집계치이며, 처분 건수는 유출·침해 신고, 공익제보, 기획조사, 사전실태점검 등 사고조사 전반에 대한 의결 건수를 집계한 것임

2) 연도별 처분 건수는 조사기간 통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공개 안건을 포함하여 제공한 수치로, 공개 의결 건에 한정하여 별도로 분석한 연도별 처분 건수와 차이가 있음

3) 평균 조사기간은 의결이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평균 조사기간(조사 착수→조사 완료)을 산정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다만 해당 자료는 의결이 완료된 사건에 한하여 조사 착수일부터 조사 완료일까지의 평균 조사기간을 연도별로 집계한 것이므로, 신고 접수 이후 조사 착수까지의 대기기간, 조사 완료 이후 처분까지의 심의·의결기간, 처분 이후 부과까지의 행정처리기간 등 사고조사 전 과정의 지연 구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보다 구체적인 사고조사 처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 유형, 조사 착수 및 처분 일시, 조사 참여 인력, 유출 규모 등 사건별 사고조사 과정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제공한 자료는 의결이 완료된 사건의 의결일자와 처분 결과 중심의 자료에 한정되어, 신고 접수 이후 조사 착수까지의 대기기간, 조사 진행 단계별 소요기간, 장기계류 사건 현황, 조사 참여 인력 등 사고조사 처리체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결서, 공식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2020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의결이 완료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에 대한 사고조사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사건별 의결일 및 고지서 부과일 자료를 활용하여, 의결일을 기준으로 연도별 사고조사 소요 현황을 구분하였다.

[분석 대상 개요]

구분	내용
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공개 의결서 ◆ 공식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분석 기간	◆ 2020년 11월 ~ 2026년 4월 (의결 완료 기준)
분석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이 완료된 사건에 한정하여 분석
연도 구분 기준	◆ 의결일 또는 행정처분 완료일 기준
주요 분석 항목	◆ 신고일, 조사 착수일, 조사 완료일, 의결일, 고지서 부과일, 인입경로, 기관유형, 유출규모, 사고유형 등

주: 사건별 주요 일자는 공개 의결서, 보도자료,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축하였으며, 일부 사건은 신고일, 조사 착수일, 조사 완료일 등 마스킹 처리로 인하여 특정 구간의 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구간별 분석 대상 건수가 상이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구축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의결이 완료된 사건 중 각 구간별 주요 일자 정보가 확인 가능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에서 처분(의결)까지의 평균 소요일은 기획조사 및 사전 실태점검 사건을 제외[8]한 기준으로 490.6일(중위값 443.0일), 과징금 부과일까지 포함할 경우 520.2일(중위값 483.0일)로 나타났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신고에서 조사 착수까지 평균 90.1일, 조사 착수에서 조사 완료까지 평균 197.0일, 조사 완료에서 처분까지 평균 174.7일, 처분에서 과징금 부과까지 평균 39.1일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조사 착수에서 의결까지의 평균 소요일이 378.3일(중위값 319.5일)에 달하는 등 사고조사 절차 전반에 걸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8) 한편, 기획조사 및 사전실태점검은 특정 이슈 또는 분야를 대상으로 복수 사업자를 일괄 조사·처분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1~2023년 일부 기획조사는 1명의 조사관이 복수 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착수하여, 적게는 2개 기관, 많게는 37개 기관을 동시에 처리하였고, 조사 착수일부터 조사 완료일까지의 기간도 3~4일 수준인 사례가 확인된다.
이러한 사건을 포함할 경우 일반적인 유출신고 사건의 조사 소요기간이 과소평가될 수 있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전체 기준과 함께 기획조사 및 사전 실태점검을 제외한 기준을 병행하여 제시하였다.

(단위: 건, 일)

의결연도	건수	평균	중위	최소	최대
2021	57	24.6	3.0	2.0	600.0
2022	1	2.0	2.0	2.0	2.0
2023	23	162.7	14.0	1.0	530.0

주: 2024~2025년 기획조사 건의 경우 의결서상 조사 착수일 및 완료일이 마스킹 처리되어 있어 소요일수 통계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개인정보 사고조사 구간별 소요 일수]

(단위: 건, 일)

구간	전체			기획·실태점검 제외		
	건수	평균	중위	건수	평균	중위
①신고→②착수	321	89.9	27.0	310	90.1	25.0
②착수→③완료	**403**	**170.2**	**102.0**	**322**	**197.0**	**125.0**
②착수→④처분	409	348.4	272.0	328	378.3	319.5
④처분→⑤부과	556	42.8	37.0	480	39.1	35.0
①신고→④처분	**444**	**484.1**	**438.0**	**431**	**490.6**	**443.0**
①신고→⑤부과	**396**	**513.2**	**476.5**	**385**	**520.2**	**483.0**

주: 1. 분석 대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의 의결 완료 사건 중 각 구간별 주요 일자가 확인 가능한 사건이며, 구간별 확인 가능 건수의 차이로 인해 분석 대상 건수가 상이할 수 있음

2. '기획·실태점검 제외'는 전체 의결 사건에서 기획조사 및 사전 실태점검에 따른 사건을 제외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신고·제보 등에 기반한 사고조사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임

3. 각 구간은 신고일·조사 착수일·조사 완료일(또는 사전통지일)·처분(의결)일·과징금 부과일을 기준으로 산정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

[개인정보 사고조사 구간별 평균 소요 일수]

(단위: 일)

구간	①신고	②조사 착수	③조사 완료	④처분(의결)	⑤부과
①신고→②착수	←-------- 90.1 --------→				
②착수→③완료		←-------- 197.0 -------→			
③완료→④처분			←-------- 174.7 -------→		
④처분→⑤부과				←-------- 39.1 --------→	
②착수→④처분		←---------- 378.3 ----------→			
①신고→④처분	←---------- 490.6 ----------→				
①신고→⑤부과	←---------- 520.2 ----------→				

주: 1. 분석 대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의 의결 완료 사건 중 각 구간별 주요 일자가 확인 가능한 사건이며, 구간별 확인 가능 건수의 차이로 인해 분석 대상 건수가 상이할 수 있음

2. 전체 의결 사건에서 기획조사 및 사전 실태점검에 따른 사건을 제외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신고·제보 등에 기반한 사고조사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임

3. 각 구간은 신고일·조사 착수일·조사 완료일(또는 사전통지)·처분(의결)일·과징금 부과일을 기준으로 산정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

연도별 추이를 보더라도 사고조사 처리 장기화 경향은 확인된다. 전체 사건 기준 신고에서 처분까지의 평균 소요일은 2021년 349.3일에서 2024년 589.1일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도 505.3일로 여전히 1년 이상 소요되었다. 기획·실태점검을 제외한 경우에도 2021년 357.7일에서 2024년 589.1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도 508.2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사고조사(신고→처분) 소요기간 연도별 추이(2021~2025)]

(단위: 건, 일)

의결연도	전체			기획·실태점검 제외		
	건수	평균	중위	건수	평균	중위
2021	75	349.3	321.0	69	357.7	327.0
2022	73	440.5	389.0	72	436.8	388.5
2023	93	511.3	491.0	88	528.3	506.5
2024	72	589.1	521.5	72	589.1	521.5
2025	102	505.3	439.5	101	508.2	440.0

주: 1. 분석 대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의결 완료 사건 중 신고일·조사 착수일·조사 완료일·처분일·부과일 등 주요 일자 확인이 가능한 사건임.
2. 의결연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의결이 이루어진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소요일수는 신고일부터 처분(의결)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것임.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

특히 최근에는 조사 착수 전 대기기간 장기화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실태점검 제외 기준으로 신고 후 조사 착수까지 180일 이상 소요된 사건은 58건으로, 신고일과 조사착수일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310건 중 18.7%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2023년 17건, 2024년 21건이 집중되어 최근 의결 사건에서 착수 지연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신고 후 7일 이내 착수한 사건의 비율은 2021년 27.1%에서 2025년 12.3%로 하락하였다.

[개인정보 사고조사 신고→착수 구간 대기 현황]

(단위: 건, 일, %)

의결연도	①신고→②착수			착수 지연 사건 (180일 이상)		즉시 착수 (7일 이내)	
	확인 가능 사건 수	소요일 평균	소요일 중위	사건 수	비율	사건 수	비율
2021	59	46.0	22.0	5	8.5	16	27.1
2022	44	81.6	46.0	5	11.4	12	27.3
2023	64	135.9	60.5	17	26.6	10	15.6
2024	63	118.6	53.0	21	33.3	15	23.8
2025	65	63.1	20.0	8	12.3	8	12.3
합계	**310**	**90.1**	**25.0**	**58**	**18.7**	**61**	**19.7**

주: 1. 분석 대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의결 완료 사건 중 신고일과 조사 착수일이 모두 확인 가능한 사건이며, 기획조사 및 사전 실태점검 사건은 제외함.
2. 의결연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의결이 이루어진 연도를 기준으로 함.
3. '착수 지연 사건'은 신고일부터 조사 착수일까지 180일 이상이 소요된 사건을, '즉시 착수'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조사가 착수된 사건을 의미하며, 비율은 각 연도별 확인 가능 사건 수 대비 해당 사건 수의 비중임.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

이와 같은 처리 장기화는 단순히 사고조사 건수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조정국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 관련 정원과 현원도 일정 수준 확대되어 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조사조정국 전체 현원은 2022년 말 48명에서 2026년 4월 60명으로 증가하였고, 정원 역시 같은 기간 57명에서 75명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사고조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조사관 및 조사지원 인력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9)]

[조사조정국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22. 말		2023. 말		2024. 말		2025. 말		2026. 4.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57	48	56	51	57	52	71	52	75	60
조사인력[1)]	43	34	42	37	42	37	48	38	51	39
(조사관)	(31)	(23)	(31)	(25)	(31)	(28)	(37)	(27)	(37)	(29)
조사총괄과	16	13	15	14	15	15	16	14	16	12
조사1과	11	8	11	10	11	10	13	9	13	11
조사2과	9	8	9	8	9	6	11	9	14	11
조사3팀	7	5	7	5	7	6	8	6	8	5
침해평가과	7	6	7	7	7	8	7	6	7	6
분쟁조정과	7	8	7	7	8	7	9	8	9	8
사전실태점검과	-	-	-	-	-	-	7	-	8	7

주: 1) 조사 인력은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팀 소속 인력으로 실제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 및 지원하는 인력임

1. 사전실태점검과는 26. 1. 5.부터 인력 충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럼에도 신고 접수 이후 조사 착수, 조사 완료, 심의·처분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처리기간은 충분히 단축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고조사 처리 장기화의 원인이 단순한 인력 규모 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중대도에 따른 선별·우선순위 설정, 장기 대기 및 계류 사건 관리, 사건 유형별 처리 프로세스 등 조사관리 방식 전반에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대규모 유출사고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조사역량이 집중될 경우, 다른 일반 사건의 조사 착수와 처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자원 배분 기준과 사건관리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9) 한편, 개인정보 사고조사에서 기술조사를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관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6명 수준으로 별도 투입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 확산 방지,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행위 확인, 재발방지 조치 및 행정제재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권리구제 절차이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조사 결과가 확정되고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시의성 있는 행정 대응이 어려워지고 정보주체의 피해구제와 예방 효과도 약화될 수 있다.

다만 사고조사의 실효성은 사회적 파장이 큰 일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만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유출사고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사고인 SK텔레콤 및 쿠팡 사고의 경우 착수부터 처분까지 최소 127일에서 최대 201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 조사를 완료하고 처분에 이르도록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사건 처리 기간]

구분	②착수→④처분 소요일	투입인력(조사관)	유출 규모
SK텔레콤	**127일**	4인	2,324만건
쿠팡 (유출조사)	**201일**	4인	3,756만건
쿠팡 (침해조사)	**154일**	4인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SK텔레콤 유출사고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4명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기술지원 인력 7명 등을 포함한 총 14명 규모의 집중조사 TF가 구성되어 조사에 착수하였고, 사고조사는 약 3개월 만에 완료되었으며 처분 절차까지도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되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4명과 KISA 기술지원 인력 7명 등 총 14명의 조사 인력이 투입되었다.

이와 같이 조사관과 KISA의 기술지원 인력 상당수가 중대사건 대응에 집중될 경우, 그 외 다른 유출·침해 사건의 조사 착수 및 처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고조사 대응 및 프로세스의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고조사 처리 단계별 소요기간과 장기계류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출 규모, 정보의 민감도 등 사안의 중대성 및 처리 난이도에 따라 우선순위와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특정 사건에 조사역량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자원 배분과 업무운영 기준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1-4. 개인정보 유출 반복사고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체계 마련 필요

가. 현 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기능개발·운영 등 사고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사업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에서 동일 기관의 반복사고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 사고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충분한 재발방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하고, 반복사고 여부가 처분 및 양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제재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동일·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가진다. 따라서 동일 기관에서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기존 처분과 시정조치가 충분한 재발방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 등을 바탕으로 반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반복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47개 기관이며, 반복사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28건으로 나타났다.

[반복사고 기관 현황]

구분	수치
반복사고 해당 사건 수	128건
반복사고 기관	47개
7건 반복	1개
5건 반복	4개
4건 반복	4개
3건 반복	7개
2건 반복	30개

주: 1. 동일 기관에 대한 반복사고 여부는 처분(의결)일을 기준으로 분류함
2. 긴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할 의결한 건은 제외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반복사고 기관 중에는 ㈜DD 7건, ㈜FF 5건, EE사 4건, CC시 4건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반복사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 반복사고 기관 47개 중 과징금 부과 이력이 없는 기관이 21개(44.7%)에 이르고, 반복사고 기관의 무처분율(2.3%)이 단건 기관의 무처분율(0.1%)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반복 위반 여부가 처분 및 양정 과정에서 재발방지 요소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재발 간격은 평균 372.4일, 중위값은 322일이며, 6개월 이내 재발한 사례도 25건에 이르는 등 단기간 내 재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반복사고 재발 간격 현황]

(단위: 건, 일)

구분	수치
재발 간격 건수	81
평균 재발 간격	372.4
중위 재발 간격	322.0

주: 1. 동일 기관에 대한 반복사고 여부는 처분(의결)일을 기준으로 분류함
2. 긴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할 의결한 건은 제외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재발 간격 구간 분포]

(단위: 건)

재발 간격	~3개월	3~6개월	6~12개월	1~2년	2년 이상
건수	16	9	20	22	14

주: 1. 동일 기관에 대한 반복사고 여부는 처분(의결)일을 기준으로 분류함
2. 긴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할 의결한 건은 제외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특히 반복사고임에도 이전 처분 대비 과징금·과태료 수준이 감소한 사례가 37건에 이르는 등, 반복 위반 여부가 양정 단계에서 가중요소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부의 경우, 2023년 7월 침해신고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10]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었으나, 2025년 6월에도 동일 조항 위

반으로 과태료 420만원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25년 6월 의결 사건에서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6,41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2025년 11월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기획조사에서 다시 같은 조항 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과태료 부과 없이 시정권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조치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고, 동일 조항 위반으로 실제 개인정보 유출까지 발생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복적으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에 그친 것은 제재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11)]

B공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된다. B공사는 2023년 4월 침해신고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제1항[12)]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고, 2025년 4월 유출신고 사건에서는 1,167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11월 의결된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기획조사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위반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해당 사건은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처분에 그쳤다.

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7월 의결 건은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2025년 6월 의결 건은 접근통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으로, 두 건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하나 2025년 6월 의결 건의 위반행위가 첫 과태료 부과 처분일인 2023년 7월 26일 이전부터 계속된 행위이므로 반복 위반에 따른 가중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2025년 11월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점검은 동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으로, 제63조에 따른 조사와는 법적 성격 및 조치수단이 달라 일반적인 사고조사 또는 기획조사와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12)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복사고 발생 사례(공공)]

(단위: 건)

기관명	기관분류	처분일시	인입경로	유출건수	위반사항	처분 결과
A부	공공	2023-07-26	침해신고		보호법 §29	과태료 300만원 등 시정조치
		2025-06-25 (신고일: 2023-08-14)	유출신고	6,414	舊보호법 §29	과태료 420만원 등 개선권고
A부 (집중관리시스템)		2025-11-20	기획조사		보호법 §29	시정권고
B공사	공공	2023-04-12	침해신고	2	보호법 §34①	과태료 300만원
B공사 (집중관리시스템)		2025-11-20	기획조사	-	보호법 §29	시정권고
B공사		2025-11-20 (신고일: 2025-04-25)	유출신고	1,167	보호법 §28①	시정명령
C시	공공	2023-04-12 (신고일: 2022-06-02)	유출신고	1,664	보호법 §3⑥	개선권고
		2023-07-26 (신고일: 2021-02-18)	침해신고	1,150	보호법 §24③,§34①③, §34의2①	과징금 2,000만원 과태료 600만원
		2024-09-11	기획조사	-	보호법 §29	개선권고
		2026-03-25 (신고일: 2023-11-01)	유출신고	3	보호법 §28①	시정명령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다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법 제64조의2제1항 같은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1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1차 조정 단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이나 유출 관련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더라도, 종전 처분이 과태료에 그쳤거나 위반 조항·사건 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반복적 관리 부실을 제재수준에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복사고 발생 사례(민간)]

(단위: 건)

기관명	처분일시	인입경로	유출건수	위반사항	처분 결과
㈜DD[1] (대기업, 플랫폼·온라인서비스)	2021-05-26	인지 (언론, 국회)	·	보호법 §29	과태료 300만원 등 시정명령
	2022-11-30	유출신고	14	보호법 §29	과태료 720만원
	2022-11-30	인지 (언론, 국회)	·	§21①, §39조의6①	과태료 840만원
	2024-11-27	유출신고	135,603	舊 보호법 §29, §39의4①	과징금 2억 7,800만원, 과태료 1,080만원 등 개선권고
	2024-11-27	유출신고	22,440	보호법 §29	과징금 13억 1,000만원
	2025-07-23	사전실태점검	·	위반사항 없음	개선권고
	2025-12-03	유출신고	·	·	개선권고
	2025-12-10	유출신고	·	·	개선권고
	2026-01-14	유출신고	·	·	개선권고
㈜FF (대기업, 통신·방송)	2021-05-12	침해신고	·	보호법 §21①	과태료 360만원
	2022-11-30	유출신고	1	보호법 §29	과태료 300만원
	2025-02-12 (신고일: 2023-08-04)	유출신고	1	舊법 §39의4①	과태료 390만원
	2025-02-12 (신고일: 2023-06-23)	인지 (언론, 국회)	·	舊법 §39의12②	과태료 240만원
GG사 (대기업, 통신·방송)	2020-12-09	민원신고	·	(舊)망법 §25④, §28①	과징금 1,160만원, 과태료 1,000만원
	2021-05-12	타기관이첩	·	보호법 §21①	과태료 360만원
	2022-09-28	유출신고	29,456	보호법§29	과태료 600만원
	2022-11-30	민원신고	·	보호법 §17①, §29	과태료 1,200만원
	2023-07-12	유출신고	297,117	보호법 §21①, §29, §39의4①	과징금 68억원, 과태료 2,700만원

주: 1) ㈜DD의 2025년 12월 및 2026년 1월 개선권고 3건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2026년 6월 의결된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유출사고 통지 실시 등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긴급 의결된 건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 기준으로 작성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한편, ㈜DD, EE사, ㈜FF 등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반복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사고 발생에 대한 관리 및 행정 부과체제 강화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례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반복사고는 개별 사건의 처분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제재 운영과 사후관리 체계의 실효성과 연결된다. 동일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이 발생한다면 기존 행정처분이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거나,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정명령·개선권고 이후에도 추가 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처분이 재발방지 효과를 거두었는지, 동일·유사한 위반 원인이 반복되고 있는지, 시정조치가 형식적으로 이행된 데 그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사고 기관을 별도로 식별·관리하고, 반복사고 여부가 처분 및 양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행정제재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은「개인정보보호법」제13조[1] 등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및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점검·평가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 기준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37억 1,400만원이며, 이 중 36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을 불용하였다. 또한 동 사업은 일부 사업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출연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25회계연도 기준 출연금 집행 규모는 24억 400만원 수준이다.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714	3,714	-	-	3,714	3,669	-	45	3,714	3,714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지수 예산분석관(jskim05@assembly.go.kr, 6788-4630)

1)「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1. ISMS-P 인증기관의 유출사고 발생에 따른 인증 실효성 점검 필요

가. 현 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은 주요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인증하는 제도이다.

[ISMS-P 인증제도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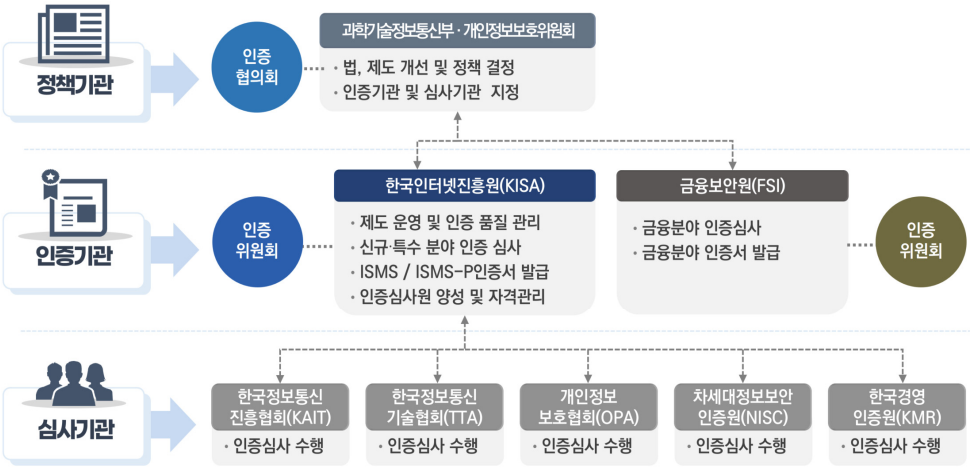

정책기관	· ISMS-P 인증제도 정책 협의, 인증·심사기관 지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증협의회*를 통해 결정 * 과기정통부·보호위원회 과장(위원), KISA 담당부서장(간사)로 구성(고시 제4조, 제5조)
인증기관	· ISMS-P 심사 결과 심의 및 인증서 발급, 인증제도 운영 및 품질관리,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 관리 등 수행 ※ KISA(법정 인증기관), 금융보안원(지정 인증기관,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인증위원회	· ISMS-P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적합성 여부 심의·의결 ※ 인증위원수(35인), 개최주기(월2회 이상)
심사기관	· ISMS-P 인증심사 수행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개인정보보호협회(OPA),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NISC), 한국경영인증원(KMR)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SMS-P 인증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법정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인증위원회 운영, 인증제도 및 기준 개선 등 인증제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증은 신청기관의 관리체계 구축·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현장심사, 보완조치,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루어진다.

ISMS-P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의 관리체계 수립·운영 및 보호대책 요구사항 등 총 80개 기준(관리체계 수립·운영 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에 더하여,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1개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 체계로서, 총 101개의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ISMS-P 인증심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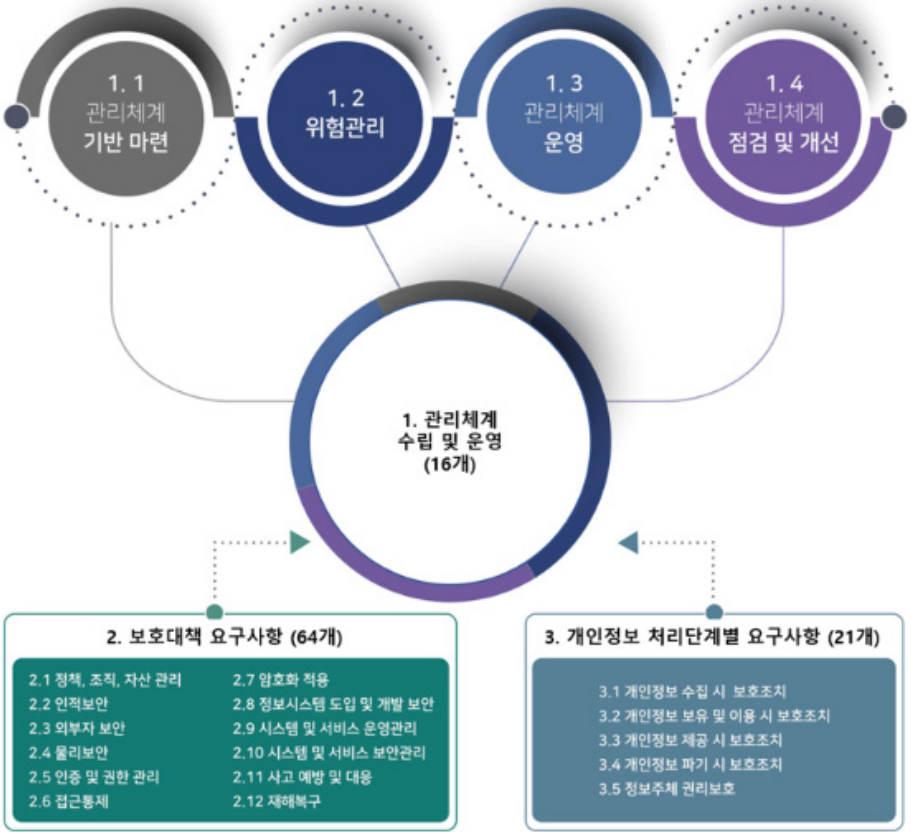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ISMS 인증 및 ISMS-P 인증의 인증기준]

항목	ISMS 인증	ISMS-P 인증 (자율선택)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O (80개)	O (101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1개)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ISMS 인증의 의무 대상은 ①「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SP),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③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교, ④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 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등이다. 반면 ISMS-P 인증은 자율 취득에 맡겨져 있어, 개인정보를 다량 처리하는 기관·기업이라 하더라도 인증 취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ISMS 인증 의무 대상]

구분	상세내용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ISP)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집적통신시설 사업자(IDC)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정보 제공자 /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①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며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③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4월 10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① 인증 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② 인증심사 방식 강화, ③ 인증 사후관리 강화, ④ 심사기

관·심사원 전문성 강화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그동안 자율 취득에 맡겨져 있던 ISMS-P 인증을 공공·민간의 중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2027년 7월부터 의무화하고, 인증 의무대상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인증 의무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ISMS-P 인증제도 주요 개편 내용]

구분	주요 개편 내용
인증 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 공공·민간 중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ISMS-P 의무화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 · 인증체계 (강화·표준·간편) 3단계 차등 적용, 강화 인증기준 20개(안) 추가 · 인증범위 확대(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반드시 포함)
인증심사 방식 강화	· 예비심사(핵심항목 先검증) → 기술심사(취약점진단·모의침투) → 본심사(현장실증) → 이행심사 4단계 재편 · 심사팀 인력·기간 확대 및 점검 자산수 확대
인증 사후관리 강화	· 상시 점검체계 확립 · 중대 침해사고 발생 시 인증심사 잠정 중단 · 사고기업에 대한 집중심사 ·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 구체화 및 취소 절차 추진
심사기관·심사원 전문성 강화	· 심사 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실시 · 심사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 최신 보안위협 상황에 맞는 기술 심사 방법 등 심사가이드 제공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2026.4.10.)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사업은 다음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ISMS-P 인증을 보유한 기관·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법 위반 처분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P 인증제도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인증 범위 설정, 인증 사후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ISMS-P 인증은 기업 또는 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주요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관리수단이다. 따라서 ISMS-P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대외적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일정 수준 이상 갖추어져 있다는 시그널을 주게 된다.

그러나 ISMS-P 인증 보유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최근 3년간 ISMS·ISMS-P 인증기업 중 179개사(약 14%)에서 침해사고가 발생[2]하였으며, 2025년 12월 기준 ISMS-P 인증을 취득한 263개 기업 중 27개사(10.3%)에서 최근 5년간 총 33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3]

실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사고조사 자료 및 ISMS-P 인증을 보유한 기관·기업 자료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개인정보 유출사고 또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예를 들어 EE사는 2024년 12월 ISMS-P 인증을 취득한 이후 2025년 약 2,324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과징금 1,347억 9,100만원 및 과태료 960만원 처분을 받았고, ㈜DD는 2021년 최초 인증 및 2024년 재인증 이후에도 수차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 QQQ, ㈜HH, UU카드, LLLL, MM㈜ 등도 ISMS-P 인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유출사고 또는 법 위반 처분 사례가 확인된다.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 2026.4.10.

3) 머니투데이 보도자료, “ISMS-P 인증받은 기업 총 263개…이중 10%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25.12.3. (https://www.mt.co.kr/tech/2025/12/03/2025120315244732144)

[ISMS-P 인증기관의 개인정보 사고조사 현황]

기관명	ISMS-P 최초인증일 (재인증)	사고 내용	처분내용
GG호텔	2019.12.11. (재인증 2022.11.17., 2025.11.19.)	유출 발생 시점: 2023.6.8. (2건 유출), 舊 보호법 §29 위반	과태료 300만원
㈜HH	2020.6.1. (재인증 2023.4.27.)	신고 시점: 2024.8.13. §28의8① 위반	과징금 59억 6,800만원 및 시정명령
JJ백화점	2021.2.17. (재인증 2024.1.18.)	신고 시점: 2021.12.15. (1건 유출), §29 위반	과태료 360만원
㈜DD	2021.3.3. (재인증 2024.3.20.)	신고 시점: 2021.11.27. (135,603건 유출)	과징금 2억 7,865만원 과태료 1,080만원
		유출 발생 시점: 2023.12.12. (22,440건 유출)	과징금 13억 1,000만원
		유출 발생 시점: 2025.6.24. (3,756만건 유출)	과징금 6,242억 8,100만원 과태료 1,680만원
㈜KK	2021.5.18. (재인증 2024.4.3.)	유출 발생 시점: 2023.3.30. (20건 유출), 보호법 §29, §39의4① 위반	과태료 660만원
LLLL	2022.3.16. (재인증 2025.4.16.)	유출 발생 시점: 2023.11.4. (749,114건 유출) §29 위반	과징금 5억 300만원 과태료 480만원
MM㈜	2022.4.20. (재인증 2025.2.19.)	(2023.7.12. 의결) §26①, §26④ 위반	과태료 100만원
		유출 발생 시점: 2023.11.14. (125,138건 유출), §29 위반	과징금 14억 3,200만원 과태료 300만원
NN건설	2022.8.3. (재인증 2025.8.21.)	(2024.7.12. 의결) 舊 보호법§34① 위반	과태료 300만원
OOO㈜	2022.10.5. (재인증 2025.10.22.)	(2024.3.27. 의결) §15① 위반	개선권고
		(2025.2.12. 의결) §21① 위반	
		(2025.6.11. 의결) §29 위반	
		(2025.7.23. 의결) 위반사항 없음	
PP건설	2022.11.2. (재인증 2024.10.1.) 2024.10.16.	(2024.3.27. 의결) 舊 보호법§34① 위반 (990건 유출)	과태료 300만원

기관명	ISMS-P 최초인증일 (재인증)	사고 내용	처분내용
QQQ	2023.2.1. (재인증 2025.12.18.)	유출 발생 시점: 2022.4.1. * 2023.6.14.의결 (13건 유출)	과태료 300만원
		신고 시점: 2023.3.10. (65,719건 유출)	과징금 151억 4,196만원 과태료 780만원
		(2025.2.12. 의결) §21① 위반	개선권고
		(2025.7.23. 의결) 위반사항 없음	개선권고
RR증권	2023.4.28. (2024.2.8.)	신고 시점: 2021.11.17. * 2023.3.22. 의결 (48,122 유출) §29 위반	과징금 9,800만원 과태료 360만원
SS원	2023.5.3.	(2023.7.26. 의결) §29 위반 (73건 유출)	과태료 300만원
		신고 시점: 2023.7.6. (236,527건 유출) §29, §24② 위반	과태료 840만원
TT컴퍼니	2023.5.17.	인지 시점: 2023.3.14. * 2025.11.26.의결 舊 보호법 §26①④ 위반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2026.2.11. 의결) §21① 위반	시정명령
UU카드	2023.12.20.	신고 시점: 2024.4.26. (75,000건 유출) §18①, §24의2①, §29 위반	과징금 134억 5,100만원 및 시정명령
EE사	2024.12.18.	유출 발생 시점: 2025.4.19. (2025.5.2. 의결) §34①, ② 위반	개선권고
		신고 시점: 2025.4.22. (23,244,649건 유출)	과징금 1,347억 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

주: ISMS-P 인증 이후 시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사고조사 건(사고 조사중)에 한하여 작성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및 의결서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사례는 인증 보유 여부만으로 실제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충분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ISMS-P 인증은 일반 국민에게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가 인증된 기업'이라는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인증 보유기업에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반복될 경우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4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통해 ISMS-P 인증 의무 대상

확대, 차등 인증체계 도입, 인증취소 사유 구체화 등 인증제 전반에 걸친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에도 불구하고 ISMS-P 인증 범위 설정 모호, 평가의 실효성 문제, 심사기관의 객관성 등 현행 인증제도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의무화 시행 이전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 보완이 요구된다.

① 개인정보보호 인증 범위 설정 기준 구체화 필요

현행 ISMS-P 인증은 기관 전체가 아니라 인증 신청기관이 설정한 서비스 또는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심사·인증되는 구조이므로, 동일 기업 내에서도 일부 서비스나 시스템만 인증 범위에 포함되고 핵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탁·연계 구간, 물리적 인프라, 인증·식별 시스템 등은 인증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외부적으로는 'ISMS-P 인증 기업'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인증의 효력은 일부 서비스나 시스템에 한정될 수 있다.

실제 제출자료상 인증 범위를 보면 일부 기업은 '면세서비스 운영', '온라인 고객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이동전화 고객관리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 단위로 인증을 받았으며, 일부 인증 범위에는 '심사받지 않은 물리적 인프라 제외'와 같은 단서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 이용자가 이러한 인증 범위와 제외 영역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인증 표시가 기업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보증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4)]

4) 과기정통부·보호위원회는 4월 발표를 통해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는 접점 자산은 인증범위 내 반드시 포함'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강화 인증기준 및 인증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내용이 없으며 2027년 고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ISMS-P 인증기관의 인증범위]

기관명	ISMS-P 최초인증일 (재인증)	인증 범위
GG호텔	2019.12.11. (재인증 2022.11.17., 2025.11.19.)	◆ 온·오프라인 면세서비스 운영
㈜HH	2020.6.1. (재인증 2023.4.27.)	◆ ㈜HH 서비스 운영
JJ백화점	2021.2.17. (재인증 2024.1.18.), 2025.2.19.	◆ JJ백화점 온라인 서비스(백화점, 아울렛, Point, TCP, 백화점 카드, 문화센터, 어린이책미술관),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해외 브랜드 서비스
㈜DD	2021.3.3. (재인증 2024.3.20.)	◆ DD 서비스
㈜KK	2021.5.18. (재인증 2024.4.3.)	◆ 온라인 여행플랫폼 서비스
LLLL	2022.3.16. (재인증 2025.4.16.)	◆ LLLL 포탈 서비스
MM㈜	2022.4.20. (재인증 2025.2.19.)	◆ MM커머스 서비스
NN건설	2022.8.3. (재인증 2025.8.21.)	◆ 분양(XXXX) 및 임대 (XXXX) 시스템 운영
OOO㈜	2022.10.5. (재인증 2025.10.22.)	◆ OOO 서비스 운영(고객센터, 비즈니스, OOO인증서 및 전자문서 포함) 및 이용자(B2C, B2B) 개인정보 관리 (심사받지 않은 물리적 인프라 제외)
PP건설	2022.11.2. (재인증 2024.10.1.) 2024.10.16.	◆ XX 및 XX XXXX 대고객(온라인 회원) 서비스 ◆ XXXX XX/XX 리조트 서비스 운영
QQQ	2023.2.1. (재인증 2025.12.18.)	◆ QQQ 서비스 운영
RR증권	2023.4.28. (2024.2.8.)	◆ 전자금융서비스(트레이딩, 뱅킹, 금융상품, 연금, 종합자산관리, 투자정보)(심사받지 않은 물리적 인프라 제외)
SS원	2023.5.3.	◆ XXXX분석시스템
TT컴퍼니	2023.5.17.	◆ 온라인 고객서비스 운영(웹페이지, 모바일 앱)
UU카드	2023.12.20.	◆ 카드서비스 운영
EE사	2024.12.18.	◆ 이동전화 고객관리 서비스

주: ISMS-P 인증 이후 개인정보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었던 기업에 한하여 작성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사고·처분 이력과 인증 사후관리 간 연계 강화 필요

ISMS-P 인증 보유 기업에서 대규모 유출사고나 반복적 법 위반 처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인증 무효 및 취소사례가 전무하며, 재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고·처분 이력이 인증 사후관리 및 재인증심사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4월 발표한 인증 강화방안은 인증기업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확립 및 사고이력 관리, 중대 침해사고 발생 시 인증심사 잠정 중단, 인증취소 사유 구체화 및 취소 절차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방안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어, 사고·처분 이력이 인증제도에 실효적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5)]

먼저 강화 방안은 KISA가 인증 보유 기업의 사고·처분 이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정보공유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 유출사고의 조사·처분은 법령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권 사고는 금융당국, 공공기관 사고는 국정원·행정안전부 보고체계로 분산되어 있어 KISA가 인증기업의 사고·처분 이력을 포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공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인증취소 사유 구체화 및 중대결함 보완 미조치 시 인증취소는 어디까지나 '보완 미조치 시 취소'라는 조건부 구조에 머물러 있다. 즉, 중대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사후 보완조치를 이행하면 인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이나 행정처분 의결 자체를 인증 효력의 정지·취소와 직접 연계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인 법 위반 처분을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보완조치 이행만으로 인증을 유지하거나 단기간 내에 재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인증취소 이후 재인증 제한 기간, 반복 사고 기업에 대한 가중 페널티, 취소 사실의 공시 등 실효적 제재 장치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인증제도의 사후관리 기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 ISMS-P 인증 보유가 과징금 감경 사유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인증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사전 예방 수단이 아니라 사후 제재 완화 수단으로

---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행정처분 의결 시 ISMS-P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증취소 사유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2026년 하반기 고시 개정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다.[6] 4월 발표한 인증 강화방안에서 2027년부터 ISMS-P 의무화 대상에 한해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있으나, 의무화 대상이 아닌 일반 인증 보유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경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인증 보유에 따른 과징금 감경 적용 범위와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심사기관의 객관성 및 심사 품질관리 강화 필요

ISMS-P 인증의 신뢰성은 인증기준의 내용뿐 아니라 심사기관과 심사원의 전문성·객관성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현행 구조에서는 심사기관이 신청기관으로부터 심사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심사기관과 신청기관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7]

4월 발표한 인증 강화방안은 심사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를 차년도 심사 배분에 반영하고, 부실심사 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심사기관 배정 구조와 장기 반복 심사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인증서 발급 여부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및 보안 취약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 검증이 불가하다. 따라서 ISMS-P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증기준의 강화와 함께 심사기관의 객관성·독립성을 제고하고, 심사 품질관리 체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ISMS-P 인증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외적으로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임에도, 인증 보유 기관·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법 위반 처분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현행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

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위반 기업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ISMS-P 포함)을 받은 경우 1차 조정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UU카드는 ISMS-P 인증 보유(인증 범위: 카드 서비스 운영)를 사유로 2025년 3월 26일 의결에서 1차 조정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약 130억원을 감경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7) 현행 심사기관 5곳 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개인정보보호협회(OPA)는 비영리 협회이나,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NISC)과 한국경영인증원(KMR)은 영리 목적의 주식회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시 제10조 등에 따라 심사기관의 컨설팅 업무 수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금지사항의 준수 여부를 매년 점검·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P 인증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에 앞서 인증 범위가 실제 개인정보 처리위험을 충분히 포괄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고·처분 이력이 인증 유지·갱신·취소 및 과징금 감경 기준에 실효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 지정은 해당 기관·시스템이 다량의 민감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함에 따라 강화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추진 중인 공공부문 ISMS-P 인증 의무화의 이행 일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집중관리시스템 지정과 ISMS-P 인증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 기관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P 인증제도와 별도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보유한 시스템 등을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8]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스템이 일반적인 공공부문 정보처리시스템보다 유출·오남용 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에 따라 강화된 안전성 확보조치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ISMS-P 인증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매출액·이용자 수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사업자를 주된 의무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집중관리시스템 387개를 ISMS-P 인증 의무 대상에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2027년 1단계로 81개 시스템을 지정하여 2026년 하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집중관리시스템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은 2024년(57개 기관, 382개 시스템) → 2025년(58개 기관, 387개 시스템)으로 확대되었다. 집중관리시스템 대상 조건은 ①보유량 100만명 이상 ②취급자 수 200명 이상 ③사업비 100억 ④주민등록정보 연계 ⑤민감정보 처리 등이며, 구체적인 관리 목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현행 ISMS-P 인증·집중관리시스템 지정 현황 분류]

구분	집중관리 시스템 지정	ISMS-P 인증 보유	해당 기관
모두 보유	○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립암센터,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공항공사 등
집중관리만 지정	○	×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연금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이중 사각지대	×	×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ISMS-P 인증기업 현황)와 집중관리 대상 공공시스템 목록을 대조하여 작성.
디지털타임즈, "민감정보 쌓인 국민연금·LH, 정보보호 인증 '셀프 패스'"참고.

그러나 1단계 대상은 전체 집중관리시스템 387개의 약 20.9%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스템에 대한 2~3단계 적용 일정과 대상 범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공공기관은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건강·복지정보 등 정보주체가 제공을 거부하기 어려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정보는 유출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렵다. 그럼에도 공공부문 ISMS-P 인증 의무화가 장기간 단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정된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외부 인증·검증 공백이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 중 일부는 집중관리시스템 지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ISMS-P 인증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수능 성적, 주택보증, 주택금융·주택담보대출 정보 등은 유출될 경우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임에도, 집중관리시스템 지정과 ISMS-P 인증 어느 체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고위험 개인정보처리기관에 대한 제도적 검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ISMS-P 인증 의무화와 관련하여 1단계 대상 지정에 이어 2~3단계 적용 일정과 대상 범위를 조속히 구체화하여 공표하고,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규모와 민감성을 고려하여 의무화 이행 속도를 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다량의 민감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도 어느 보호체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 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관리시스템 지정 기준을 재점검하여 보호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9]

한편,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는 ① 고위험 시스템을 식별·관리하는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 지정, ②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등급화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10], ③ 관리체계의 적합성을 외부 검증하는 ISMS-P 인증 등 세 가지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제도가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고위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조치 요구 수준과 검증 결과가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세 제도가 동일한 위험기준 위에서 정합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집중관리시스템 점검 결과, 수준평가 등급, ISMS-P 인증 결과를 상호 공유·환류함으로써 한 제도에서 확인된 결함이 다른 제도의 사후관리에 반영되도록 하고, 수준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ISMS-P 인증 심사 시 가중심사를 적용하는 등 제도 간 점검 결과가 실질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각 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되 그 결과가 서로 환류되는 구조를 갖춤으로써, 보호조치 점검과 인증의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은 줄이고 제도 간 공백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집중관리시스템 387개를 ISMS-P 인증 의무 대상에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ISMS-P 인증 의무 대상 및 인증 범위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 인증 의무화를 단기간에 전면 시행할 경우 인증심사 수요 급증 등으로 심사 과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0) 동 평가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분석 의견은 다음 절(2-2.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체계 및 컨설팅 운영방식 개선 필요)에서 별도로 제시한다.

2-2.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체계 및 컨설팅 운영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2[11]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법령상 의무 준수 여부 등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2025년 평가의 경우 총 1,4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40개와 정성지표 7개 등 총 47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714	3,714	-	-	3,714	3,669	-	45	3,714	3,714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2,474	2,474	-	-	2,474	2,457	-	17	2,474	2,474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1,114**	**1,114**	**-**	**-**	**1,114**	**1,097**	**-**	**17**	**1,114**	**1,114**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분석의견

첫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보다 자체평가와 서면 증빙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유출사고·시정명령·개선권고 이력이 있는 기관이 S·A등급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기관에 대한 차등평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보호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바, 평가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동 평가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법령상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25년의 경우 총 1,4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40개와 정성지표 7개 등 총 47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S·A·B·C·D의 5개 등급을 부여하였다.[12)]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기관	총 1,442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대상기간	2025. 1. 1. ~ 2025. 12. 31.
평가지표	총 47개 평가지표 ① 정량지표: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자체평가 40개 지표 ② 정성지표: 업무수행의 적정성·충실성 등 심층평가 7개 지표 ※ 기타지표(가점 및 개선조치 지표 포함) -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리스크 관리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의 적절성 및 재발방지 노력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건·사고 대응의 적절성 및 재발방지 노력
평가방법	① 자체평가: 기관 자체평가 및 증빙자료 검증, 정량지표 60점 ② 심층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단 평가, 정성지표 40점 ③ 종합평가: 자체평가와 심층평가 점수에 가·감점 적용
평가방법	(가점)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리스크 관리: +10점

12) 동 평가제도는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하는 기능을 넘어, 그 결과가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구분	주요 내용
	(감점) ①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건당 최대 △10점 ② 유출이 아닌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 발생: 건당 최대 △10점 ③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시정권고·개선권고 등: 건당 최대 △3점 ④ 제출자료 거짓·허위: 건당 최대 △2점 ⑤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절차 미준수: 최대 △5점 ⑥ 전년도 보호수준 평가 관련 개선권고 미이행: 최대 △20점 ※ ①·②의 경우 대응조치에 따라 최대 50% 조정 가능 ※ ①·②의 경우 발생일 기준, ③은 의결일 기준으로 함
평가결과 공개	5등급(S/A/B/C/D) - S(90점 이상), A(90점 미만 ~ 80점 이상), B(80점 미만 ~ 70점 이상) C(70점 미만 ~ 60점 이상), D(60점 미만)

주: 2023년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으로 운영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로 개편되어 평가 범위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 수행까지 확대되었으며, 평가 대상도 약 800개 기관에서 1,442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자료: 2025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편람

그러나 평가결과, 개인정보 유출사고, 행정제재 또는 개선권고 이력이 있는 기관이 동일 평가년도에 S등급 또는 A등급을 부여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V공단은 2024년 9월 유출신고 이력이 있고 2025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위반으로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2024년·2025년 모두 S등급을 부여받았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2024년 9월 동법 제29조 위반으로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2024년·2025년 연속 S등급을 받았다.

특히, SS원의 경우 2023년 73건 및 2024년 236,527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음에도 2024년·2025년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그 밖에도 BB정보원, CC평가원, HH공단, PP공단, QQ개발원 등 2025년 집중관리시스템[13] 기획조사 결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집중관리시스템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은 2024년(57개 기관, 382개 시스템) → 2025년(58개 기관, 387개 시스템)으로 확대되었다. 집중관리시스템 대상 조건은 ①보유량 100만명 이상 ②취급자 수 200명 이상 ③사업비 100억 ④주민등록정보 연계 ⑤민감정보 처리 등이며, 구체적인 관리목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한편, 2026년 감사원 감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시스템들이 외부 해킹에 취약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사원은 개인정보위에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외부 해킹에 대비한 보안취약점 분석, 평가를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및 법 위반 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급]

기관명	유출·처분 이력	처분내용	보호수준 평가 등급
B부	(2024.1 의결) 기획조사	개선권고	2023년 A등급 2024년 S등급 2025년 S등급
V공단	(2024.9 의결) 9건 유출 * 유출일: 2023.10.	개선권고	2023년 A등급 2024년 S등급 2025년 S등급
	(2025.11 의결) 보호법 §29 위반	시정권고	
WW사	(2023.7 의결) 유출, 329명 * 유출일: 2022.04.	과징금 1,625만원	2023년 A등급 2024년 A등급 2025년 S등급
	(2024.4 의결) 보호법 §28의4②, §28① 위반 * 신고일: 2021.03.	과태료 100만원	
SS원	(2023.7 의결) 73건 유출	과태료 300만원	2023년 B등급 2024년 A등급 2025년 A등급
	(2024.1) 236,527건 유출 * 신고일: 2023.7.6.	과태료 840만원	
YY진흥원	(2024.2 의결) 1,168건 유출	과태료 120만원	2023년 A등급 2024년 A등급 2025년 A등급
ZZ발전	(2023.7의결) 1,952건 유출	과태료 900만원	2023년 A등급 2024년 A등급 2025년 S등급
B공사	2023.4. 유출 및 2025.11. 유출, 1,167명 등	과태료 300만원	2023년 A등급 2024년 A등급 2025년 B등급
C시	(2023.4 의결) 1,664건 유출 * 신고일: 2022.6.	개선권고	2023년 C등급 2024년 A등급 2025년 A등급
	(2023.7 의결) 1,150건 유출 * 신고일: 2021.2.	과징금 2,000만원 과태료 600만원	
	(2024.9 의결) 보호법 §29 위반	개선권고	
	(2026.3) 3건 유출 * 신고일: 2023.11.	시정명령	
UU공사	(2023.5 의결) 보호법 §29 위반	과태료 360만원	2023년 A등급 2024년 B등급 2025년 A등급
	(2026.3 의결) 21건 유출	시정명령	
HH원	(2024.9 의결) 보호법 §29 위반	개선권고	2023년 A등급 2024년 S등급 2025년 S등급

주: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및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는 발생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은 의결일 기준으로 반영하며, 사고·사건은 대응조치 수준에 따라 감점을 최대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① 평가체계의 구조적 한계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현행 평가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현행 평가는 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량지표(60점)를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가 정성지표(40점)를 서면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1,443개 다수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행정적 효율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자체평가 비중이 60점으로 크게 설정되어 있고 외부 검증도 주로 서면 자료의 적합성 확인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현장점검을 통해 서류상 관리체계와 실제 시스템 운영 간 괴리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보호조치 수준보다 제출자료의 충실성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그 결과 평가가 '보호조치가 실제 작동하는지'보다 '보호조치 관련 서류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② 고위험·대규모 처리기관에 대한 차등화 미흡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차등화된 평가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 또한 주요 문제점으로 보인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건강·금융·복지 등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는 기관과 상대적으로 처리 규모가 작은 기관이 동일한 47개 지표·동일한 배점 구조 하에서 평가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기관일수록 일정 수준의 관리체계·내부통제·교육·점검 절차를 이미 갖추고 있을 개연성이 높고, 이는 정량지표상 높은 점수로 자연스럽게 반영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체계 마련이 곧 실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대규모 처리기관일수록 시스템 규모, 위탁사슬, 접근권한자의 수, 외부 연계 범위 등이 복잡하여 실제 위험노출도는 훨씬 크고, 한 건의 사고가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기관들이 유출사고나 행정제재 이력이 있음에도 S·A등급을 받고 있는 현상은, 현행 평가가 기관 규모와 위험에 비례한 보호수준의 실질을 변별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형식적 관리체계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평

가가 유출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고위험·대규모 처리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평가체계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 계획을 확정하며 '유출사고 및 부실 대응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14]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점 기준의 상향만으로 평가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기초점수가 자체평가 및 서면 증빙 중심으로 형성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사후적 감점 강화는 평가의 근본적 변별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사고 후 대응조치에 따라 감점이 최대 50%까지 완화될 수 있는 현행 구조에서는 대규모·반복 유출 기관도 우수등급 진입이 여전히 가능하며, 유출 규모·민감도·반복성·처분의 중대성이 차등화되지 않은 채 동일한 감점이 부과되는 구조에서는 사고의 질적 차이가 평가에 반영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관과 일반 기관을 동일한 평가구조 안에서 다루는 한, 감점 상한을 조정하더라도 기관 간 위험 수준의 실질적 차이는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체평가·서면 검증 중심의 구조를 보완하여,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기관 및 집중관리시스템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점검의 비중을 확대하고, 서류상 관리체계와 실제 시스템 운영 간의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 검증의 깊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차등화된 평가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유·처리 개인정보의 규모, 민감정보 포함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고위험군을 식별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평가지표 또는 평가절차(예: 심층 현장점검, 모의해킹·취약점 점검 결과 반영의 의무화 등)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감점 상한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하고, 사고 발생 이후 사후 대응조치가 미흡한 경우 최대 5점의 추가 감점을 부여하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하였다. 또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 및 대응 노력」 지표를 신설하고, 모의해킹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 실적 등을 정성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 컨설팅은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보호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호조치의 개선보다는 차년도 평가 대응이나 평가결과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될 우려가 있는바, 컨설팅의 운영방식을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 중심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흡기관 컨설팅은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점검, 암호화, 위탁업무 관리,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파기, 사고대응체계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 미흡기관 컨설팅은 기관당 반나절 또는 1일 내외로 운영되는 만큼, 실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기술적·관리적 취약점을 심층적으로 진단·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컨설팅은 자연스럽게 평가항목별 대응방안, 제출자료 보완사항, 평가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평가점수는 향상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이나 사고 예방 역량이 함께 개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가가 실제 보호조치의 실효성보다는 관리체계 및 증빙자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가 컨설팅 단계에서도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컨설팅 운영방식을 기관별 위험도에 기반한 취약점 진단과 개선조치 이행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기관, 반복적 유출사고 발생기관, 행정제재 또는 개선권고 이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컨설팅과 차별화하여 현장점검, 시스템 운영실태 검증, 개선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포함하는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선권고 이행 결과를 차년도 평가 및 사후점검과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컨설팅이 단순한 평가 대응 절차가 아니라 실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마이데이터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방식으로 전송·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마이데이터 제도의 핵심 기반이다.

제35조의2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의4는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현황, 활용내역, 관리실태 등을 관리·감독하고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송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관계부처 협의, 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의 예산은 60억 4,500만원이며, 이 중 59억 7,800만원이 집행되고 6,700만원이 불용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사업의 예산은 60억 5,0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다.

[2025회계연도 마이데이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6,045	6,045	-	-	6,045	5,978	-	67	6,176	6,176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6,050	6,050	-	-	6,050	6,050	-	-	5,364	5,364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지수 예산분석관(jskim05@assembly.go.kr, 6788-46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사업으로 구분된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은 정보주체의 전송이력 확인, 전송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사업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선도서비스 발굴·지원, 중계 인프라 실증·운영지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확인 등 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고도화 및 참여기관 관리기능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2차년도)과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으로 구성된다. 이 중 플랫폼 구축 사업은 38억 3,200만원 규모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플랫폼 운영 사업은 22억 1,300만원 규모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기능 고도화, 참여기관 관리기능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플랫폼 운영 사업은 정보주체 및 참여기관의 원활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유지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사업은 2025년도 예산 60억 5,000만원 전액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동 사업은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과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으로 구성되며, 데이터 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연구, 마이데이터 서비스지원사업, 중계 인프라 실증 및 운영지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일반수신자 등록 확인 등 제도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5년도 마이데이터 사업 구조 및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역사업	세부사업	사업내용	예산액	수행방식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플랫폼 구축 (2차년도)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기능 고도화	3,832	직접수행
		플랫폼 운영	플랫폼 운영·유지관리	2,213	KISA 출연
	소계			6,045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데이터 형식 표준화 연구	기 표준화 업종 고도화	100	KISA 출연
		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연구	전송규격 개정, 보안·인증체계 고도화	100	KISA 출연
		중계 인프라 실증 및 지원	실증서비스 지원(1,470) 중계전문기관 운영지원(1,000)	2,470	KISA 출연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발굴·상용화 지원 (5식×400)	2,000	KISA 출연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제도·정책 연구	안전한 활용 제도연구(300) 전송과금·보상체계 연구(300)	600	KISA 출연
		제도 운영	전문기관 지정·확인 심사(500) 지정심사 제도운영(280)	780	KISA 출연
	소계			6,050	
합계				12,095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통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1. 마이데이터 10대 중점분야 확산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신속 추진 필요

가. 현 황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 분야의 금융위원회, 공공 분야의 행정안전부, 의료 분야의 보건복지부, 실증서비스 분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분야별로 2019년부터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부처별 마이데이터 사업을 전 분야로 연계·확산하기 위한 범부처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와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기준 추진단은 1단 3팀, 8개 부처 파견 인력 15명[1]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분석의견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 확대를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는 당초 제시한 10대 중점분야 확산 계획 대비 늦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선도서비스도 일부 분야에 편중되고 산업 간 데이터 융합이라는 정책목표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바, 범부처 조정 기능을 활용하여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 및 후속 법령 정비를 보다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7월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의료·통신을 시작으로 에너지·교육·고용, 문화여가·복지·교통·부동산·유통 등 10대 중점분야에 대한 전송요구권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2] 2025년 10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1단계로 2025년에

1) 총 8개 부처: 개인정보위(4명), 행안부(3명), 과기부·복지부(각 2명), 금융위·재경부·교육부·고용부(각 1명)

2) 관계부처 합동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2023.8.17.)을 통해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10대 중점부문이 제시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중 의료, 통신, 에너지, 유통 분야를 우선 추진부문으로 선정('23.11.)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2024년 4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2024년 8월 9일 심의에서 유통 분야를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시행령 개정안에서 유통 분야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 우선추진 대상이었던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모두 당초 일정 대비 시행이 순연되어, 의료·통신 분야는 2025년 3월 13일에, 에너지 분야는 2026년 6월 1일에야 비로소 시행되었다.

의료·통신 분야를 시행하고, 2단계로 2026년 에너지·교육·고용 분야, 3단계로 2027년 문화여가·복지·교통·부동산·유통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적용 분야 확대는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단계 의료·통신 분야는 시행되었으나, 2단계로 예정된 에너지·교육·고용 분야 중에서는 에너지 분야만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교육·고용 등 나머지 2단계 분야와 문화여가·복지·교통·부동산·유통 등 3단계 분야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이행 경로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10대 중점분야 단계별 확대 계획 대비 추진 현황]

단계	연도	분야	추진 현황
1단계	2025	의료, 통신	시행 완료
2단계	2026	에너지	시행 완료(2026. 6. 1.)
		교육, 고용	입법예고(2026. 6. 30.)
3단계	2027	문화·여가,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시행령 정비 지연 문제는 이미 2024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3] 당시 전송 가능 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이를 전제로 편성된 전문기관 지정심사제도 운영 예산 4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고, 선도서비스 공모사업 예산 10억 6,100만원이 이월되었다.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주요 이월·불용 현황]

구분	내용	이월·불용 현황
전문기관 지정심사제도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수신 전문기관 지정 심사	4.95억원 불용
선도서비스 공모사업	선제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공모	10.61억원 이월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는 신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가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일정에 비해 지연될 경우, 재정 집행의 비효율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pp.181~184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 확대를 위한 1단계 시행 과정에서도 시행령 정비 지연은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선도서비스 공모사업은 당초 2024년 6월 공고 계획에서 2024년 8월 말 이후로 늦어졌고,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완료 시점도 2025년 2월에서 2025년 6월로 약 4개월 순연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경위]

구 분	일 자
당초 시행령(안) 입법예고	2024.5.1. ~ 6.10.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2024. 8. 9.
시행령 수정안 마련	2024. 8. 28.
법제처 심사	2024. 12.
시행령 수정안 입법예고	2024.12.16. ~ 12.23.
시행령 시행	2025. 3. 13.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처럼 1단계 분야의 제도 시행 과정에서도 이해관계 조정과 시행령 정비가 지연되어 예산 이월·불용 및 사업 일정 순연이 발생한 바 있음에도, 후속 분야 확대를 위한 시행령 및 하위 규정 정비 역시 충분히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적용 분야 확대가 지연될 경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도 의료·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25년도 선도서비스 최종 추진 과제 4개는 의료 분야 3개, 의료·통신 복합 분야 1개로 구성되어 있어, 에너지·교육·고용 등 후속 분야로의 확산은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추진단을 통한 관계부처 조정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10대 중점분야 확산 계획에 맞추어 시행령 및 하위 규정 정비를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와 관계부처 조정을 선제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적용 분야 확대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3-2.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활용도 제고 및 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확인하고, 전송요구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2025년 3월 13일 오픈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플랫폼 회원가입자 수는 총 1,935명, 누적 접속자 수는 13만 9,640명, 전송요구이력 조회 건수는 13만 7,172건으로 나타났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운영 실적]

구분		실적
회원가입자 수		1,935 명
(연간) 누적 접속자수		139,640 건
	월평균(3월~12월)	13,964 건
(연간) 전송요구이력 조회 건수		137,172 건
	전송이력 조회	65,034 건
	정보 재조회	38,268 건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제도를 기반으로 구현된 서비스는 제한적이며, 별도 예산사업으로 지원한 선도서비스도 일부가 플랫폼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원사업의 결과물이 실제 플랫폼 서비스로 구현·확산될 수 있도록 과제 관리와 후속 연계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말 기준 온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총 200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공공 부문 171개는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금융 부문 22개는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플랫폼에 연계한 것이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에 따라 플랫폼에 반영된 서비스는 통신 1개와 보건의료 6개 등 총 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현황]

구분	통신 부문	보건의료 부문	공공 부문	금융 부문	합계
서비스 수	1개	6개	171개	22개	200개

주: 1. 2026년 6월 말 기준
2.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공공부문 및 금융부문은 각각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금융위원회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임
자료: 온마이데이터 플랫폼

현재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7개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플랫폼 활성화와 신규 서비스 발굴을 위해 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2024년 및 2025년에 추진된 선도서비스 과제 총 9개 중 2026년 6월 말 기준 플랫폼에 반영된 과제는 7개에 그치고 있어, 지원사업의 결과물이 실제 플랫폼 서비스로 구현·확산되는 과정에도 지연 또는 미반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플랫폼 반영 여부]

연도	수행사	분야	과제명	플랫폼 반영 여부 (2026년 6월 말 기준)
2024	룰루메딕	의료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해외 의료 서비스	반영
	KTOA 컨소시엄	통신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요금 정보제공서비스	반영
	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	의료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 및 중증 이환 예측 서비스	반영
	나이스평가정보 컨소시엄	자율(여행)	마이데이터로 떠나는 여행지원 서비스	미반영
	카카오헬스케어	의료	건강정보고속도로를 활용한 똑똑한 약물 비서 서비스	반영
2025	㈜메라키플레이스	의료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 초개인화된 AI 솔루션	반영(2026년 5월)
	삼성의료재단	의료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 라이프프로그램 약품 제공	반영(2026년 6월)
	㈜메디에이지	의료	건강지표 기반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	반영(2026년 4월)
	주식회사 웰로	의료·통신	전국민·소상공인 대상 정책 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미반영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및 온마이데이터 플랫폼(https://www.onmydata.go.kr/)을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2024년도 선정 과제 5개 중 여행 분야 1개 과제는 관련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 해당하여 자율과제로 추진되었다. 자율과제는 전문기관 지정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플랫폼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나머지 4개 과제만 플랫폼에 반영된 상태이다. 또한 2025년도 선도서비스의 경우 당초 5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나 1개 과제가 중도 포기[4]하여 최종 4개 과제가 추진되었고, 이들 과제는 당초 2026년 3월까지 플랫폼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는 2026년 4월, 5월, 6월에 각 1개 과제씩 반영되어 2026년 6월 말 기준 플랫폼에 반영된 서비스는 3개에 그치고 있다.[5]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단순히 서비스 목록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실제 구현되고 정보주체의 이용으로 이어질 때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전송지원 표준화 등 마이데이터 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사업 수행 5년차인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제도를 기반으로 플랫폼에 반영된 서비스가 6개에 그치고, 별도 예산을 투입한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의 결과물도 일부가 적시에 플랫폼에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플랫폼 구축·운영 및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의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플랫폼 구축·운영, 선도서비스 지원, 연계체계 구축 등에 상당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발굴·확산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과 선도서비스 지원사업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지원사업의 결과물이 실제 플랫폼 서비스로 적시에 구현·확산될 수 있도록 과제 관리와 후속 연계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플랫폼에서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활용 실적, 정보주체의 이용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플랫폼 구축·운영 및 선도서비스 지원사업 전반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은 2025년 6월 공모를 통해 5개 과제를 선정하고 7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선정 과제 중 1개 과제가 2025년 8월 사업 수행을 포기하였다.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정자원정보관리원(국자원) 화재 등에 따라 보건의료 중계전문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운영이 임시중단되면서 전문기관 지정 심사 및 서비스 개통 일정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플랫폼 반영 시기도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은 선도서비스 확산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전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가 사업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보다 도전적인 목표 설정과 실질적 성과 중심의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의 성과지표인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발굴 건수」를 보면, 2024년에는 목표 5건, 실적 5건으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2025년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4건으로 설정되었으며, 실적 역시 4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 성과지표 목표 대비 달성 현황]

(단위: 건)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3 목표	2023 실적	2024 목표	2024 실적	2025 목표	2025 실적	비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보장	선도서비스 발굴 건수	-	-	5	5	4	4	전년 대비 하향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과지표는 사업의 개선 노력과 성과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도전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도 선도서비스의 경우 당초 5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나 1개 과제가 중도 포기(2025. 8.)하여 최종 4개 과제가 추진된 점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성과 목표치를 하향 조정[6]하였다.

그러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일부 과제가 중도 탈락하거나 계획 대비 성과가 축소되었다면, 이에 맞추어 목표치를 낮추어 반영할 것이 아니라 과제 선정·관리 체계와 후속 연계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플랫폼 이용 실적과 자체 서비스 확산 성과가 아직 제한적인 상황에서 성과지표 목표치마저 전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 성과관리 체계가 사업 개선을 유도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 부진을 목표 조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의 성과지표는 단순 '선도서비스 발굴 건수'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플랫폼 반영 여부나 정보주체 이용 실적 등 사업의 질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

6) 2025회계연도 통합재정사업평가 목표치는 2026년 1월 기초조사보고서 작성 시 설정된 것으로, 목표 설정 당시 2025년도 사업 수행 결과가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하지 못하고 있다.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과제를 발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서비스가 실제 플랫폼에 구현되고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지표만으로는 서비스가 실제 개통·운영되었는지, 플랫폼에 적시에 반영되었는지, 이용자가 실제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7)]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 성과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전년도 실적과 사업 개선 필요성을 반영하여 보다 도전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 또한 단순 '발굴 건수'에 그치지 않고, 선정 과제의 플랫폼 반영 및 서비스 개통·운영 여부, 정보주체의 실제 이용 실적 등 사업의 질적 성과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서 살펴본 자체 서비스 구현 부진과 성과관리 체계의 미흡은 결국 플랫폼 이용 실적 저조로 귀결되어,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구축 및 운영에 약 198억원[8)]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서비스 개통 이후 이용자 확보와 지속적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플랫폼의 실질적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2025년 3월 개통되었으며, 2025년 연말 기준 회원가입자 수는 총 1,935명, 누적 접속자 수는 13만 9,640건[9)]이다.

---

7) 동 사업의 결과물이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개별 과제의 성과가 단순 개발 완료 여부에 그쳐서는 곤란하고,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반영 여부 및 전송요구권 이용 활성화와 연결되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상당한 규모의 민간위탁사업비가 매년 집행되고 있음에도 플랫폼에서 확인되는 서비스 확산 성과가 제한적이라면, 이는 개별 서비스 지원과 범정부 플랫폼 기능 확충 사이의 환류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우 동 사업은 전송요구권 제도 확산 사업이라기보다 개별 기업·기관의 단기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8) 2024년 1단계 구축에 75억 4,600만원, 2025년 2단계 구축·운영에 60억 4,500만원, 2026년 3단계 구축·운영에 61억 7,600만원이 투입되는 등 총 약 197억 6,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9) 해당 수치는 회원가입 없이 이루어진 단순 방문을 포함한 수치로서 실제 이용자 기반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2025년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월별 접속자 현황]

(단위: 건)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일반	362	10,852	12,524	10,667	9,168	13,365	16,789	10,788	9,979	18,895	116,649
기관	-	9,499	2,640	1,890	1,080	1,862	1,477	1,601	714	843	21,606
테스트	-	-	-	-	-	-	52	224	262	356	1,135
합계	**362**	**20,351**	**15,164**	**12,557**	**10,248**	**15,452**	**18,584**	**12,613**	**10,955**	**20,094**	**139,64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러한 이용 실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제한적인 수준이며, 개통 초기의 관심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용 기반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플랫폼 운영성과는 단순 접속자 수나 조회 건수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송요구 실행 건수, 이용자 재방문율 등 플랫폼의 실질적 활용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성과관리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5년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전송요구이력 조회 건수]

(단위: 건)

구분	소계	목록조회	정보 재조회	상세 조회	금융	철회
3월	5,135	4,326	-	-	809	42
4월	57,035	27,680	9,197	1,675	18,483	38
5월	21,289	9,202	8,040	2,885	1,162	31
6월	10,210	4,480	4,145	1,250	335	16
7월	7,196	3,050	2,849	1,096	201	95
8월	5,983	2,682	2,242	619	440	24
9월	12,042	5,446	4,578	1,150	868	43
10월	4,493	2,062	1,804	369	258	21
11월	4,283	1,898	1,683	487	215	24
12월	9,506	4,208	3,730	1,090	478	25
합 계	137,172	65,034	38,268	10,621	23,249	359

주: 정보 재조회, 상세조회는 기능 개선으로 4월에 추가된 항목임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플랫폼 이용자 확보와 재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구축·운영 예산이 실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활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플랫폼 운영성과 관리 또한 단순 접속자 수나 서비스 수 중심에서 벗어나, 전송요구 실행 건수, 전송 완료율, 이용자 재방문율 등 실질적 활용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3-3.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10]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정보화사업으로, 2024년 1차 구축에 이어 2025년 2차 구축이 추진되었다.

2024년 1차 구축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달청을 통해 직접 발주하였으며, 제한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솔리데오시스템즈와 계약을 체결하여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2025년 2차 구축사업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달청을 통해 직접 발주하였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11]을 근거로 동일 업체인 ㈜솔리데오시스템즈와 계약금액 35억 6,27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10)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⑦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한편, 플랫폼 운영 비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별도로 지급되고 있으며, 2025년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운영 용역 예산은 약 20억 9,500만원 규모이다.

나. 분석의견

2차 구축사업은 플랫폼의 실제 운영성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추진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부가·고도화 기능들이 다수 반영되어 있고, 일부 기능은 현재 이용 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안·운영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는바,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단계별 투자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차 구축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범위는 본인정보 전송요구권 강화, 정보주체 관심정보 안내서비스 구축, 참여기관 지원기능 및 신규 분야 확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관리기능 강화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1차·2차 구축사업 범위 비교]

구분	1차 구축(2024)	2차 구축(2025)	비고
전송지원 포털	전송이력 조회·철회 요청, 종합안내, 디지털 카탈로그 등 포털 전체 신규 구현	-	1차에서 구현 완료
본인정보 전송요구권	전송요구 지원 기능 기반 구현	본인정보 다운로드, PDS 구축 등 본인전송 요구 신규 기능 구축 **(126억원)**	-
마이데이터 활용체계	인증기반, 참여기관 연계, 테스트베드, 활성화 지원 등 체계 전체 신규 구현	전송비용 모의산정, 에너지 분야 등 신규 연계 확대 **(8.73억원)**	1차 기반 연계범위 확대
정보주체 서비스	-	관심정보 안내서비스 구축 **(7.91억원)**	-
클라우드 인프라	민간 클라우드 기반 전체 인프라 신규 구축	PDS용 서버·스토리지 등 추가 도입 **(1.56억원)**	**별도 클라우드 구축**
관리기능	-	모니터링 강화, 인증체계(Any-ID) 적용, 참여기관 관리 개선, 서비스 모델 발굴, 이용 활성화 방안 등 **(5.37억원)**	**운영·유지보수 범위와 중복 가능성**
사업비 합계	58.3억원	38.32억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구축사업은 1차 구축사업에서 마련된 전송지원 포털 및 마이데이터 활용체계를 기반으로 본인정보 다운로드, PDS 구축, 전송비용 모의산정, 관심정보 안내서비스, 관리기능 강화 등 추가 기능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플랫폼의 기능적 완성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후속 정보화사업은 선행 구축분의 실제 활용 실적, 이용자 수요, 데이터 축적 수준 및 운영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3-2 분석의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개통 이후 약 10개월간 회원가입자 1,935명, 자체 구현 서비스 7개에 그치는 등 누적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활용 실적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 2차 구축사업에 포함된 개별 신규 기능의 추진 필요성과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본인정보 전송요구권 강화 영역(12.6억 원) 및 정보주체 관심정보 안내서비스 구축(7.91억 원)은 현재 플랫폼 운영성과에 비추어 추진 시기의 적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차 구축사업을 통해 정보주체가 직접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하고, PDS를 국정원 보안성 검토 및 지침에 따라 대구 국정자원 PPP존에 별도 구축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PDS와 같은 별도 클라우드 인프라 및 높은 수준의 보안·운영체계는 실제 저장·처리되는 정보의 규모와 민감도, 이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수준과 시점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 '정보주체 관심정보 안내서비스'(7.91억 원) 역시 사업계획서에서는 "데이터 카탈로그 기반 연관분석을 통한 관심정보 안내서비스"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구현 내용은 키워드 검색 시 연관 서비스 안내 및 인기 키워드 순위 제공 수준에 그치는바, 플랫폼 본연의 전송요구권 행사 실적과 이용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가적 안내 기능에 해당한다. 결국 두 영역 모두 회원가입자 1,935명·자체 구현 서비스 7개 수준의 이용 기반 위에서 우선 추진하기에는 사업 성숙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기능 강화 영역(5.37억원) 또한 별도 구축사업으로 발주할 성격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리기능 강화 영역에 포함된 장애 대응 모니터링 체계 강화, 사용자 인증체계(Any-ID) 적용, 참여기관 관리기능 개선, 중장기 서비스 모델 발굴,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등은 상당 부분 플랫폼 운영·유지보수 또는 기존 시스템 고도화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이거나 정책·기획 성격의 과업으로 볼

수 있다. 이미 1차 구축분에 대해 KISA를 통해 연간 약 20.95억 원 규모의 운영 용역이 별도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과업을 38.32억 원 규모의 별도 구축 사업에 포함하여 발주한 것은 운영·유지보수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측면에서 적정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2차 구축사업에 포함된 기능들은 장기적으로 플랫폼 운영에 필요할 수 있으나, 당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 전송요구권 행사 실적, 자체 서비스 활용 실적 및 이용 데이터 축적 수준을 고려할 때 별도 구축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용자 기반과 운영성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사양 인프라 구축과 부가 기능 고도화가 선행될 경우, 플랫폼 활용도 제고라는 본질적 과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예산 투입만 확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후속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용자 규모, 전송요구권 행사 실적, 자체 서비스 활용 실적 등 실제 운영성과를 우선 점검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업 범위와 기능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3-4. 전년도 유보재원 활용 및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시기·규모 조정 필요

가. 현 황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1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산업 간 연계체계 기반 마련과 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예산은 총 60억 5,000만원으로,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46억 7,000만원,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13억 8,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액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되어 집행되었다.

2025년도 출연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동 사업은 2025년 예산 46억 7,000만원이 전액 교부되어 부처 기준 집행은 완료되었으나,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실집행 단계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7억 3,100만원 중 51억 9,100만원만 집행되고 5억 4,0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내역사업도 예산 13억 8,0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실집행 단계에서는 13억 3,100만원이 집행되고 4,9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12)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⑦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6,050	6,050	-	-	6,050	6,050 [6,522]	-	-	5,364	5,364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 체계 구축	4,670	4,670	-	-	4,670	4,670 [5,191]	-	-	4,194	4,194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1,380	1,380	-	-	1,380	1,380 [1,331]	-	-	1,170	1,170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분석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수행기관의 전년도 이월액 등 보유재원과 월별 실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당해연도 출연금 전액을 상반기 중 교부한 바, 향후에는 수행기관 내 자금이 불필요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보유 잔액, 세부 과업별 계약·지급 일정 및 월별 자금 소요를 고려하여 출연금을 실소요에 맞추어 교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사업은 최근 수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 단계에서 교부액 대비 실집행액이 미달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2025년에는 전년도 이월재원 보유 현황과 상반기 중 실제 자금 소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당해연도 출연금 전액이 상반기 중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동 사업의 실집행 내역을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실집행액 기준으로 2022년 1억 8,300만원, 2023년 8,300만원, 2024년 18억 3,700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지연 등으로 실제 집행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교부액 76억 5,000만원 대비 실집행액이 58억 1,200만원에 그쳤고, 이에 따라 2024년 말 10억 6,100만원이 2025년으로 이월되었다.

[최근 4년간 동 사업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보호위)		사업수행주체(KISA)								
	예산 (A)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예산액	집행액 (C)			
2022	2,500	2,500	2,500	-	2,500	2,317	2,500	2,317	-	183	92.7
2023	3,197	3,197	3,197	-	3,197	3,114	3,197	3,113	-	83	97.4
2024	7,650	7,650	7,650	-	7,650	5,812	7,650	5,813	1,061	776	76.0
2025	6,050	6,050	6,050	1,061	7,111	6,522	6,050	5,451	-	589	90.3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2025년 초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단계에는 상당 규모의 이월재원이 존재하였음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3월 6일 11억원, 4월 9일 31억원, 6월 30일 18억 5,000만원을 교부하여 2025년도 출연금 60억 5,000만원 전액을 상반기 중 교부하였다.

그러나 각 교부 시점의 자금 보유 현황을 보면, 2025년 초 이미 전년도 이월액 10억 6,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3월 6일 1차 교부 후에는 누적 가용재원 21억 6,100만원 중 3,000만원만 집행되어 산정 잔액이 21억 3,100만원에 달하였다. 4월 9일 2차 교부 후에도 누적 가용재원 52억 6,100만원 중 18억 3,500만원이 집행되어 산정 잔액이 34억 2,600만원이었으며, 6월 30일 3차 교부 후에는 누적 가용재원 71억 1,100만원 중 27억 8,100만원이 집행되어 산정 잔액이 43억 3,000만원에 이르렀다.

[2025년 상반기 출연금 교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유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교부액	누적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포함 누적 가용재원(A)	누적 집행액 (B)	산정 잔액 (A-B)
2025. 1. 1.	-	-	1,061	-	1,061
2025. 3. 6.	1,100	1,100	2,161	30	2,131
2025. 4. 9.	3,100	4,200	5,261	1,835	3,426
2025. 6. 30.	1,850	6,050	7,111	2,781	4,33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연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존 보유재원과 실제 집행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6월 말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년도 이월재원과 4월까지 교부된 금액만으로도 상당한 집행 수요를 충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6월 말 잔여 출연금까지 추가 교부하여 상반기 중 전액을 교부한 것이 월별 자금 수요와 실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 결과 2025년 말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 단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 전액이 조기에 교부되었음에도 실제 집행이 이에 상응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출연금 교부 시에는 부처 단계의 교부 실적뿐만 아니라 사업수행기관 단계의 보유재원, 계약 체결 시기, 선급금·잔금 지급 계획 및 월별 실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13)]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교부 시점의 보유 잔액, 세부 과업별 계약·지급 일정 및 월별 자금 소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수행기관 단계에서 출연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실제 집행 수요에 맞추어 교부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13)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수행기관의 전년도 이월액(1,061백만원)은 '24년도 선도서비스 기업에게 지불해야 하는 잔금으로 용처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었으며, 이월금이 집행되기 전이라도 '25년 예산을 교부하여 '25년 사업의 집행을 준비토록 하고 예산 조기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 중 부처 단계의 교부를 완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3-5.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의 적정 수행기간 확보를 위한 일정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마이데이터 서비스지원사업은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산을 위해 신규 서비스를 발굴·상용화하는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에 20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실제 활용 사례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출연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민간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도서비스 과제를 선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25년에는 당초 총 5개 과제에 대해 과제당 4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4개 과제만 추진되었으며, 과제별 지원 규모도 5억원 2개 과제, 2억원 2개 과제로 조정되어 수행되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지원 사업 추진 절차]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억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억원)	⇒	용역 및 지원사업 수행자 (20억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년 마이데이터 서비스지원 사업 추진 내용]

구분	분야	내용	국비 지원금액	자부담 금액
㈜메라키플레이스	의료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 초개인화된 AI 솔루션	5억원	1.67억원
삼성의료재단	의료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 라이프프로그램 약품 제공	5억원	1.67억원
㈜메디에이지	의료	건강지표 기반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	2억원	0.67억원
주식회사 웰로	의료·통신	전국민·소상공인 대상 정책 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2억원	0.67억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마이데이터 서비스지원사업은 전송요구권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개발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전년도 과제 정산과 당해연도 신규 과제 선정이 동일 연도 내에서 병행되고 있으며, 특히 과제 선정이 하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기간이 제한되고 있는바, 사업 일정을 조기화하여 충분한 과제 수행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마이데이터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하여 신규 서비스를 발굴·상용화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실제 활용 사례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가급적 연초에 공모·선정·협약을 완료하여, 수행기관이 서비스 개발, 플랫폼 반영 및 성과 검증에 이르기까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2025년 사업 실집행 내역을 보면, 3월 집행분은 주로 2024년 선정 과제의 잔금 지급에 해당하여 전년도 과제의 정산이 당해연도 상반기까지 이어졌고, 2025년 신규 서비스 지원과제는 5월 9일 공고, 6월 9일 접수 마감, 7월 30일 최종 선정의 절차를 거쳐 8월에 선급금, 11월에 잔금이 지급되는 등 신규 과제 선정·집행이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본격화되었다. 사업기간도 협약체결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신규 과제의 실질적인 사업수행은 8월 이후 약 3~4개월 내에 개발·실증·평가 및 플랫폼 연계까지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일정이었다.[14]

[2025년 마이데이터 서비스지원사업 집행 구조]

구분	주요 내용	비고
2025년 3월	2024년도 선정 과제에 대한 잔금 집행	전년도 과제 정산
2025년 5.9 ~ 6.9	2025년 신규 사업 공모	신규 사업 공모 지연
2025년 7.30	2025년 신규 과제 5건 최종 선정	실질 착수 시점이 하반기로 이연
2025년 8월	신규 과제 선급금 지급	실제 수행기간 축소
2025년 11월	신규 과제 잔금 지급	연내 단기 수행 구조
2025년 12월 말	사업 종료	개발·실증·플랫폼 반영및 성과 확산에 제약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4) 2024년 선도서비스 공모사업도 시행령 개정 지연 등의 영향으로 공고·접수가 2024년 8월 말~10월 초, 사업자 선정이 2024년 10월 초~11월에 이루어졌고, 사업 수행 및 서비스 개발·테스트 완료가 2025년 6월까지 순연된 바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지원사업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연계된 실제 서비스의 발굴·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므로, 지원과제는 서비스 개발 자체뿐 아니라 데이터 보유기관과의 연계, 전송규격 적용, 이용자 검증, 보완개발, 플랫폼 반영 및 초기 운영까지 일정 수준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당해연도 내에 실질적으로 확보되는 수행기간이 3~4개월에 그칠 경우, 서비스 완성도와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플랫폼 반영 시점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업 착수 시점이 매년 하반기로 이연되는 양상이 지속될 경우, 충분한 개발기간과 시장검증 가능성을 중시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기관의 참여 유인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례를 보면, 2025년 개인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실증과제 5건에 대해 2월 19일 공모를 개시하여 4월 25일 최종 선정을 완료하였고, 공모에는 25개 컨소시엄, 90개 기업이 참여하여 5: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과제 선정 시점이 상반기로 앞당겨질 경우 수행기관이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 기반도 보다 폭넓게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은 5월 공고, 7월 말 선정, 8월 이후 집행이 이루어지는 일정으로 운영되어, 안정적인 서비스 개발 및 출시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과 과기정통부 실증사업 추진시기 비교]

구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 일정	2025.5.9. ~ 2025.6.9.	2025.2.19. ~ 2025.3.21.
과제 최종 선정	2025.7.30.	2025.4.25.
선정 과제 수	5건	5건
과제 수행기간	8월 ~ 12월	4월 말 ~ 12월 초
특징	하반기 착수 구조로 수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	5월 중 선정 완료로 충분한 사업 수행기간 확보 가능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선정·협약 및 선급금 지급 등 주요 절차를 가급적 연초에 완료함으로써 수행기관이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3-6. 사업비 기자재 구매의 실수요 검증 및 연말 집중 집행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연사업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데스크탑PC, 노트북, 모니터, 캐비닛 등 기자재를 구매하였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자재 구매액은 총 5,453만 2,600원으로, 이 중 연말 집행 내역은 데스크탑PC 4대와 모니터 2대 등 1,439만 8,200원 상당의 기자재를 집중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5년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기자재 구매 현황]

(단위: 원)

구분	주요 구매 시기	주요 품목	수량	금액
마이데이터 정책·운영팀	4월	데스크탑PC	3대	20,374,400
		노트북	5대	
	6월	노트북	10대	19,760,000
	11월	캐비닛	2개	599,000
		회의용 탁자	1개	250,000
		데스크탑PC	2대	6,331,600
		모니터	2개	620,000
	12월	데스크탑PC	2대	6,597,600
합계				54,532,6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구매한 기자재의 실제 사용자 및 활용 목적을 고려할 때 동일 사용자에 대한 중복 배정 사례가 확인되고, 회계연도 말에 기자재 구매가 집중 집행된 측면도 있는바, 향후 사업비를 활용한 기자재 구매 시 회계연도 내 실수요, 기존 보유 장비 활용 가능성 및 사용자별 장비 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기자재 구매나 연말 집중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의 2025년도 기자재 구매 내역을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마이데이터정책팀 및 마이데이터운영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데스크탑PC, 노트북, 모니터, 캐비닛 등 기자재를 구매하였다. 특히 마이데이터운영팀의 경우 11월부터 12월까지 데스크탑PC 4대 및 모니터 2대 등 총 1,385만 9,200원 상당의 기자재를 추가 구매하는 등 회계연도 말에 기자재 구매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2025년 구매 기자재의 주요 사용자별 배정 현황]

구분	집행시점	실제 사용자	배정 기자재	비고
마이 데이터 정책팀	2025.04	사용자 A	데스크탑PC 2대, 노트북 1대,	PC류 3대
	2025.11		캐비닛 2개, 회의용탁자 1개	
	2025.06	사용자 B	노트북 10대	이 중 10대는 외부 사무국 지원사(포유시큐리티) 설치
	2025.04	사용자 C	데스크탑PC 1대	-
	2025.06	사용자 D	노트북 1대	-
마이 데이터 운영팀	2025.04	사용자 E	데스크탑PC 1대, 노트북 1대	PC류 3대
	2025.11		데스크탑PC 1대	
	2025.04	사용자 F	노트북 1대	PC류 2대
	2025.11		데스크탑PC 1대	
	2025.04	사용자 G	노트북 1대	PC류 2대
	2025.12		데스크탑PC 1대	
	2025.04	사용자 H	노트북 1대	-
	2025.11		모니터 1대	
	2025.11	사용자 I	모니터 1대	-
	2025.12		데스크탑PC 1대,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사용자별 기자재 배정 현황을 보면, 동일 사용자에게 데스크탑PC와 노트북이 함께 배정되거나 데스크탑PC가 2대 배정된 사례가 확인된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Windows 10 공식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이 2025년 10월 종료됨에 따라 해당 노후 기자재 교체를 위해 긴급하게 기자재를 구매하였으며, 고장 또는 내용연수(3년) 초과 등으로 업무 활용이 곤란한 경우 신규 장비를 구매·배정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Windows 10 기술지원 종료는 운영체제 보안지원 종료에 관한 사항으로, 그 자체가 기존 PC·노트북 등 물리적 장비의 교체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Microsoft 안내문에서도 Windows 11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PC 교체는 Windows 11 실행을 위한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선택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이번에 교체 대상이 된 장비들은 2021년 또는 2022년에 구매한 장비들로, Windows 11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된 장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존 장비별 Windows 11 설치 가능 여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또는 보안조치를 통한 계속 사용 가능성 등을 우선 검토한 후, 실제 고장·성능 부족 또는 운영체제 전환 불가 등으로 업무 활용이 곤란한 장비에 한하여 신규 구매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3월까지 구매한 PC류 장비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 기준에 따라 내용연수 3년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내용연수 경과는 자산 교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관리 기준일 뿐, 곧바로 해당 장비의 업무 활용 불가나 신규 장비 구매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15)]

사용자별 장비 배정 측면에서도 집행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일부 사용자는 2025년 상반기에 이미 데스크탑PC 또는 노트북을 배정받았음에도 하반기에 다시 추가 장비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동일 사용자에게 PC류 장비가 2~3대까지 배정된 사례도 확인된다. 사업비로 구매한 기자재는 해당 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함에도, 동일 사용자에게 복수의 PC류

15)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4-30호, 2025. 1. 1. 시행)에 따르면 데스크톱컴퓨터의 내용연수는 5년, 노트북컴퓨터는 6년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3월까지 구매한 물품에 적용해 온 내부 기준 3년은 공공부문의 일반적 기준보다 짧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고시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용연수 경과가 곧바로 교체나 신규 구매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3월 이후 구매한 PC류 장비부터는 조달청 고시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장비가 배정된 것은 일반적인 사업 수행상 실수요로 보기 어렵다.[16]

또한 10월 말부터 11월 하순에 도입된 장비는 2025회계연도 내 활용 가능 기간이 매우 제한적이다. 기존 장비 교체 필요성 및 사용자별 배정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계연도 말에 신규 장비 구매가 집중된 것은 해당 연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수요에 따른 집행이라기보다 사업비 잔액을 회계연도 내 집행하기 위한 성격으로 볼 소지가 있다.

아울러 외부 사무국 지원사에 설치된 노트북에 대해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업무 활용을 사유로 밝히고 있으나, 심사업무의 성격과 사업 종료 이후 회수·재배치 계획 등을 고려할 때 노트북 10대를 외부 사무국에 설치한 것이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기관 자산을 외부 사무국에 설치하는 경우 자산관리 책임, 반납 절차 및 사후 활용계획이 사전에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나, 제출자료만으로는 해당 수량의 적정성과 구매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향후 사업비를 활용하여 PC·노트북·모니터 등 기자재를 구매할 때 사용자별 기존 보유 장비 현황, 1인당 장비 보유 필요성 및 활용계획, 회계연도 내 실질 활용 기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산관리번호 단위로 장비의 용도, 사용자, 설치장소, 반납·교체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고, 동일 사용자에 대한 중복 배정이나 회계연도 말 예산 소진성 집행으로 의심될 수 있는 기자재 구매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16)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등으로 동일 사용자에게 2대 이상의 PC류 장비 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입장이다.

4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1] 및 제28조의3 등에 근거하여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결합·반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기술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가명정보 활용 실태조사,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가명정보 관련 제도·기술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가명정보 제도운영', 개인정보의 가명처리·결합·반출에 대한 기술지원과 분석환경 제공 등을 수행하는 '가명처리 기술지원', 가명정보 관련 정보 및 가명처리 소프트웨어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기능개선을 수행하는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출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총 35억 6,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다.

[2025회계연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3,564	3,564	-	-	3,564	3,564	-	-	6,456	6,456
가명정보 제도운영	391	391	-	-	391	391	-	-	314	314
가명처리 기술지원	2,137	2,137	-	-	2,137	2,137	-	-	5,742	5,742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1,036	1,036	-	-	1,036	1,036	-	-	400	400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지수 예산분석관(jskim05@assembly.go.kr, 6788-4630)

1)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가명정보 결합·반출 처리기간 장기화 개선 필요

가. 현 황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탐색 및 기관 협의, 가명처리, 결합지원, 기술지원, 컨설팅,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가명정보 제도[2]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가 삭제되거나 다른 정보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 또는 정보에 대한 연구를 위해 다른 가명정보와의 결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3]은 이러한 가명정보 결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합된 정보를 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결합키관리기관으로서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관리하고, 결합전문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결합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과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명처리, 결합지원, 컨설팅, 교육·실습 등 관련 지원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

2)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https://www.dataprivacy.go.kr/)

3)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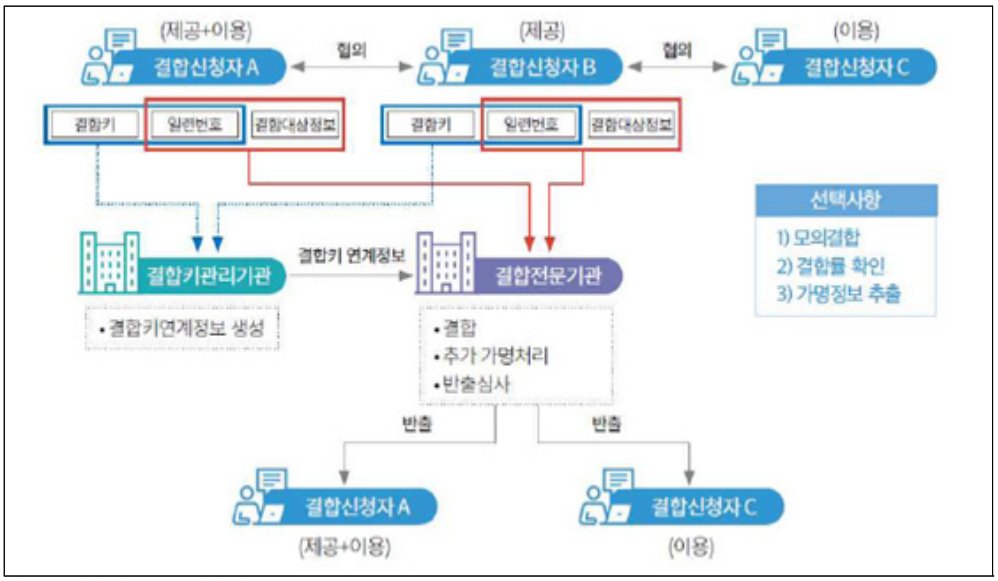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분석의견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은 보호된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제 운영은 데이터 협의, 가명처리, 결합·반출 절차가 단계별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어 장기 처리와 활용 지연을 구조적으로 초래하고 있는바, 처리기간 단축과 전 과정 연계 중심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정책과제 수행 및 과학적 연구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기관과 수요기관 간 연계, 가명처리, 결합·반출 등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 구조에서는 데이터 협의, 가명처리, 결합·반출이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순차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각 단계별 소요기간이 누적되는 구조이다. 특히 데이터 제공기관과 협의가 지연되거나 가명처리·결합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후속 절차 착수 자체가 지연되므로, 전체 처리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연구과제의 실제 처리 과정은 데이터 협의, 가명처리, 결합·반출의 3단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과제 1건이 실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 확보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계별 평균 처리기간[4]은 데이터 협의 약 129일, 가명처리 약 124일, 결합·반출 약 71일 등으로, 전체 처리기간은 총 324일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일부 단계에서는 최대 소요기간이 수백 일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이용자의 관점에서 적시성 있는 활용지원 체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연도별 연구과제의 가명정보 제공·처리 단계별 소요기간(2021~2025)]

(단위: 일)

연도	연구기관별		단계별 소요기간			연구기간
			데이터 협의	가명처리	결합·반출	
2021	1	국가보훈처	45	6	16	'20. 10.~'21. 3.
	2	국립암센터	45	70	45	'20. 10.~'21. 5.
	3	국립암센터	45	58	33	'20. 10.~'21. 5.
	4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45	47	14	'20. 10.~'21. 6.
	5	한국인터넷진흥원	45	7	16	'20. 10.~'21. 6.
	6	KT, 롯데멤버스	45	97	46	'20. 10.~'21. 7.
	7	국립산림과학원	45	26	155	'20. 10.~'21. 11.
2022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대	207	183	61	'21. 5.~'22. 10.
	9	성남시, 티맵모빌리티	207	11	18	'21. 5.~'22. 1.
	10	서울대	207	446	63	'21. 5.~'23. 10.
	11	가천대	207	472	231	'21. 5.~'24. 3.
2023	12	강남대	196	304	연구중단	'22. 12.~ 중단
	13	고려대	223	57	연구중단	'22. 12.~ 중단
	14	부경대	143	47	15	'22. 12.~'23. 7.
	15	아동권리보장원	143	99	9	'22. 12.~'23. 12.
	16	행정안전부, 통계청	143	71	25	'22. 12.~'23. 12.
	17	서울대	연구중단	연구중단	연구중단	'22. 12.~ 중단
	18	군산대	연구중단	연구중단	연구중단	'22. 12.~ 중단
	19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143	116	203	'22. 12.~'25. 9.
	20	KDI 국제정책대학원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6	115	184	'22. 12.~'25.12.

4) 가명정보 제공 과정의 단계별 소요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2021~2023년 결합 선도사례 과제를 대상으로 처리기간을 산정함.

(단위: 일)

연도	연구기관별		단계별 소요기간			연구기간
			데이터 협의	가명처리	결합·반출	
2024	21	리얼타임메디체크	데이터 제공불가	-	-	’24. 5.~중단
	22	중앙대	데이터 제공불가	-	-	‘24. 5.~중단
	23	한국교통연구원	-	-	완료	’24. 12.~’25. 5.
	24	인천국제공항공사	-	-	완료	’24. 12.~’25. 11.
	25	한양대, 건국대, 성균관대	-	-	-	’24. 12.~진행
	26	서울대	-	-	-	’24. 12.~진행
2025	27	서울시	-	-	완료	’25. 3.~’25. 8.
	28	대구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	-	완료	’25. 4.~’25. 6.
	29	한국부동산원	-	-	완료	’25. 4.~’25. 12.
	30	서울시	데이터 제공불가	-	-	’25. 6.~중단
	31	한국도로교통공단	-	-	-	’25. 7.~진행
	32	단국대	-	-	-	’25. 8.~진행
	33	국립농업과학원	-	-	-	’25. 9.~진행

주: 1. 동 과제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 인프라 운영사업(가명정보 컨설팅)을 통해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받은 결합 선도사례임
2. 가명정보 제공·처리 단계별 소요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한하여 작성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년 착수 과제는 데이터 협의 기간은 비교적 짧았으나 가명처리와 결합·반출 단계에서 과제별 편차가 나타났고, 2021년 착수 과제군에서는 데이터 협의에만 평균 207일이 소요되는 등 장기화 문제가 본격화되어 전체 처리기간이 평균 약 578일(최소 236일 ~ 최대 910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일부 과제의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으나, 2024년 12월 착수된 과제 중 일부는 2026년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에도 과제별 처리기간 편차가 여전히 크고, 데이터 확보 시점의 예측 가능성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2022년 착수 과제중에서는 단순한 처리 지연을 넘어 중단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강남대와 고려대 과제는 결합·반출 단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고, 서울대와 군산대 과제는 데이터 협의 단계에서부터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과제와 KDI 국제정책대학원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과제는 연구 완료가 각각 2025년 9월, 2025년 12월까지 이어져, 일부 과제가 수년에 걸쳐 장기화되고 있는 실태도 확인된다.

이처럼 과제별로 처리기간의 편차가 크고 일부 과제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거나 중도 중단되고 있다는 점은, 동 사업이 아직 예측 가능하고 표준화된 처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인 연구과제나 정책과제, 기업의 서비스 기획·검증 일정은 연 단위 또는 그보다 짧은 주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데이터를 실제 확보하는 데 평균적으로 약 1년이 소요되고 일부 과제는 2~3년 이상이 걸리거나 중단에 이른다면, 데이터 활용 시점과 연구·사업 추진 시점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명정보 활용 절차 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적시성이 낮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제도 활용 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AI 시대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5]에서도 가명정보 제공 협의부터 결합·반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되고 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가명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비중은 2.3%에 불과하며,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역량 부족, 인센티브 부재, 리스크 회피에 따른 경직적·보수적 운영, 비식별성에 치중한 처리로 인한 데이터 효용성 저하 등이 제도 활용 정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가명정보 활용 지연이 개별 과제의 특수성이나 단순 행정처리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공기관의 역량·유인 부족과 절차 구조의 분절성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결합전문기관 운영 여건은 오히려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연도별 결합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현황]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신규지정	14	3	2	1	-	-
지정취소	-	1	1	2	2	-
유효기간 만료	-	-	-	-	-	2
합계	20	22	23	22	20	18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관계부처 합동, 「AI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2025. 9. 24.

가명정보 결합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하여 활용가치를 높이는 핵심 절차인 만큼, 결합전문기관의 처리역량과 접근성은 사업 성과와 직결된다. 그런데 장기 처리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합전문기관까지 감소하거나 활용 기반이 약화될 경우, 앞선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과 행정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최종 활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데이터 협의, 가명처리, 결합·반출 등 전 과정의 처리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연요인을 점검·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계별 표준 처리기간을 설정하고,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는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원인분석 체계를 마련하며, 결합전문기관의 처리실적과 처리역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데이터 활용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2.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을 고려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가. 현 황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등에 근거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가명정보 제도 운영, 가명처리 기술지원, 가명정보 결합·반출 지원,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공공·민간 부문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과 초개인화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AI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AI 학습 등 연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명정보 제도의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동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가명정보 활용 지원사업 역시 단순한 데이터 활용 확대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전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나. 분석의견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은 AI 활용 및 과학적 연구 등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 등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적 의의가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업인 만큼 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가명정보 제도는 데이터 활용성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간의 균형을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강한 비식별화를 지양하고 데이터 품질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부처 자료[6]에 의하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양질의 데이터는 생성형 AI 및 초개인화 서비스 경쟁에서 핵심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가 AI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제도 합리화와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AI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가명정보 제도 운영의 3대 문제점]

구분	① 공공부문의 소극적 관행	② 과도한 처리 소요시간	③ 과도한 가명처리로 효용성 저해
핵심 진단	가명정보 제공은 본업이 아닌 부수업무로 인식되어 공공기관 대부분이 역량 미비	가명정보 제공에 평균 310일 소요	비식별성에 치중한 보수적 가명처리로 유용성 저하
주요 원인	고질적 조직문화 (폐쇄적 데이터 관리) + 과도한 법적 리스크 우려	자율 운영되는 절차·기준의 불확실성 → 경직적·보수적 운영	결합키 정합성 부족으로 결합 효과 제한
현장 사례	상당수 기관이 "실무자 부담", "주무부처의 불승인" 등을 이유로 거부	5년 장기연구용 가명정보 이용기간을 1년으로 설정 → 만료 시마다 재실시	성명·생년월일을 결합키로 사용 시 동명이인 등 중복 발생

자료: 관계부처 합동, 「AI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2025. 9. 24.

특히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비조치의견서 도입, 가명정보 제공 실적의 공공데이터 평가 반영, 가명처리 절차 간소화, 주민등록번호 및 CI를 활용한 결합 효율화 등은 가명정보 활용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가명정보 활용이 정체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활용 확대를 위한 절차 완화가 강조될수록, 그에 상응하는 보호통제 체계도 함께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가명정보는 정보주체를 직접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이지만, 데이터의 성격, 결합 방식, 제공 대상, 활용 목적 등에 따라 재식별 위험이나 정보주체 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결합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통제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관계부처 합동, 「AI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2025. 9. 24.

특히 보험, 의료, 복지, 고용 등 개인의 권익이나 차별·불이익 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분야에서는 가명정보라는 형식만으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공 목적의 적합성, 제공 범위의 최소화, 처리기록 관리 및 사후 통제 등에 대한 보다 신중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24년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장기기증 관련 가명 자료를 민간 보험사와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공 목적의 적정성, 최소 제공 원칙, 정보주체 이익 침해 여부, 처리기록 작성·보관 등이 문제로 지적된 사례[7]는 이러한 통제 필요성을 보여준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 가명정보 부적정 제공 사례]

구분	복지부 감사 (2024.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2026. 4. 8.)
제공 목적 적합성 (보호법 §28의2①)	부적정 지적 (보험상품 개발·시장조사용 제공은 통계·과학적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제3자 제공 시 식별가능정보 포함 여부 (보호법 §28의2②)	재식별 우려 지적 (이식연도·성별·이식연령 (1세 단위)·장기·기증유형 등 결합 시 식별 가능성)	위반 아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 미포함) 단,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범주화(예: 30대 초반)하여 제공하도록 개선 권고
가명정보 처리기록 작성·보관 의무 (보호법 §28의4③)	지적 (처리 관련 기록 미작성·미보관)	위반 인정 (과태료 120만 원)
외부 심의위원회 등 자료제공 심의 절차	부적정 지적 (내부 결재만 거쳐 제공, 외부 전문가 심의 부재)	-

자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심의·의결서(2026.4.8.)
보험매일(2024.9.25.) "장기이식 정보 38만건 보험사 등에 유출"

7)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2021년부터 2024년 5월까지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제3자 신청에 따라 총 56회, 385,355건의 가명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감사(2024.9.)에서 부적정 사례로 적발되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언론보도를 단서로 조사에 착수하여 2026.4.8. 의결함

이는 가명정보 활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활용 지원 과정에서 제공 목적, 제공 범위, 심의 절차, 처리기록 관리 등 사전·사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감정보의 부적정 제공이나 목적 외 활용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호조치 수준의 적정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위험·민감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목적 적합성 검토, 재식별 위험 평가, 사후 모니터링 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및 CI를 활용한 결합 효율화와 같이 결합 정확도와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 반출통제, 재식별 방지, 목적 외 활용 점검 등 대응 조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3.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및 지역센터 운영의 가명정보 활용성과 연계 점검 필요

가. 현 황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과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가명정보 활용을 희망하는 연구자, 기업, 기관 등에 대해 제도 안내, 데이터 탐색, 가명처리 지원, 결합지원, 기술지원, 컨설팅, 교육·훈련, 분석공간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 기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운영 예산은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내역사업으로 10억 3,600만원이 편성·집행되었으며, 플랫폼 운영·유지보수 및 기능 고도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가명처리 기술지원' 내역사업 중 '가명처리 지원센터 운영' 4억 2,700만원과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6억원 등 총 10억 2,700만원 규모로 편성·집행되었다.

[2025회계연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3,564	3,564	-	-	3,564	3,564	-	-	6,456	6,456
가명정보 제도운영	391	391	-	-	391	391	-	-	314	314
가명처리 기술지원	2,137	2,137	-	-	2,137	2,137	-	-	5,742	5,742
가명정보 활용 기술지원	300	300	-	-	300	300	-	-	300	300
가명처리 지원센터 운영	**427**	**427**	**-**	**-**	**427**	**427**	**-**	**-**	**427**	**427**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600**	**600**	**-**	**-**	**600**	**600**	**-**	**-**	**600**	**600**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구축·운영	810	810	-	-	810	810	-	-	810	810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1,036**	**1,036**	**-**	**-**	**1,036**	**1,036**	**-**	**-**	**400**	**400**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현재 서울, 강원, 부산, 대전 등 총 7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가명처리 기술지원' 내역사업의 '가명처리 지원센터 운영' 예산 4억 2,700만원은 서울 소재 가명처리 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강화를 위한 예산이며, 같은 내역사업의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예산 6억원은 강원·부산·대전 소재 3개 활용지원센터에 대해 개소당 2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 외 지역 센터는 지방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단위: 억원)

지역	개소시기	운영기관	구축 시 국비지원	2025년 운영비	
				국비	지방비
서울	2020.11.	한국인터넷진흥원	5.0	**4.27**	-
강원	2021.7.	강원 테크노파크	2.8	**2.0**	2.0
부산	2022.7.	부산 테크노파크	3.0	**2.0**	2.0
인천	2023.7.	인천 테크노파크	-	**-**	3.0
대전	2023.11.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3.0	**2.0**	2.0
대구	2024.7.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	1.2
전북	2024.11.	전북 테크노파크	-	**-**	3.0
합 계				10.27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분석의견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과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가명정보 활용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초기 상담·교육·기술지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의의가 있으나, 실제 운영 실적은 교육·컨설팅·신청지원 등 중간지원 활동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고, 데이터 협의 및 결합·반출 등 실제 가명정보 활용 과정과의 연계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플랫폼 및 지역센터 운영이 실질적인 가명정보 활용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데이터 협의와 결합·반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가명처리 경험과 인프라가 부족한 연구자, 기업 및 기관 담당자에게 전문컨설팅, 가명처리 인프라,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 교육·실습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센터별 실적을 보더라도 2025년 기준 7개 센터의 가명처리 실적은 총 89건인 반면, 컨설팅은 249건, 교육·실습은 148건으로 나타난다.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실적 현황]

(단위: 건, 명)

지역	지원 실적	2022	2023	2024	2025
서울	가명처리	8	16	25	17
	적정성 검토	2	3	15	9
	컨설팅	12	13	38	40
	교육·실습(건/인원)	76 / 489	62 / 409	63 / 518	77 / 484
강원	가명처리	10	6	17	7
	적정성 검토	7	14	21	8
	컨설팅	17	35	60	59
	교육·실습(건/인원)	9 / 237	31 / 1,333	27 / 842	14 / 365
부산	가명처리	2	8	9	13
	적정성 검토	1	3	10	10
	컨설팅	8	17	34	43
	교육·실습(건/인원)	8 / 99	21 / 1,098	17 / 214	13 / 293
인천	가명처리	-	0	4	10
	적정성 검토	-	0	8	6
	컨설팅	-	1	19	48
	교육·실습(건/인원)	-	3 / 52	9 / 283	11 / 425
대전	가명처리	-	2	3	2
	적정성 검토	-	1	2	1
	컨설팅	-	10	14	21
	교육·실습(건/인원)	-	0	7 / 557	7 / 233
대구	가명처리	-	-	7	38
	적정성 검토	-	-	1	31
	컨설팅	-	-	11	28
	교육·실습(건/인원)	-	-	11 / 252	13 / 263
전북	가명처리	-	-	0	2
	적정성 검토	-	-	0	6
	컨설팅	-	-	6	10
	교육·실습(건/인원)	-	-	8 / 167	13 / 25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일부 센터의 경우 연간 가명처리 실적이 2건에 그치는 등 센터별 실제 활용지원 실적에도 편차가 존재한다. 컨설팅과 교육·실습은 가명정보 활용 기반 확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 자체가 실제 데이터 활용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센터 운영이 최종적으로 가명처리 완료, 결합·반출, 연구·서비스 활용으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운영 실적 현황]

(단위: 건, 명)

결합지원	**가명처리**	컨설팅	교육 수료 (인원)	전문가 풀 (인원)	합성데이터	사이버 훈련장	센터이용	합계
55	**147**	69	1,463	30	125	149	86	2,124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의 경우에도 2025년 주요서비스 이용실적 2,124건 중 교육 수료가 1,46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합지원은 55건, 가명처리는 147건에 그치고 있다. 또한 플랫폼의 결합지원은 이용자의 결합신청부터 결합키연계정보 생성까지의 단계 지원이고, 가명처리 지원은 사용승인 건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어, 해당 실적이 곧바로 최종 결합·반출 완료나 실제 연구·산업 활용 성과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플랫폼과 지역센터는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보조적·중간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실적 구조만으로는 이들 지원체계가 동 사업의 핵심 과제인 가명정보 활용 확대와 결합·반출 장기화 문제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플랫폼과 지역센터의 운영성과를 단순 교육·컨설팅·신청지원 실적 중심으로 관리하기보다는, 해당 지원을 받은 과제가 실제 가명처리 완료, 결합·반출 완료, 연구·서비스 활용으로 이어졌는지를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다.

5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1]은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新서비스 환경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을 지원 및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의 활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 시범운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24년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출연금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25년부터 위원회 직접수행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예산 전용을 통해 출연금(사업출연금)을 일반용역비·일반연구비 등으로 비목 변경한 후, 서울테크노파크에 약 3억 6,3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 5억 3,100만원 중 4억 9,100만원(92.5%)이 집행되고 4,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	531	531	-	-	531	491	-	40	150	150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지수 예산분석관(jskim05@assembly.go.kr, 6788-4630)

1) 일반회계 1031-304

5-1.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기업 참여 제약 해소 및 기업지원 운영 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부터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을 직접수행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기술개발 자문, 시제품 성능 평가·검증 자문, 기술사업화 컨설팅, 시제품 PoC 실증 지원, 판로개척 지원, 투자유치 역량 강화,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2025년 1월 직접수행 전환 및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이후, 6월 사업계획 확정, 7~8월 조달 절차를 거쳐 2025년 8월 25일 수행기관과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9월 공고를 통해 기술개발 자문 및 시제품 성능 평가·검증 자문은 수시 접수·상시 운영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시제품 PoC 실증 지원은 참여기업 1차 모집(9.19.~10.15.), 2차 모집(10.21.~11.5.)을 거쳐 각각 11월 10일, 11월 24일 선정 통보 후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약 1~2개월 내에 이루어졌다.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 주요 추진 경과]

일자	주요 내용
2025. 1. 16.	출연사업의 직접수행 전환 및 예산 승인전용
2025. 6.	사업계획 확정
2025. 8. 25.	수행기관(서울테크노파크)과 계약 체결
2025. 9. ~ 12.	기술개발 자문, 시제품 성능 평가·검증 자문 수시 접수·상시 운영
2025. 9. 19. ~ 10. 15.	기술사업화 컨설팅·PoC 실증 참여기업 1차 모집
2025. 10. 21. ~ 11. 5.	기술사업화 컨설팅·PoC 실증 참여기업 2차 모집
2025. 11. 10.	1차 지원기업 선정 통보
2025. 11. 24.	2차 지원기업 선정 통보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은 사업계획 확정과 수행기관 계약이 지연되어 수혜기업 모집·선정 절차가 하반기에 촉박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충분한 사전홍보와 모집기간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원 수요를 확보하기보다 상당수 지원유형이 수시접수, 선착순, 내부검토 등 비경쟁적 방식으로 운영된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4년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2024년에는 4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10개 신청기업 중 6개 기업을 경쟁 선정한 후, 사업화 자금 지원, 성과경진대회, VC 및 수요처 매칭 등 기술개발·사업화에 직접 연계되는 지원을 수행한 바 있다. 즉, 2024년에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수혜기업 모집이 이루어졌고, 신청기업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경쟁평가 방식이 적용되었다.

반면 2025년에는 직접수행 전환 이후 사업계획 확정과 수행기관 계약이 지연되면서 수혜기업 모집이 9월에야 개시되었다. 이후 1차 모집은 9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차 모집은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되었고, 선정 통보도 각각 11월 10일과 11월 24일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수혜기업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폭넓게 발굴하여 경쟁평가를 통해 선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그 밖의 기술개발 자문 및 시제품 성능 평가·검증 자문은 수시접수 및 상시 운영 방식으로, 판로개척 지원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는 참여 신청 기업에 대한 기본요건 확인 방식으로, 특화프로그램은 기존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착순 모집 또는 내부검토 방식으로 각각 운영되었다.

[각 지원 유형별 기업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분야	프로그램명	기업 선정 절차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자문	- 수시 접수 및 상시 운영 방식 - 수시 접수 → 적격 여부 검토 → 전문가 매칭 → 자문 지원
	시제품 성능 평가·검증 자문	
	기술사업화 컨설팅	- 일정기간 모집 후 서면검토 및 외부 전문가 평가 (발표평가 포함)를 통해 과제 선정 - 공고 및 접수 → 서면검토 → 외부 전문가 평가(발표 포함) → 최종 선정
	시제품 PoC 실증 지원	
판로개척 지원	테크비즈 파트너링(공공)	- 참여기업 신청 기반으로 적격 여부 확인 후 참여 - 참여기업 모집 → 신청 기업 적격 여부 확인 → 수요처 매칭 →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테크비즈 파트너링(민간)	
	투자유치 역량 강화	- 참여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 - 참여 신청 → 기본요건 검토 → 대상 기업 선정 → IR 컨설팅 및 상담 지원
특화 프로그램 지원	특허평가 보고서 지원	- 사업 수혜기업 대상 모집(선착순, 내부검토) → 적격 여부 검토 → 대상기업 선정 → 보고서 제공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홍보, 뉴스기사 등)	- 참여기업 중 홍보 필요성 및 콘텐츠 적합성 등을 고려 - 참여기업 대상 내부 검토 → 홍보 필요성 및 콘텐츠 적합성 검토 → 대상기업 선정
	후속 자문	- 기존 지원기업 중심으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 기존 지원기업 중심 수요 확인 → 추가 지원 필요성 검토 → 대상기업 선정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업지원사업에서 수혜기업 발굴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과정이다. 특히 동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기업의 기술 수준, 성장 가능성, 사업화 계획 및 후속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2025년에는 모집·선정 절차가 하반기에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충분한 사전홍보를 통해 우수한 지원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경쟁평가로 선별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특화프로그램 중 특허평가보고서 지원은 기존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당 1건의 특허평가보고서를 제공하되, 선착순 모집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지원 필요성이나 성과 가능성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지원 대상 기업의 특허평가등급을 보면 10개사 중 AAA 등급은 1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9개사는 모두 BB 이하 등급에 해당하였으며, CCC 이하 등급 기업도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화프로그램 대상 기업 특허등급평가 현황]

특허 평가등급	기업 수	SMART 누적비율
AAA	1개사	상위 4% 이내
BB	4개사	상위 40~60% 구간
CCC	2개사	상위 77~89% 구간
CC	2개사	상위 89~96% 구간
C	1개사	상위 96~100% 구간

자료: 한국발명진흥회, 「온라인특허등급평가시스템」; 서울테크노파크, 「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등급 분포는 특허평가보고서 지원 대상 기업 중 상당수가 기술경쟁력이나 사업화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된 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에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 사업이 개인정보보호 기술기업의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기술 고도화 가능성, 사업화 연계 가능성, 후속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지원 대상이 별도 심사 없이 선착순 방식으로 선정된 것은 지원 효과가 높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바, 수혜기업 선정 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동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확정, 수행기관 선정 및 수혜기업 모집 절차를 조기에 추진하여 충분한 홍보·모집기간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지원 수요가 충분히 발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추진 및 수혜기업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실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11~12월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기업별 자문 횟수와 지원 내용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등 기업지원이 단기간 집행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는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충분한 사업 수행기간을 확보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5년 직접수행으로 전환된 이후 사업계획 확정, 수행기관 계약, 수혜기업 모집·선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실질적인 기업 지원이 11~12월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기업별 기술 수준과 사업화 수요를 진단하고, 맞춤형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며, 그 결과를 후속 기술개발이나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 사업화 지원으로 연계하는 과정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동 사업의 성과로 기술개발 자문 30개사, 시제품 성능 평가·검증 자문 5개사, 기술사업화 컨설팅 7개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원 건수 또는 참여기업 수 중심의 양적 실적에 해당한다. 사업 수행기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수 기업에 대한 자문·컨설팅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해당 실적만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애로 해소나 사업화 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기업별 기술개발 자문 횟수 분포]

(단위: 건)

구분	세부 프로그램	실적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자문	30
	시제품 성능 평가·검증 자문	5
	기술사업화 컨설팅	7
	시제품 PoC 실증 지원	4
판로개척 지원	테크비즈 파트너링(공공)	15
	테크비즈 파트너링(민간)	15
	투자유치 역량강화(IR 컨설팅)	6
	투자유치 역량강화(상담)	21
특화 프로그램	특허평가보고서 지원	10
	온라인 마케팅(온라인 홍보, 뉴스기사)	5
	후속 자문	5

자료: 서울테크노파크, 「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이러한 문제는 기업별 기술개발 자문 횟수 분포에서도 확인된다. 당초 예산서에서는 기술개발 자문을 30개사, 기업당 3회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자문 횟수는 기업별로 1회에서 10회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상위 4개사가 각각 10회씩 자문을 받아 전체 80건 중 40건을 차지한 반면, 10개사는 1회 자문에 그쳤다. 자문료가 1회당 30만원으로 정액 지급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1회 자문 기업은 사실상 30만원 상당의 단발성 지원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별 기술개발 자문 횟수 분포]

(단위: %)

자문 횟수	기업 수	비율	비고
10회	4개사	13.3	4개사가 전체 80건 중 40건 차지
5~7회	3개사	10.0	-
2~3회	13개사	43.3	-
1회	10개사	33.3	기업당 자문료 30만원

자료: 서울테크노파크, 「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업별 수요와 과제 특성에 따라 자문 횟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전체 지원기간이 사실상 1~2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에는 다회 자문이 집중된 반면,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개사는 1회 자문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사업 전체의 지원 기회가 균형 있게 배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1회 자문 기업의 경우 자문료 기준으로 30만원 상당의 단발성 지원에 그친 것이므로, 이를 기업의 기술개발 애로 해소나 사업화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지원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결과보고서상 자문 일정을 보면, 다회 자문 기업은 12월 중순부터 12월 26일까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술개발 자문은 기업의 기술 현황 진단, 개선과제 도출, 대안 검토, 후속 이행 점검 등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연말의 짧은 기간 동안 다수 회차의 자문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각 회차별 자문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고 기업의 후속 조치로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업기간이 압축되면서 자문이 기업별 수요에 따른 체계적 지원보다는 연말 집행 일정에 맞추어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짧은 기간 내에 30개사에 대한 다분야 자문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기술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기업별 기술 수준과 사업화 단계, 과제 특성에 맞추어 전문가를 매칭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수혜기업 선정 이후 실제 자문 수행까지의 기간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가 풀 구성과 기업별 매칭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당수 기업이 1회 자문에 그친 것은 기업의 수요와 자문 내용 간 적합성, 후속 자문 필요성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수혜기업 선정 이후 실제 지원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행기관 선정 및 수혜기업 모집 일정을 조기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별 지원 횟수·내용·후속 조치에 관한 사전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 매칭의 적정성과 자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단기간 집행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의 내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5-2. 당초 예산 편성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문제 개선 필요

가. 현 황

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의 정산 내역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컨설팅, 시제품 PoC 실증 지원, 시제품 성능검증 자문 등 기업 직접 지원 예산은 당초 계획 대비 축소 집행되었다. 반면, 2025년 12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에 없던 특화프로그램(후속 자문, 특허평가보고서 지원, 온라인 마케팅 등)이 추가되어 관련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분석의견

사업 추진 지연으로 당초 계획된 기술사업화 컨설팅, 시제품 성능 검증 등 일부 기업 지원 항목이 축소 집행되었고, 이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후속 자문, 특허평가보고서 지원, 온라인 마케팅 등 당초 계획에 없던 특화 프로그램이 추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집행 일정을 면밀히 관리하여, 당초 계획된 기업 지원 항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정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술개발 컨설팅,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시제품 성능검증 등 당초 계획되어 있던 기업 지원 항목은 전반적으로 축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기술개발 컨설팅은 당초 2,7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기술사업화 컨설팅은 5,335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시제품 성능검증은 6,285만원에서 3,56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그 결과 해당 기업 지원 항목의 집행액은 당초 1억 4,320만원에서 9,460만원으로 4,860만원 감소하였다.

반면,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테크노파크는 당초 계획에 없던 특화프로그램을 2025년 12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하여 후속 자문, 특허평가보고서 지원, 온라인 마케팅 등에 3,663만원이 신규 집행하였고, 우수사례집 제작비도 당초 300만원에서 748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사업계획 변경이 사업 종료 직전인 12월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예산 조정은 사업 목적과의 정합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에 따라 이루어졌다기보다 회계연도 말 잔여 예산 활용 과정에서 추가된 측면이 있다.

[사업 주요 항목별 당초 예산 대비 실집행 비교]

(단위: 천원)

항목		당초 예산	실집행	증감액
감액 소계		143,200	94,600	△48,600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컨설팅	기술개발 컨설팅	27,000	24,000	△3,000
	기술사업화 컨설팅	53,350	35,000	△18,350
	시제품 성능검증	62,850	35,600	△27,250
증액 소계		18,350	66,473	48,123
판로개척 지원	테크비즈파트너링(공공)	5,500	13,414	4,914
	테크비즈파트너링(민간)	3,000		
	IR 데모데이	6,850	8,949	2,099
특화프로그램	후속자문	-	3,600	3,600
	특허평가보고서 지원	-	250	250
	온라인 마케팅	-	32,780	32,780
우수사례집 제작	우수사례집 제작	3,000	7,480	4,480

주: 당초 세부 산출내역서(8월) 대비 항목별 정산 내역(12월)을 비교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12월 예산 변경을 통해 추가된 '특화 프로그램'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마케팅은 스마트라디오 광고, 뉴스기사, 인터넷 배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화프로그램 세부 집행 내역]

(단위: 천원)

항목	집행액	주요 내용
후속 자문	3,600	기존 지원기업 대상 추가 자문
특허평가보고서 지원	250	수혜기업 대상 특허평가보고서 제공
온라인 마케팅	32,780	광고·기사·배너 등을 통한 기업 기술·솔루션 홍보
합계	36,63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온라인 마케팅은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사업화 역량을 직접 보완하는 성격이라기보다 일반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에 해당한다. 기술개발 컨설팅,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시제품 성능검증이 기업의 기술적 과제 해결과 사업화 역량 보완에 직접 연계되는 지원인 것과 비교하면, 사업 목적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다.

특허평가보고서 지원 역시 기업 보유 특허의 기술력·시장성 등을 진단하여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취지는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기업이 선착순으로 선정되었고, 해당 보고서가 실제 기술개발, 시제품 개선, 인증 대응, 투자유치 또는 판로개척 등 후속 성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 보고서 제공 자체를 기술개발 지원의 실질적 성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 내에서도 사업 목적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운영이 확인된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테크비즈파트너링(공공)' 및 '테크비즈파트너링(민간)'이 각각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는 2025년 12월 10일 '개인정보보호 테크비즈 파트너링 행사'로 통합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판로개척 지원의 일환으로 운영된 동 행사에서는 참여기업의 기술 소개 및 수요처 매칭 외에 '공공조달 진입 전략 및 지원사업 안내', '한국교육개발원 지원사업 소개' 등의 세션이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참여기업이 공공부문 대상 기술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공공조달 일반 절차 안내나 타 기관 지원사업 소개는 개인정보보호 기술기업에 특화된

판로개척 지원이라기보다 범용적인 정보 제공에 가까운 것으로서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

종합하면, 동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선정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기업 지원 항목이 축소 집행된 상태에서, 사업 종료 직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에 없던 특화프로그램을 추가하였으며, 그 내용도 사업 본래 목적인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및 집행 일정을 조기에 확정하여 사업 종료 직전 잔여 예산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신규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 목적과의 직접적 관련성, 지원 필요성 및 성과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이 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GPA 총회 예산 편성 부실 및 위원회 기본경비를 활용한 경비 집행 문제

가. 현 황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1] 사업은 국제기구 및 해외 개인정보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개인정보 보호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제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운영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보호 법제 동향 분석과 국제 기준 호환성 제고 등을 지원하는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국제협력 사업 지원 및 국외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사업	2,376	2,376	-	-	2,376	2,355	-	21	1,442	1,442
개인정보보호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1,746	1,746	-	-	1,746	1,746	-	-	571	571
국제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운영	386	386	-	△40	346	346	-	-	225	225
국제 컨퍼런스 운영	1,360	1,360	-	40	1,400	1,400	-	-	346	346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대응	315	315	-	-	315	315	-	-	552	552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315	315	-	-	315	294	-	21	319	319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지수 예산분석관(jskim05@assembly.go.kr, 6788-4630)

1) 코드명: 일반회계 1031-305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예산액은 23억 7,600만원이며, 이 중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내역사업 예산은 17억 4,600만원이다. 동 내역사업에는 당초 국제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운영 3억 8,600만원, 국제 컨퍼런스 운영 1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47차 GPA 서울총회 개최를 출연 방식이 아닌 직접수행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제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운영 예산 중 4,000만원을 국제 컨퍼런스 운영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 컨퍼런스 운영 예산현액은 1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전액 일반용역비로 집행되어 GPA 서울총회 행사대행용역에 활용되었다.

나. 분석의견

GPA 서울총회는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국제 컨퍼런스 운영 예산으로 추진된 행사임에도, 행사 관련 비용 일부가 정당한 이·전용 절차 없이 위원회 기본경비 및 타 세부사업 재원에서 분산 집행되고, 행사대행용역 내에서도 당초 예산에 없던 항목의 신규 집행과 일부 항목의 과다 집행이 확인되는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국제행사 추진 시 행사 관련 비용이 해당 사업비에서 집행되도록 이·전용 등 정당한 예산 조정 절차를 준수하고, 주요 지출 항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비가 효율적·경제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GPA 서울총회는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내 국제 컨퍼런스 운영 예산을 통해 추진된 4일간의 국제행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운영 예산 일부를 조정하여 국제 컨퍼런스 운영에 총 1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GPA 서울총회 개최를 위한 행사대행용역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동 행사의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① GPA 서울총회 관련 비용 일부가 이·전용 등 정당한 예산 조정 절차 없이 다른 세부사업의 재원에서 분산 집행되었고, ② 14억원의 행사대행용역 집행 과정에서도 당초 예산에 없던 항목이 신규로 집행되거나 일부 항목이 당초 예산을 큰 폭으로 상회하여 집행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가 부실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① 정당한 예산 조정 절차 없이 행사 관련 경비를 타 재원에서 분산 집행

GPA 서울총회 관련 일부 경비가 행사대행용역 또는 국제 컨퍼런스 운영 예산이 아닌 위원회 기본경비 및 타 세부사업 재원에서 이·전용 등 정당한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GPA 서울총회 사전홍보, 현장 홍보물 및 초청장·운영계획서 인쇄[2], 기조연설자 매체 간담회 통역, GPA 총회 참가자 대상 캠페인, 부대행사인 연합학술대회 및 오픈소스 데이 관련 비용 등은 모두 GPA 서울총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에도 행사대행용역 또는 국제 컨퍼런스 운영 예산 외의 재원에서 분산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행사 용역사업 외 타 세부사업으로 지출된 내역]

(단위: 원)

구분	주요 내용	집행 재원(세부사업)	금액
홍보·인쇄	GPA 서울총회 사전홍보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4,438,200
홍보·인쇄	GPA 총회 운영계획서 인쇄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4,265,800
홍보·인쇄	GPA 서울총회 초청장 인쇄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275,000
통역	GPA 기조연설자 매체 간담회 통역	위원회기본경비(대변인)	330,000
부대행사	GPA 부대행사 연합학술대회 통번역 수당	조직혁신지원	3,600,000
부대행사	GPA 부대행사 연합학술대회 참석수당	조직혁신지원	1,200,000
부대행사	GPA 부대행사 연합학술대회 인쇄대금	조직혁신지원	726,000
부대행사	GPA 오픈소스 데이 다과비용	개인정보정책국	1,000,000
부대행사	GPA 오픈소스 데이 임차비용	개인정보정책국	2,000,000
합계			17,835,0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특히 홍보 및 인쇄 제작물 분야의 경우, 행사대행용역 당초 예산에는 프로그램북 및 리플렛, 해외보도 예산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해당 항목은 전액 미집행되었다. 반면 GPA 서울총회 사전홍보, 운영계획서 및 초청장 인쇄, 현장 홍보물 인쇄 등 GPA 행사와 직접 관련된 홍보·인쇄 비용은 행사대행용역 외의 예산을 활용하여 별도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행사대행용역 내 홍보·인쇄 예산을 실제 소요에 맞게 활용하기보다는, 일부 편성 항목을 미집행한 상태에서 관련 비용을 다른 재원으로 분산 집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지출 귀속 기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상 이·전용 등 정당한 예산 조정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위원회 기본경비 및 타 세부사업 재원에서 GPA 서울총회 관련 비용을 우회 집행함으로써 GPA 서울총회의 실제 총소요액 파악과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평가를 어렵게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사업비 귀속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② 당초 예산에 없던 항목의 신규 집행 및 일부 항목의 과다 집행

14억원 규모의 GPA 서울총회 행사대행용역 정산서상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항목이 신규로 집행되거나, 일부 항목이 당초 예산을 큰 폭으로 상회하여 집행된 반면, 일부 편성 항목은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GPA 서울총회 주요 신규 및 초과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항목	당초 예산	실집행액	증감	집행률
신규 집행	LED 영상	-	60,000	60,000	-
	중앙 PDP, 추적 카메라	-	25,850	25,850	-
	부대 사무실 추가 임차	-	19,545	19,545	-
	시스템 레이허 구조물	-	9,000	9,000	-
	통역시스템 ②	-	8,100	8,100	-
	동시통역 ②	-	8,000	8,000	-
	가로등배너	-	6,380	6,380	-
	AI통역	-	3,091	3,091	-
초과 집행	연사료	4,000	12,636	8,636	315.9
	메인 인터넷	1,000	4,301	3,301	430.1
	온라인 홍보물	2,000	4,500	2,500	225.0
	현장제작물 및 브랜딩	8,000	15,620	7,620	195.3
	등록데스크	8,000	15,250	7,250	190.6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행사 추진 과정에서 현장 여건 변경이나 참석자 규모, 행사 운영 방식 변경 등에 따라 일부 세부항목의 조정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동 행사에서는 당초 예산에 없던 고가 장비와 임차 항목 등이 신규로 집행되고, 일부 항목은 당초 예산의 2~4배 수준으로 집행된 반면, 프로그램북 및 리플렛, 해외보도 등 일부 항목은 전액 미집행되는 등 당초 예산 산출과 실제 집행 간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GPA 서울총회 행사대행용역의 세부 산출내역이 행사 규모와 운영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집행 과정에서의 변경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GPA 서울총회 통역 및 기록, 홍보 집행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집행 예산	당초 예산	실집행액	증감	집행률
통역	통역시스템, 동시통역, AI통역, 통역 초과시간 등	50,700	65,791	15,091	129.8
기록 (전문인력 인건비)	사진촬영, 영상촬영, 행사녹화·녹음 등	14,000	18,820	4,820	134.4
홍보 및 인쇄 제작물	온라인 홍보물, 홍보영상, 현장제작물 및 브랜딩, 가로등 배너	92,000	75,918	△16,082[1]	82.5

주: 1) 프로그램북 및 리플렛과 해외보도의 당초 예산(1,8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역 분야의 경우, 당초 예산 5,070만원 대비 6,579만 1,00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129.8%에 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역시스템과 동시통역이 각각 2회분으로 집행되고, AI통역 및 통역 초과시간 비용까지 별도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통역 수요와 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통역 방식이 중복적으로 설계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기록 분야 역시 사진촬영, 영상촬영, 행사녹화·녹음, 홍보영상 제작 등이 별도 항목으로 병행 집행되어 당초 예산 1,400만원 대비 1,882만원이 집행되었다. 4일간의 국제행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진·영상·녹화·녹음·홍보영상 제작의 과업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었는지, 중복 또는 과다 산정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GPA 서울총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추진할 때 사전홍보, 본행사, 학술대회 등 부대행사, 캠페인, 사후 홍보 등을 포괄하는 통합 예산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가 장비, 통역, 기록·홍보, 공간 임차 등 주요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행사 규모와 목적에 비추어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행사 관련 비용의 지출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사 추진 과정에서 당초 사업비만으로 추가 소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용 등 예산상 정당한 조정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비에서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행사 총비용과 집행 책임이 명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결산분석시리즈 IV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6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tel 02·2672·1535)

ISSN 3140-322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471-10
ISSN	3140-322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